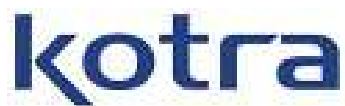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 호주

---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 목 차 ▶

## I. 국가일반

- 1. 국가개요 /1
- 2. 정치사회동향 /3
- 3. 한국과의 주요이슈 /4

## II. 경제

-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6
- 2. 주요 산업 동향 /13
-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4

##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6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8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32
  - 대한수입규제동향 /38
  - 관세제도 /39
  - 주요인증제도 /40
  - 지적재산권 /42
  - 통관운송 /43

## IV. 투자

###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7
- 외국기업 투자동향 /50
- 우리기업 투자동향 /53

###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4
- 진출형태별 절차 /59
- 투자입지여건 / 61

###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68
- 조세제도 /70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73

##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76
- 2. 물가정보 /77
- 3. 바이어발굴 /80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82
-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84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86
- 7. 이주정착 가이드 / 89
- 8. 출장가이드 /93



## 1. 국가일반

### 1.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         |                                                                                                                                                                                                                                                                                                                                                                                               |
|---------|-----------------------------------------------------------------------------------------------------------------------------------------------------------------------------------------------------------------------------------------------------------------------------------------------------------------------------------------------------------------------------------------------|
| 국 명     | 호주 (Commonwealth of Australia)                                                                                                                                                                                                                                                                                                                                                                |
| 위 치     | 오세아니아 (동경 113°9'–153°39', 남위 10°41'– 43°39')                                                                                                                                                                                                                                                                                                                                                  |
| 면 적     | 768만km <sup>2</sup> (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                                                                                                                                                                                                                                                                                                                                                  |
| 기 후     |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
| 수 도     | 캔버라                                                                                                                                                                                                                                                                                                                                                                                           |
| 인 구     | 21,229천명 (2007.6월 기준 추정치)                                                                                                                                                                                                                                                                                                                                                                     |
| 주요도시    | 시드니 (4,232천명), 멜버른 (3,600천명), 브리스베인 (1,775천명), 퍼쓰 (1,458천명), 아델레이드 (1,124천명)                                                                                                                                                                                                                                                                                                                  |
| 민족      | 유럽인(89.2%), 원주민(1.6%), 아시아인(4.1%), 아랍 인(1.0%)                                                                                                                                                                                                                                                                                                                                                 |
| 언 어     |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
| 종 교     | 영국성공회(23.9%), 천주교(26.0%), 장로교, 침례교 등                                                                                                                                                                                                                                                                                                                                                          |
| 건국(독립)일 | 1901년 1월 26일                                                                                                                                                                                                                                                                                                                                                                                  |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양원제)                                                                                                                                                                                                                                                                                                                                                                                   |
| 국가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ueen Elizabeth II 영국여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여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정부는 연방 총독(Governor-general), 주 정부는 주 총독(Governor)이 영국여왕을 대리해 연방 및 각주를 대표함.</li> </ul> </li> <li>○ Kevin Rudd 수상(실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당의 수장으로서 2007년 실시된 총선에서 11년만에 존 하워드 연정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수상으로 임명되었음.</li> </ul> </li> </ul> |

자료원: 호주통계청 등

#### 나. 경제지표

|         |                           |
|---------|---------------------------|
| GDP     | US\$ 8,897억 (2007년 추정)    |
| 실질경제성장률 | 3.9%(2007년 추정)            |
| 1인당 GDP | US\$ 42,552(2007년 추정)     |
| 실업률     | 4.4% (2007년 평균)           |
| 물가상승률   | 2.3%(2007년 평균)            |
| 화폐단위    | Australian Dollar(A\$)    |
| 환율      | US\$1= A\$ 1.19(2007년 평균) |
| 외채      | US\$ 8,249 억불(2007년 말)    |
| 외환보유고   | US \$534억 (2007년 말)       |
| 기준금리    | 7.25%(2008.3.7 현재)        |

|      |                                                                                      |      |
|------|--------------------------------------------------------------------------------------|------|
| 산업구조 | Property and business services                                                       | 11.8 |
|      | Manufacturing                                                                        | 10.4 |
|      | Ownership of dwellings                                                               | 8.0  |
|      | Finance and insurance                                                                | 7.1  |
|      | Construction                                                                         | 6.7  |
|      | Health and community services                                                        | 6.0  |
|      | Retail trade                                                                         | 5.8  |
|      | Mining                                                                               | 4.9  |
|      | Wholesale trade                                                                      | 4.9  |
|      | Transport and storage                                                                | 4.6  |
|      | Education                                                                            | 4.2  |
|      |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defence                                                | 3.8  |
|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 3.1  |
|      | Communication services                                                               | 2.7  |
|      |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 2.2  |
|      | Accommodation, cafes and restaurants                                                 | 2.2  |
|      | Personal and other services                                                          | 1.9  |
|      |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s                                                   | 1.5  |
| 교역규모 | ◦ 수출 US\$ 1,411억불(2007)<br>◦ 수입 US\$ 1,578억불(2007)                                   |      |
| 교역품  | ◦ 수출: 석탄, 철광석, 금, 원유, 석유가스, 알루미늄, 구리, 밀 등<br>◦ 수입: 원유,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의약품, 무선통신기기 등 |      |

자료원: 호주통계청, 중앙은행 등

#### 다. 한-호 관계

|                |                                                                                                                                                                                                                                                                                                                                                                                                                                                                                                                                                                                              |
|----------------|----------------------------------------------------------------------------------------------------------------------------------------------------------------------------------------------------------------------------------------------------------------------------------------------------------------------------------------------------------------------------------------------------------------------------------------------------------------------------------------------------------------------------------------------------------------------------------------------|
| 체결협정           | '65. 9. 21 무역협정<br>'75. 6. 17 무역 및 경제발전 협정 (무역협정 대체)<br>'79. 5. 2 원자력 협정<br>'82. 7. 12 이중과세 방지협정 ('84.1.1 발효)<br>'83. 11. 23 시장개방에 관한 각서 교환 ('83.11.24 발효)<br>'83. 11. 23 어업협정 ('83.11.24 발효)<br>'88. 8. 9 세관지원 양해각서<br>'88. 11.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교환<br>'92. 2. 26 항공협정 ('92.9.7 발효)<br>'92. 8. 25 형사사법공조 조약 ('92.12.19 발효)<br>'92. 8. 31 상용복수사증발급각서 교환('92.9.30 발효)<br>'93. 12. 17 경제공동위 설립 약정<br>'95. 3. 표준 및 인증 기술협력 약정 체결<br>'96. 2. 15 한. 호 환경협력각서 교환<br>'96. 11. 14 산업 및 기술협력 약정<br>'99. 9. 17 민사사법공조조약, 과학기술협력협정, 자원협력 양해각서 체결<br>'04. 8. 한. 호주 자원협력협정 체결<br>'06. 12. 한-호 FTA 타당성 조사 개시 발표 |
| 교역규모           | - 대호 수출: US\$ 46.9 억(2006 년)<br>- 대호 수입: US\$ 113.1 억(2006 년)                                                                                                                                                                                                                                                                                                                                                                                                                                                                                                                                |
| 교역품목           | ◦ (대호 수출 품목)<br>-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선박, 자동차부품, 타이어, 종이류 등<br>◦ (대호 수입 품목)<br>- 원유, 석탄, 철광석, 알루미늄, 아연광, 쇠고기, 사탕수수당, 석유가스, 동광 등                                                                                                                                                                                                                                                                                                                                                                                                                                                          |
| 투자교류<br>(신고기준) | - 호주의 대한 투자: 1962 - 2006 간 US\$ 15.7 억(2006 년 9.2 억)<br>- 한국의 대호 투자: 1962-2006 간 391 건 US\$ 30.4 억(2006 년 49 건 1.9 억)                                                                                                                                                                                                                                                                                                                                                                                                                                                                        |
| 교민             | - 교민 약 8 만 5 천 명, 어학연수 등 단기 체류자 2 만 8 천명으로 추정됨                                                                                                                                                                                                                                                                                                                                                                                                                                                                                                                                               |

자료원: 외교통상부, 한국 관세청, Invest Korea, 한국 수출입 은행 등

## 2. 정치 사회 동향

### 가. 국내 정치

2007년 11월 실시된 연방총선에서 케빈 러드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하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연합정권의 장기간 집권에 대한 식상, 현 정권의 친미적 정책, 친기업 정책 등에 대한 반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사전 여론조사 결과 등에서 대부분 노동당의 집권이 예측되었다. 케빈 러드는 당선 이후 100일간의 우선 정책으로 교토협약 비준 추진과 노사관계법 개편을 제시하였다. 호주는 미국과 함께 교토협약에 반대해온 대표적인 국가로 케빈 러드의 교토협약 비준 추진을 그간 이라크 파병 등에서 나타난 호주의 '친미주의' 탈피 움직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워드 정부는 노사관계법을 친기업 방향으로 개정했으나 노동당 정권하에서는 어느정도 역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결과 발표후에 증시는 별다른 특이사항을 보이지 않고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경제계 인사는 “시장은 예상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며 노동당 집권이 광범위하게 예측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인사는 “호주 정도의 성숙된 시장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케빈 러드는 외교관으로서 중국에 근무했으며 중국어에 능통한 등 '지중파'라는 점이 꾸준히 부각돼 왔으며 향후 경제·외교측면에서 호-중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호-중 FTA가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촉구된다.

11년 반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주요 정책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브로드밴드 정책

|               |                                            |
|---------------|--------------------------------------------|
| 비전            | 관민 합작투자로 전국가적 브로드밴드 망을 구축한다.               |
| 자금조달          | 관민 합작투자를 위한 47억 달러 규모의 정부 펀드 투입            |
| 기술            | 전국적 FTTN 망                                 |
| 자금지원방법        | communication fund(20억) + Future Fund(27억) |
| 의사결정기구        | 현 테스크 포스 대체                                |
| 규제            | 현규제 시스템의 전면 개편                             |
| 강점            | Wimax에 비해 Fixed-Line Fiber 기술이 진보해 있음.     |
| 약점            | 정부 펀드운용 가능성 불확실                            |
| 비서비스지역에 대한 대안 | 위성통신                                       |

#### ○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 관련 전담기관 “Infra Australia” 설치 및 전담장관 임명
- 국가 전체의 인프라 망 점검과 확충계획 수립을 위해 범국가적 “인프라 감사”를 실시
- 대도시 혼잡해소를 위한 “Major Cities” 프로그램 가동
- 향후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는 사상 유래없는 활황을 보일 전망.

#### ○ 주택

|                    |                                                                                |
|--------------------|--------------------------------------------------------------------------------|
| 주택구입 희망자 지원        | "First Home Owner's Grant" 기금 유지                                               |
| 주택문제 관련 장관 수준에서 지원 | “주택부 장관” 임명<br>택지 공급 관련 조사활동을 위한 국가기관 설치                                       |
| 주택 인프라 관련 투자       | 5억 호불 규모의 “Housing Affordability Fund” 조성: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조세 등의 합리화에 따른 인센티브로 활용 |
| 공공 임대 주택 공급        |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계획에 따른 인센티브와 재정적 지원 제공(공급자에 대해)                  |

- 기술인력 확보
  - 전담기관인 'Skills Australia' 설치
  - 25억 호주달러를 투입 중등 교육기관 내에 직업훈련원 설치
  - 한편 이를 통해 취업준비자격증(Job Readiness Certificate)도 발부 예정임.
- 노사관계
  - 하워드 정부의 Work Choice Policy를 다시 노동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 노동자 다수가 원할 경우 반드시 단체 교섭을 실시하도록 함.
  - 하워드 정부시절 이뤄진 변화를 전면적으로 환원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은 없을 듯
- 환경정책
  - 현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시행
  - 교도협약의 비준 추진

## 나. 사회 동향

호주는 IT 붐 - 주택 가격 붐 - 지하 자원 붐 등 고점에서 고점으로 이동하며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10년 이상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 결과 실업율이 완전고용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외견상으로는 이상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비교적 첨예한 이슈는 노동법 개정(기업 중심의), 이라크 파병 문제 등이었으나 전체 호주 사회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내재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선 자원 붐 이후의 호주 경제 방향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2006년 무려 평균 50%가 상승하며 고점을 쳤으며 이에 힘입어 호주의 수출과 자원부문 투자 역시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원 가격은 점차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므로 향후 호주 경제의 활력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원부문의 호황으로 여타 분야는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고급기술인력 부족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도시의 급속한 도시화도 문제점이다. 원주민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이민, 유학 등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시드니 지역의 경우 사회 인프라가 이를 적절히 뒷받침 해주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도심의 교통 혼잡, 공공 요금을 비롯한 물가 상승, 각종 편의 시설 부족 등이 부각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3. 한국과의 주요이슈

### 가. 한-호 FTA 타당성 조사 개시(2006.12)

2006.12 노무현 대통령의 방호시 한-호 FTA 타당성 조사가 개시 되었다. 그간 호주측은 지속적으로 한-호 FTA 협상을 추진해왔으나 한-미 FTA 등에 따른 우리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지연되어 왔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협상이 개시되면 농산물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호주의 경우 이미 미국, 태국, 싱가포르, 태국과 FTA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중 중국과 타결이 예상되는 등 활발한 양자 협정 확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 나. 아·태 6개국 기후변화 파트너십 출범(2006.1)

호주, 한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은 공동으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역내 협정 추진에 합의하였다. (2005.7.27). 이는 미국 주도로 2005년 상반기 (약 5개월간)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간에 협의된 아·태 청정 개발 및 기후관련 파트너십 (Asia-Pacific Partnership for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에 호주도 참여한 것으로 동 구상은 역내의 경제개발 및 성장의 저해 없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에 중점을 두었다. 2006.1.11-12 개최된 국별 각료 회의를 통해 "아·태 6개국 기후변화 파트너십"이 드디어 공식 출범 하였으며 동 회의기관 중 한국은 호주측과 개별로 반덤핑 및 FTA 등 양국간 통상현안과 아·태 파트너 쉽내 Task Force 운영방안과 LNG, 유연탄 등 자원협력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 하였다.

#### 다. 제21차 한호자원협위원회 개최 및 자원협정 발효(2005.7)

2005.7.11 ~ 12일간 캔버라에서 양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 및 민간기업인 등 총 70여명 참여(한국 33명, 호주 37명)한 가운데 자원협정이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양국간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 수급현황 및 전망, 교역 확대, 한국이 지분 95%를 가지고 있는 와이오 탄광 개발에 호주 측이 철도, 수출 항만 확충 등 적극 협조, 호주 Woodside사와 한국 석유 공사 간에 한국 대륙붕 동해심해 지역에 대한 공동 평가 추진,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에너지 부문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라. 노동당 집권 이후 한-호 FTA 진행 전망

양국 FTA 공동연구는 2006년 12월 발표됐으며 2007년 5월에 개시되었다. 2007.8.6 경제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한-호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한-미 FTA 타결이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어 비슷한 수준의 시장개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있었다. 공동연구 한국측 담당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접촉한 결과, 공동연구는 연내 완료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총선 이후의 한-호 FTA 추진 여건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먼저 노동당의 통상정책을 살펴보면, 1) 다자간 협상을 최우선시 하고 있으며 지역·국가 별 FTA는 다자간 협상을 기본으로 해 어디까지나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2) 호주는 WTO 협상에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 3) 양자간 협상에 의한 시장개방 정도는 다자간 협상에 의한 개방수준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동당은 기존 FTA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을 가해왔다.

- 명목상으로는 다자간 협상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간 협상에 치중함
- FTA가 호주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상 타결 자체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음.
- 현재까지 발효된 FTA는 호주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음.
- 환경문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포괄적 FTA 결여
- 협상 과정에 대한 공개가 부족
- 협상 시작 전 타당성 검토 및 영향 평가 조사가 부실함.

그러나 다자간 협상과 양자간 협상의 우선권 문제는 특별히 현정부의 의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다자간 협상이 2006년 중단위기를 거쳐 겨우 재개되는 등 극히 부진을 보였기

때문에 하워드 정부가 양자간 협상에 집중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당 집권 이후에도 특별히 양자간 FTA 협상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다. 또한 FTA 타결이 다자간협상 진척에 비해 해당부처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므로 관계 부처들은 FTA 협상진행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노동당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FTA를 축소해야 된다.”와 같은 식의 극단적 주장은 일절 퍼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 한-호 FTA 협상 개시가 추진된다면 일종의 '시범케이스'로 위에서 언급한 협상 범위의 문제, 절차상 문제 등이 엄격히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협상 진행이 상당히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 II. 경제

###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가. 경제 동향

##### 주요 경제 지표

|         |                                             |
|---------|---------------------------------------------|
| GDP     | US\$ 7,548억                                 |
| 실질경제성장률 | 2.7 %                                       |
| 1인당 GDP | US\$ 36,553                                 |
| 실업률     | 4.9 %                                       |
| 물가상승률   | 3.5 %                                       |
| 환율      | US\$1= A\$ 1.33(2006년 평균)                   |
| 경상수지    | US\$ 408억                                   |
| 외채      | US\$ 3,745 억(2006년 말)                       |
| 외환보유고   | US\$ 471억 (2006년 말)                         |
| 교역규모    | 수출 US\$ 1,234억(2006) / 수입 US\$ 1,327억(2006) |

자료원: IMF, RBA 등

#### 나. 2007/2008 예산안

##### □ 07/08 회계연도 경제 전망

| (단위: %) |              | 05/06 | 06/07(추정) | 07/08(전망) |
|---------|--------------|-------|-----------|-----------|
| GDP     |              | 2.9   | 2.5       | 3.8       |
| 수요      | 가계 지출        | 2.6   | 3.5       | 3.5       |
|         | 민간 투자        |       |           |           |
|         | 주택부문         | -3.9  | 2.5       | 2.5       |
|         | 비즈니스         | 16.2  | 4.0       | 7.5       |
|         | 비 주택 건설부문    | 21.6  | 12.0      | 7.0       |
|         | 설비 및 장비      | 14.5  | -1.5      | 6.5       |
|         | 정부부문 지출 및 투자 | 4.3   | 4.0       | 3.8       |
|         | 상품 및 서비스 수출  | 2.2   | 3.0       | 5.0       |
|         | 상품 및 서비스 수입  | 7.2   | 8.5       | 6.5       |
| 생산      | 비농업생산        | 2.9   | 3.0       | 3.5       |
|         | 농업생산         | 4.6   | -20.0     | 18.0      |
| 기타 지표   | 경상수지적자(십억 불) | -53.4 | -58.3     | -65.8     |
|         | 고용증가율        | 2.2   | 2.5       | 1.5       |
|         | 실업률          | 5.1   | 4.8       | 5.0       |
|         | 인플레이션        | 3.2   | 2.8       | 2.5       |
|         | 임금상승률        | 4.1   | 4.3       | 4.3       |

## □ 장기 성장 과제

- 출산율 저하 및 노령인구 증가: 2047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산율은 1961년 3.5명/여성 1명 → 1.8/여성1명으로 하락하였으며, 노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증가하고 있다.
- 이와 관련 2007/2008년 예산안은 장기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 예산 확대,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개인 소득세 감세), 인프라 확대, 환경예산 확대가 가장 주목되는 사항들이다.

## □ 주요 내용

|        |                                                                                                                                                                                                                                                                                                                                                                                                                                            |
|--------|--------------------------------------------------------------------------------------------------------------------------------------------------------------------------------------------------------------------------------------------------------------------------------------------------------------------------------------------------------------------------------------------------------------------------------------------|
| 재정 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흑자 106억 불 전망(10년 연속 흑자)</li> <li>- 장기성장을 위한 투자기반 확보</li> </ul>                                                                                                                                                                                                                                                                                                                                  |
| 개인소득세  | <p>□ 2007.7월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 소득세 구간 조정: 연 소득 \$6,001~\$25,000 → \$6,001~\$35,000</li> <li>○ 저소득자 면세 및 감세(LITO)한도 조정: 연 소득 \$25,000 → \$30,000</li> <li>○ 고령자 면세(SATO)한도 조정: 연 소득 \$24,867 → \$25,867</li> </ul> <p>□ 2008.7월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 소득세 구간 조정: \$75,001~\$150,000 → \$80,000~\$180,000</li> <li>- 45% 소득세 구간 조정: \$150,001 이상 → \$180,001 이상</li> </ul> |
| 교육 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육 강화를 위해 Higher Education Endowment fund에 50억 불 투입</li> <li>○ 대학생 소득보조, 장학제도 확대를 위해 2.2억불 배정</li> <li>○ 직업교육(VET)에 대한 보조 확대</li> <li>○ 연수 및 견습교육에 대한 보조 확대</li> <li>○ 독해 및 수리능력 확보를 위한 700\$ 교육 바우처 제공</li> </ul>                                                                                                                                                                              |
| 운송 인프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부터 5년간 도로·철도망 확충을 위해 223억불 투자</li> </ul>                                                                                                                                                                                                                                                                                                                                                       |
| 육아 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ild Care Benefit 지급률 10% 인상</li> <li>○ Child Care Benefit 조기 지급</li> </ul>                                                                                                                                                                                                                                                                                                                      |
| 고령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및 보호자에 대한 일시불 보너스 지불</li> </ul>                                                                                                                                                                                                                                                                                                                                                               |
|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대비를 위해 7.4억불 투입</li> <li>- 태양열시스템 설치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배증 계획 포함</li> <li>○ 수자원 보호를 위해 10년간 100억불 투입</li> </ul>                                                                                                                                                                                                                                                                                      |
| 지역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지역지원(Exceptional Circumstances Assistance) 규모 확대</li> <li>○ 농업생산자에 대한 지원 확대</li> </ul>                                                                                                                                                                                                                                                                                                          |
| 국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력 유지와 모병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61억불 투입</li> <li>○ 테러방지를 위한 7억불 추가 투입</li> </ul>                                                                                                                                                                                                                                                                                                                           |
| 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리서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 4.9억불 투입</li> <li>○ 만성·복합 질환의 발견과 치료체계 개선을 위한 7.7억불 배정</li> </ul>                                                                                                                                                                                                                                                                                                               |

## □ 2007/08년 예산배정 개요 (우리기업 관심분야 중심으로)

- 수자원 절약의 일환으로 물탱크 및 절수 장치를 설치하는 학교 및 지역사회 단체 지원 (2억70만 호주달러)

- 가정 및 학교의 태양 전지판(solar panel) 설치에 따른 리베이트 지원(1억5000만 호주달러)
- 가정에서 태양 전지판 설치 시에는 8000호주달러, 학교 또는 지역사회단체에서 태양 전지판 설치 시에는 1만2000호주달러까지 리베이트 지원
- 26개 지방공항을 대상으로 '07년 말까지 수화물 검색장치 강화(1540만 호주달러)
- 외국기업의 R & D지출에 대하여 175% 세금공제(향후 4년간 2억 호주달러 상당, 약 3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호주정부는 예상하고 있음.
- 나노산업(Nanotechnology Industry)의 투자촉진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향후 4년간 2150만 호주달러)
- 치아문제로 인해 일반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민간 치과치료비 지원(3억7800만 호주달러)
- 의료연구기관 지원(4억8580만 호주달러)
- 도로, 철도 인프라스트럭처(AusLink plan) 구축(223억 호주달러, '09년부터 시작)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컴퓨터시스템 업그레이드(1억1670만 호주달러, 향후 4년 간)
- 호주커뮤니케이션&미디어에이전시(ACMA)의 IT 업그레이드(1630만 호주달러, 향후 4년간)
- 향후 13년간에 걸쳐 24대의 슈퍼호넷(Super Hornet) 구입(66억 호주달러)

#### 다. 2008 경제 전망

##### □ 주요 지표 전망

|               | 단위       | 2007  | 2008  |
|---------------|----------|-------|-------|
| 실질GDP성장률      | %        | 3.5   | 3.0   |
| 실업률           | %        | 4.5   | 4.6   |
| 인플레이션         | %        | 2.4   | 2.9   |
| 재정수지흑자        | % of GDP | 1.4   | 1.1   |
| 상품수출          | U\$십억    | 139.3 | 149.6 |
| 상품수입          | U\$십억    | 151.1 | 160.5 |
| 경상수지          | U\$십억    | -49.3 | -47.8 |
| 외채            | U\$십억    | 659.9 | 663.8 |
| 환율(A\$: US\$) |          | 1.22  | 1.28  |

자료원: IMF, EIU, RBA 등

##### □ 경제 정책

- 노동당이 새로이 집권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노사관계 부문으로 예상됨.
  - 노동당은 최근 개정된 개인 계약 중심의 노사관계를 다시 단체 협약 중심으로 회귀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하워드 정부의 노사관계법 개정이 여론을 의식하여 상당부분 완화되어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기존 틀 내에서의 변화가 될 전망이다.

- 한편 BRW지가 실시한 설문에서 수자원 문제가 현 호주의 가장 큰 이슈로 선정된 바 있듯이 노동당 집권하에서도 수자원 보존 및 개발 관련 정책에 커다란 포커스가 주어질 전망이다.
- 재정정책
  - 4.8%의 세입 증가와 6.3%의 세출 증가로 재정흑자규모는 GDP의 1.1% 수준이 될 전망이다.
  - 2007/2008 예산 편성에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다수 반영되었는바 2008/2009 예산에서 소위 이 같은 ‘당근’(sweeteners)은 축소될 전망이다.
- 금융정책
  - 지난 11월 또한번의 금리인상이 단행되고, 현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타겟 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비롯,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수준이므로 2008년 말까지 현 금리가 낮춰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 □ 국제 경제 주요 지표 전망

|                                    | 2007  | 2008  |
|------------------------------------|-------|-------|
| <b>실질 경제 성장률</b>                   |       |       |
| World                              | 5.1   | 4.8   |
| US                                 | 1.9   | 2.3   |
| Japan                              | 2.5   | 2.1   |
| <b>환율</b>                          |       |       |
| ¥: US\$                            | 117.9 | 106.3 |
| US\$: 유로                           | 1.36  | 1.38  |
| SDR:US\$                           | 0.65  | 0.64  |
| <b>금융지표</b>                        |       |       |
| US\$ 3-month commercial paper rate | 5.16  | 4.70  |
| ¥ 3-month Gensaki rate             | 0.68  | 1.13  |
| <b>상품가격</b>                        |       |       |
| Industrial raw materials (증가율)     | 11.6  | -4.6  |
| Food, feedstuffs & beverages (증가율) | 15.7  | 2.5   |
| Gold (US\$/troy oz)                | 652.5 | 642.5 |
| Oil (Brent; US\$/b)                | 69.9  | 69    |

- 세계 경제는 중국의 경제 호조에 힘입어 4.8%의 견실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 한편 국제 공업 원자재 가격은 2007년 11.6%로 전년에 비해 다소 완만하게 상승한 데 이어 2008년에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 경제 성장

|              | 2007          | 2008          |
|--------------|---------------|---------------|
| 민간지출         | 565.2(3.9)    | 583.3 (3.2)   |
| 공공지출         | 178.4(3.8)    | 185.6 (4.0)   |
| 총 고정자본투자     | 272.7(5.9 )   | 284.8 (4.4)   |
| 재고조정         | 0.5 (0.1)     | 1.0 (0.1)     |
| <b>총수요</b>   | 1,016.9 (4.6) | 1,054.7 (3.7) |
| 상품 및 서비스 수출  | 182.0 (3.9)   | 188.5 (3.6)   |
| 상품 및 서비스 수입  | -231.4 (8.9)  | -247.0 (6.7)  |
| <b>국제 수지</b> | -49.5 (-1.3)  | -58.5 (-0.9)  |
| <b>GDP</b>   | 967.4(3.5)    | 996.2 (3.0)   |

- 2008년 호주 경제는 3.0%의 실질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2007/2008 예산안에 포함된 감세정책과 임금상승 등에 힘입어 지출은 견조한 성장을 보일 전망임.
  - 그러나 비즈니스 투자는 광업부문의 투자기회 축소, 자금 차입 여건 경색 전망 등으로 예년에 비해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연이은 이자율 인상에 따른 모기지 상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가 호주에서 재연된 가능성은 극히 낮음.
  - 단, 서브 프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호주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 인플레이션

- 2007년 1/4분기 인플레이션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이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던 저 실업률, 높은 시설 가동률 등의 요소들은 상존하고 있음.
- 이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호주화 강세와 유가의 상대적 안정이 상쇄시키고는 있으나 전반적 상황을 감안할 때 2008년은 금년에 비해 상승한 2.8% 대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됨.

#### □ 환율

- 현재 자원가격 상승, 높은 이자율이 호주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2008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 국제 원자재가 안정화로 인해 미화 대비 평균 1:1.2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채권의 수익률 상승 전망도 호주화 약세를 초래할 것임.

#### □ 대외경제

- 호주화 강세에 따른 수입구매력 상승, 내수 호조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폭은 2008년 더욱 확대될 전망임
- 한편 지난 수년간 시설 투자의 결과로 2008년 수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라. 신정부의 경제 정책 전망

#### □ 경제정책 기본방향

- 노동당은 Howard 정부가 자원붐에 따른 경기호황을 누리기만 하고, 향후에 대비한 비전이 없다고 비판
- 집권시 국정운영 3대 중장기 과제 및 방향을 제시
  - 자원붐 이후에 대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개혁, 브로드밴드 등 정보통신, 의료 및 인프라시설 확충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및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토의정서 비준, 재생에너지보급 확대 등 추진
  - 공정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노사관계법 개정을 통해 단체교섭, 부당해고 심판 청구 제도 등 부활 추진
-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Howard 정부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노사관계, 기후대책 등 쟁점이 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 대외경제정책(다자 및 FTA)

- 노동당은 무역정책에 있어 다자간 협상을 우선시하고, 양자 및 지역별 FTA는 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 따라서 신정부는 WTO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망
- FTA의 경우 그간 호주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비판해왔기 때문에 협상내용이나 과정이 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2008년 한-호 FTA협상이 진행된다면, 그간 노동당에서 지적한 문제점, 즉 협상의 범위나 절차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추진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

## □ 재정 조세정책(감세)

- 재정정책은 현재의 GDP 1% 수준(100억호불)인 연방재정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주택구입, 교육, 의료 등 가정의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확대
- 조세정책은 자유당정부의 340억호불 감세 및 소득세율 단계 축소 등 공약에 비해, 향후 3년간 310억호불 감세 추진
  - 최고세율(45%→40%) 인하 및 감세재원을 의료, 교육 등 가정지출을 환급해주는 등 복지지출을 확대

## □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우라늄개발 및 인프라)

- 자원개발 및 수출확대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확충에 적극 투자할 전망
- 우라늄 개발정책은 노동당의 신규광산 개발금지 정책을 금년 4월 전당대회에서 신규 개발을 허용하기로 정강 수정
  - 우라늄 수출은 엄격한 조건하에서 확대하되, 농축 및 원전도입 등은 강력히 반대하는 기존 정책을 고수
  - 연방 노동당의 정강수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주정부는 SA 및 NT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우라늄신규개발 및 원전도입 등을 반대
- 하워드 정부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려했던 원전 도입정책은 추진이 어려울 전망
  - 에너지정책도 원전보다는 청정석탄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력할 전망
  - 다만, 기후변화협약 비준 이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당 등에서 대안으로 원전 도입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도 상존

## □ 환경 정책(기후변화대응정책)

- 총선의 핵심 쟁점이었던 기후변화대책은 자유당 정부와는 달리 교토의정서를 비준
  -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2050년까지 2000년의 60%수준 감축), 201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등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추진 예상
  - 12월초 인니 발리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회의에 관련 장관 및 총리가 직접 참가할 예정
  - 다만, Post-Kyoto Protocol에 대해서는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국이 참여해야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석탄기술 개발 등 에너지 환경 정책을 강화할 전망
- 주요 공약 정책
  -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2020)
  -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3억 4,200만톤
  - 청정석탄기술개발 가속화: 5억불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5억불
  - Green Car Innovation Fund: 5억불
  - National Solar School Plan: 1억 5,300만불
  - Solar City program: 2,500만불

#### □ 정보통신(브로드밴드)

- 노동당은 미래 생산성 향상의 핵심으로 47억호불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민관 공동 참여를 통해 98% 이상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브로드밴드 계획을 발표(07.3)
- 자유당 정부가 07.6발표한 ADSL2, 무선인터넷망 등을 통해 2009년 상반기까지 12Mbps의 인터넷 속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정하여 광통신망 설치를 확대할 전망

#### □ 노동/인력정책

- 뜨거운 총선쟁점이었던 노사관계는 06.3월 자유당정부가 실시한 개별근로계약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법(Work Choice)을 개정할 계획
  - 개정방향은 개별근로계약 폐지 등을 통해 노사간 이해관계 조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의 집행을 위해 "Fair Work Australia"를 설립할 예정
  - 과도기를 거쳐 2010년부터 단체협약제도 전면실시 예정이며, 노조에서는 조기 전면실시를 강력히 주장
- 주요 노사관계 개정 공약
  - 현 직장 계약서 사용자에게 2년간 유예기간 부여(해고 방지)
  -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고용인에 대한 협상의 유연성 부여
  - 10만불 이하 고용인의 임금수당 기준액(refer in awards)의 유연성
  - 단체 계약 지원, 단체계약 구조하에서 개인의 추가사항 조정
  - 임금 수당 기준액의 간결화와 현대화
  - 15명 이하 소규모 기업과 사업에 대한 특별 고려 조치
  - 노동자 측의 불법 투쟁 규제(비밀투료 및 파업중 임금지급 불허)
  - 현 정책의 노사 가입 권리 유지
  - 빌딩과 건설산업 분야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강한 제재 추진
  - 새로운 공평한 산업 관리 기관의 재정인 (Fair Work Australia)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인력 확충을 위해 기술이민제도의 재검토, 모든 중고등학교에 "기술훈련센터", "무역센터" 설치 등 기술 실무교육 강화 추진

#### □ 농업정책

- 가뭄 등 기후 변화 대응 정책으로 4년간 1억3천만 호불 지원 및 "Wheat Exports Australia"를 설립하여 농산물 수출 강화



## 2. 주요 산업 동향

### 가. 전체 산업 동향

#### □ 경제 구조 및 특징

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으로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다. 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만큼, 자본의 외국 의존도가 높으며, 외국 자본이 경제 개발 및 자원 개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3차 산업이 매우 발달했으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1차 산업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제조업은 GDP 기여율이 12%에 불과 해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호주 수출은 농림 수산물에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동남 아시아 및 중동 시장을 타겟으로 생산 수출되고 있다.

### 나. 각 주 별 산업 현황

호주는 연방국가로 6개의 주(States)와 두 개의 자치 테리토리(Territor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드니가 위치해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는, 1911년에 캔버라를 호주의 캐피탈 테리토리(ACT), 즉 연방 정부의 수도로 정하였다.

호주 전체의 인구는 2천만 명이며 면적은 7,682,300km<sup>2</sup> 이다.

#### 뉴 사우스 웨일즈 주

|       |                                                                    |
|-------|--------------------------------------------------------------------|
| 수도    | 시드니                                                                |
| 인구    | 5,962,000명                                                         |
| 면적    | 309,443 평방 미터                                                      |
| 주요산업  | 철강산업과 기계산업, 전기, 섬유, 화학산업 등 호주 전체 생산량의 3분의 2가량의 석탄 생산               |
| 주요농산물 | 양모, 쇠고기, 곡물, 설탕, 낙농식품, 각종 과일                                       |
| 특이사항  | - 풍부한 은과 아연의 보고지. 풍부한 지하자원 및 농산물 해외 다량 수출.<br>- 시드니와 수도인 캔버라가 위치함. |

#### 빅토리아 주

|       |                                                                                                                                                                                              |
|-------|----------------------------------------------------------------------------------------------------------------------------------------------------------------------------------------------|
| 수도    | 멜번                                                                                                                                                                                           |
| 인구    | 4,452,000명                                                                                                                                                                                   |
| 면적    | 87,884 평방 미터                                                                                                                                                                                 |
| 주요산업  | 자동차, 의약품, BT, 섬유 및 식품가공 산업                                                                                                                                                                   |
| 주요농산물 | 곡물, 낙농식                                                                                                                                                                                      |
| 특이사항  | -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주로 내륙에 위치<br>- 높은 인구밀도<br>- 자동차산업 및 R&D를 기반으로 하는 호주 제조업의 중심지<br>- 호주 유명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본부가 다수 소재<br>- 호주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 차지<br>- 인구 밀집지역이 흩어져 있는 호주의 지리적인 특성상 시드니 상권과는 별개 |

퀵랜드주

|       |                                                                                                                                                                   |
|-------|-------------------------------------------------------------------------------------------------------------------------------------------------------------------|
| 수도    | 브리스베인                                                                                                                                                             |
| 인구    | 3,022,000명                                                                                                                                                        |
| 면적    | 667,000 평방 미터                                                                                                                                                     |
| 주요산업  | 관광산업, 농산물 수출 산업                                                                                                                                                   |
| 주요농산물 | 설탕과 곡물, 면 등                                                                                                                                                       |
| 특이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대 우림에서 온난한 기후대의 다양한 기후</li> <li>- 아연, 동, 니켈, 석탄 및 천연가스 대량 매장지역</li> <li>- 관광산업은 1960년대 이래 발전하여 온 이 지역의 주요 산업</li> </ul> |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       |                                                                                                                                                                  |
|-------|------------------------------------------------------------------------------------------------------------------------------------------------------------------|
| 수도    | 퍼스                                                                                                                                                               |
| 인구    | 1,658,000명                                                                                                                                                       |
| 면적    | 975,290 평방 미터                                                                                                                                                    |
| 주요산업  | 기계, 철강 및 운송기기 산업                                                                                                                                                 |
| 주요농산물 | 양모, 고기.                                                                                                                                                          |
| 특이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유럽과 비슷한 면적</li> <li>- 수도 퍼스에 지역 인구 70%거주</li> <li>- 농업에 부적합한 토양</li> <li>- 풍부한 양의 금과 각종 미네랄, 철, 니켈 등의 자원 매장</li> </ul>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       |               |
|-------|---------------|
| 수도    | 아들레이드         |
| 인구    | 1,458,000명    |
| 면적    | 380,070 평방 미터 |
| 주요산업  | 전기제품, 자동차 산업  |
| 주요농산물 | 와인 그라이프, 고기   |
| 특이사항  | 농업에 부적합한 토양   |

노던 테리토리

|      |                          |
|------|--------------------------|
| 수도   | 다윈                       |
| 인구   | 169,000명                 |
| 면적   | 520,280 평방 미터            |
| 주요산업 | 광 산업                     |
| 특이사항 | 우라늄과 구리, 보크사이트, 망간 다량 매장 |

타스마니아

|       |                                                        |
|-------|--------------------------------------------------------|
| 수도    | 호바트                                                    |
| 인구    | 470,000명                                               |
| 면적    | 26,383 평방 미터                                           |
| 주요산업  | 목재, 철강, 섬유 산업                                          |
| 주요농산물 | 양고기, 각종 과일.                                            |
| 특이사항  | Bass 해협으로 대륙과 분리되어 있으며, 그 사이의 작은 섬들이 하나의 작은 주를 이루고 있음. |

## 다. 자동차 산업

2006년 6월말 기준, 호주 인구는 2,065만 명을 기록하였는데,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량은 약 1,440만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호주인 두 사람당 자동차 한대(2: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미국과 캐나다 다음으로 높은 자동차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호주의 자동차산업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네랄 모터스 홀덴(General Motors Holden)의 경우 남부호주 지역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생산량의 3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아시아 자동차 회사들의 적극적인 호주시장 개척으로 인하여 호주 자동차 산업은 가격, 기술개발 및 투자 측면에서 서서히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호주정부는 Ford Australia가 호주 내 자동차 신모델 개발 및 글로벌 디자인 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호주화 18억불을 투자기로 한 데 대한 답례로 2006년 5월 초에 호주화 1억불 이상을 Ford Australia에 지원기로 발표하는 등 자동차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Ford 자동차가 디자인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인 GM, Toyota, Ford가 공히 호주 빅토리아주에 국제 디자인센터를 가지게 됨에 따라 빅토리아주가 자동차 디자인 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매년 약 40만대의 자동차가 호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데, 총 생산량의 약 35%에 해당하는 14만대 정도가 중동 등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자동차관련 액세서리 및 부품은 '06년 말 기준, 약 A\$ 14억8천만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수출되었다.

2007년 3월 기준, 호주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평균 차령(average age)는 10.2년으로 나타났으며, 1991년 이전에 제조되어 차령이 16년 이상 된 차량이 전체 자동차의 23.0%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약 54%에 해당하는 6백만 대의 차량은 Toyota, Holden, Ford 브랜드였는데, 전체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이들 브랜드의 비중은 각각 18.8%, 18.5%, 1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 선호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호주에서 가족용 차로 변함없는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로는 GM Holden사의 Commodore, Toyota의 Camry이며, 그 다음이 포드사의 펄콘 (Falcon), 미쯔비시의 마그나 및 버라다(Magna & Verada)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호주는 30여 개 국가로부터 60여 개 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는 데, 2006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9만5천대)는 일본(36만7천대), 태국(10만3천대)에 이어 對 호주 3위 수출 국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2007년 11월 기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호주 내수시장 판매량은 각각 4만3천2백대 및 1만2천2백대로서 판매량 순위에서 각각 8위와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소형승용차 시장에서 토요다 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경쟁이 치열한 데, 토요다 자동차의 야리스 (Yaris) 모델은 '05년 말 에코(Echo)모델의 후속작으로 호주에 선보인 뒤 '06년은 물론 '07년 1-11월 기간 중에도 판매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i30 모델은 '07년 11월 호주 자동차 전문지인 Carsguide에서 '올해 최고의 자동차'와 '올해의 친환경차'로 선정되어 향후 소형자동차 부문에서 선전이 기대된다.

최근 들어 호주 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같은 추세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기업들의 對 호주 자동차 OEM부품 공급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호주 내 자동차 메이커의 부품 공급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 원활한 의사소통, QS9000 또는 ISO/TS16949의 품질인증 획득과 Just-in-time의 공급 체계 확보는 물론 KOTRA가 주최하는 자동차부품 구매 상담회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 된다.

2006년 6월에 멜버른 무역관이 호주 내 자동차부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업체의 81.3%가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품질경쟁력에 대하여 경쟁적이거나 매우 경쟁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미흡하다고 평가한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바, 우리 수출업체들이 가격 면에서만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자동차부품의 對 호주 수출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다.

## 라. 환경 산업

### 1) 현 황

호주 대륙의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환경은 다른 대륙과의 단절 속에 진화 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병균과 해충으로부터 면역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호주의 공기 및 수질 오염도는 낮은 편이며 호주에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 대하여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 실천방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태양열 버스(Green Bus)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매년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특별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5-96년 동일기간 환경보호를 위한 민간 기업과 국영기업의 총 투자액은 79억 5천만 달러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92-93년의 수치보다 약 20억 달러 가량 늘어난 것으로 호주 정부와 국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호주는 20%(412.4m)의 정부예산과 4%(245.2m)의 비 정부예산을 환경에 대한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쓰고 있다

호주 연방 정부에서는 Waste Wise Construction Program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산업 및 건설 쓰레기를 최소화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하여 최근 도입된 것이다.

#### □ Waste Wise Construction Program

90년도 초에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산업 및 건설용 쓰레기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된바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Civil & Civic과 Multiplex, Fletcher Construction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98%, 60%, 43%의 건설 및 산업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다.

지난 98년에 발생한 시드니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는 식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킨 바 있으며, 근래 Gore Bay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효과적인 수질정화 기기와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시킨 바 있다.

뉴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는 수질오염 정화문제 이외에 교통부처와 공동으로 Clean Air 2000이라는 맑은 공기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태양열로 이동하는 무공해 Green Bus를 시험 운영 중에 있다.

호주는 자연환경을 수호하고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기후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바 있으며, 호주의 사람, 동물 및 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농수산물 수입과 해외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각종 병균과 해충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으로 대처하고 있다.

호주는 스웨덴의 뒤를 이어 Eco-Labeling 제도를 도입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라벨 제도는 특정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재활용품의 이용이 있었는지, 재질이 세균분해가 가능하며, 무공해 생산과정을 거쳤는지 등의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 및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어 시민 단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Eco-Labeling: 9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 표기법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제조 과정의 재활용여부를 알리는 표기법이다.
- Energy Labeling: 1986년부터 실행 중인 제도이며, 이는 전기 및 전자제품을 별 1에서 6개로 등급을 나눠 에너지 효율성을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함이다.

최근에 실시된 호주 국민들의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공기오염(전체 32.4%)과 수질 오염(24.1%)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아래 매년 Clean Up Australia Day라는 대 국민 캠페인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Clean up Australia Day에는 매년 3월에 실시하며, 70 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 국민 캠페인으로 매년 150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 2) 특 성

호주 환경산업의 특성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카운슬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주도적인 역할은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와 비 정부기관에서 맡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호주는 관광업을 주요 산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고, 국토 전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으며,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유명한 관광지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호주가 관광산업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96년 통계로 보면 총 160억불로 석탄이나 제조업 수출액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정부와 각 지역 카운슬에서는 호주의 환경을 각종 오염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해안가의 각종 오염으로 산호초의 멸종위기가 심각히 대두된바 있으며, 해안가의 오염된 수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방법이 거론 중에 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시민 단체들의 호응을 얻어 Beach Watch 라는 해안 감시 기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해안으로의 폐수방출과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호주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 및 보호 활동보다는 환경보호 단체들 즉, Environmental Activist와 같은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카운슬에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Environ-Australia와 Green Peace등의 비 정부 기관들은 정부와 지역 카운슬의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안수질 보호를 위해서 각 지역 카운슬에서는 Stormwater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질정화 업체와 업무실적(Performance based contract)에 따른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매년 Public Environmental Reporting을 실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기업, 시민 단체들 이 공동으로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문제점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호주의 내륙지방에서는 산불(Bush Fire)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방화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자연유산신탁(Natural Heritage Trust)의 일부 자금은 수목감소 중단, 토양재생 및 온실효과를 야기하는 가스 억제에 사용되고 있다.

### 3) 전 망

호주는 총면적 4천 2백 4십만 헥타에 달하는 11개의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와 울르르를 포함하는 13개의 자연환경은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같은 세계적인 환경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립 공원과 세계유산지역은 관광객과 방문객이 체류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대략 일년에 6백만 명 이상의 해외 방문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광업은 앞으로도 계속 호주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호주의 대 자연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한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호주는 국토 전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산호초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 정화시설 및 기기들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으로 있으며, 재활용을 중요시 하는 산업 전반상의 구조 때문에 산업 쓰레기를 이용 재활용품을 만들어 내는 재활용품 산업 또한 유망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주요 도시의 공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대형 빌딩내의 공기정화 시설, 먼지 흡입기, 각종 정화필터의 자동청소 제품 등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추세로 판단된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00년 ~ 2004년 5년간 총 404백만 불을 환경관련 분야에 투자한 바 있으며,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현재 호주 전체 차량의 5%만이 경유(디젤)를 주유하고 있으며, 버스에는 오염 배출도가 낮은 압력 천연가스의 사용을 늘릴 전망이다. 주정부 도로 교통국은 향후 10년 계획으로 버스와 기차의 새로운 네트워크 라인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유(디젤)연료 테스트 프로그램과 새로운 대체 연료를 개발 중에 있다.

#### 4) 진출확대 방안

호주는 대표적인 환경 보호국으로 호주 자연환경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호주의 환경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은 시민단체나 비정부 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각 지역 카운슬별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의 경우 직접적인 참여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 카운슬이나 시드니 수도국 등에서 예를 들어 수질정화의 하청을 줄 경우 performance based contract 즉, 하청업체의 업무실적이나 능력에 따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산업 및 공업용 폐수중 식수로까지 깨끗이 정화될 수 없는 물을 다시 한번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 실험 단계로 23억 5천만 리터의 물이 시드니 수도국에 의하여 재활용 되고 있다.

오존층의 파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 환경보호국) 와 RTA (Road and Traffic Authority - 도로국)은 공동으로 태양열 버스(Green Bus)를 실험 운행 중에 있으며, International Centre for Application of Solar Energy 에서는 호주의 실정에 맞는 태양열 에너지의 개발 및 연구에 힘쓰고 있다.

그 밖에 도심지에 있는 대형 빌딩내의 공기 정화 필터 및 기기, 오염 토양 테스트기, 폐휴지 재활용 기기, 산업용 및 공업용 쓰레기의 재활용 산업, 먼지 압축기, 고체 쓰레기의 재활용 방향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 마. 대체 에너지 산업

##### 1) 에너지 소비 및 공급 현황

호주의 에너지 소비는 90년대에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0년까지는 연평균 2.2% 수준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2001/2002년 호주의 전체 에너지 소비는 5,055PJ (PetaJoules)이며 2003 /2004년은 약 5,271PJ 임. 에너지의 최대 수요처는 발전, 수송, 제조 및 건설 부문임.

주요 에너지원 별로 에너지 공급 현황을 보면 원유 및 석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원에 있어 자급 및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체 수급현황을 분석하면 호주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 하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 부문 흑자는 주로 석탄의 생산에 기인한 것임.

##### 2) 대체 에너지 개발 현황

##### □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초

대체에너지 개발 및 장기 에너지 전략과 관련한 호주 정부의 정책기조를 '에너지 혁신(Energy Innovation)'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러한 혁신전략은 국가전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인 BAA (Backing Australia's Ability, 2001)및 BAA2(Backing Australia's Ability-Building our future through science and innovation, 2004)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 에너지 부문 주요 혁신 프로그램

|                                                     |                                                                                                                                                                                              |
|-----------------------------------------------------|----------------------------------------------------------------------------------------------------------------------------------------------------------------------------------------------|
| Renewable Energy Commercialisation Program (RECP)   | - 총 6라운드에 걸쳐 대체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당 A\$10만 ~100만 규모의 펀드 지원<br>- 라운드 당 약 5개의 프로젝트 지원                                                                                                                 |
| Renewable Energy Equity Fund (REEF)                 | -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벤처캐피탈의 형태로서 유망 기업에 대해 최고 A\$3백만까지 지분 투자<br>- 현재 수혜 기업은 Battery Energy, Wind Corporation Australia, Superior Energy Systems 등 7개사임                                               |
| Photovoltaic Rebate Programme (RVRP)                | -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가구, 건물주에 대해 현금 보조<br>-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가구의 경우 최대 A\$4,000까지, 건물주에 대해서는 최대 A\$8,000까지 지원                                                                                       |
| Remote Renewable Power Generation Programme (RRPGP) | -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대체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br>- 주로 주정부 별 개발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하는 형식으로 지원되며 총 규모는 약 A\$2억으로 전망됨                                                                                      |
| Mandatory Renewable Energy Target (MRET)            | - 정부는 Renewable Energy(Electricity) Act 2000과 Renewable Energy(Electricity) Regulations 2001을 통해 2010년까지 대체 에너지에 의한 9,500GWh 규모의 추가적 전력생산을 추진하고 있음<br>- 이는 4백만 명이 소비하는 주거용 전기를 충당할 수 있는 전력량임 |
| Alternative Fuels Conversion Programme (AFCP)       | - 상용차(버스, 3.5톤 이상 트럭 등)의 신규구매 또는 엔진 시스템 교체에 대해 50%까지 지원<br>- 신규 구매 시 동급의 석유연료 차량과의 차액을 소요 비용으로 봄                                                                                             |

## 바. 낙농 산업

## □ 총괄

호주 낙농업(dairy)제품 생산규모는 33억 호주 달러로 농산품 중 소고기, 밀에 이어 세 번째이다. 전체 전체 농장수는 8800여 개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의 약 50%가 수출되고 있다. 낙농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용인구는 약 4만 명으로 추산된다.

## □ 농장 현황

호주는 유리한 기후 및 토양조건으로 인해 유우(乳牛)에 대한 먹이공급의 75%를 방목(grazing)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생산원가를 의미한다. 등록된 농장의 수는 2005·2006 기준 총 8844개로, 빅토리아 주가 5892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NSW주, 퀸즈랜드주가 각각 1024개, 802개로 2,3위이다. 농장의 수는 1995·1996년 1만 3888개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나 호주의 경우 낙농부문 규제철폐, 2002·2003년 대규모 가뭄이 대형 농장에 의한 흡수합병을 촉진시킨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 □ 우유 생산

2005·2006 우유생산량은 1억 9200만 리터로 2001·2002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유우(乳牛)수는 2006.6월 기준 198만 5000마리이며, 이 역시 1998년 이래 지속 적으로 감소했으나 1마리당 우유생산은 연간 5034리터로 20년 전에 비해 두배로 증가하였다.



## □ 낙농제품 생산

우유 가공 분야는 여타의 농업분야와 같이 끊임없는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다. 지난 4년간 낙농제품 생산이 부진을 보임에 따라 신규시설 투자압력은 낮은 상태이며 기존시설의 활용 극대화가 생산업체들의 최대 과제이다.

기존에는 생산자조합(co operatives)이 낙농제품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현재 이들의 비중은 55%까지 감소하였다. 생산자조합사 중 가장 큰 기업은 Murray Goulburn이며 Dairy Farmers Group, Bonlac Supply Company, Bega 등 연간 우유 사용량(intake volumes)이 1~10억 톤에 이르는 중소규모 조합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호주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기업은 Fonterra, San Miguel, Parmalat, Nestle, Kraft 등이다.

호주 낙농기업들의 주요 생산제품 라인은 1) SMP(skim milk powder)·BMP(butter milk powder)·Butter, 2) butter·casein 3)cheese 4) WMP(whole milk powder)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치즈와 WMP 생산에 무게가 실려가는 추세이다.

## □ 낙농제품 시장

우유를 제외한 낙농제품의 경우 전체의 80%가 수출되며 우유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50%가량이 수출되고 있다.

### 호주의 낙농제품별-지역별 수출 및 매출 실적(2005)

|            | 남-동<br>아시아 | 기타<br>아시아 | 유럽  | 중동  | 아프리카 | 아메리카 | 기타  | 총수출   | 총매출   |
|------------|------------|-----------|-----|-----|------|------|-----|-------|-------|
| Milk       | 37         | 33        | 4   | 10  | 1    | 5    | 18  | 108   | 2,356 |
| Butter/AMF | 67         | 32        | 24  | 24  | 19   | 55   | 3   | 224   | 270   |
| Cheese     | 73         | 398       | 59  | 185 | 36   | 67   | 18  | 836   | 1,248 |
| SMP/BMP    | 386        | 119       | 3   | 57  | 12   | 17   | 28  | 622   | n/a   |
| WMP        | 274        | 137       | 0   | 30  | 36   | 40   | 24  | 541   | n/a   |
| 기타         | 82         | 113       | 28  | 2   | 1    | 73   | 31  | 330   | 1,591 |
| 합계         | 919        | 832       | 118 | 308 | 105  | 257  | 122 | 2,661 | 5,465 |

총 수출의 66% 정도가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며 일본이 가장 큰 수입국이다. 일본은 호주 전체 낙농제품 수출 물량의 14%를 차지하며 한국도 10위권 내에 속한다.

### 호주의 주요 낙농제품 수출국(물량 및 금액 기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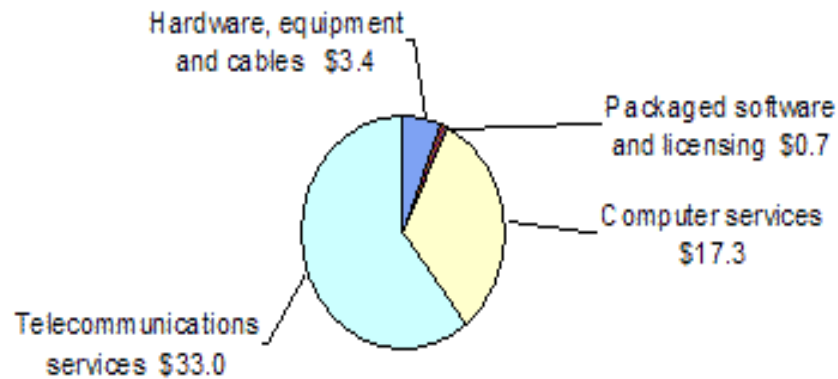
| country  | Volume-tonnes | % of total | country  | Value-A\$-millions | % of total |
|----------|---------------|------------|----------|--------------------|------------|
| 일본       | 121.123       | 14%        | 일본       | 442                | 17%        |
| 상가포르     | 88.244        | 10%        | 말레이시아    | 211                | 8%         |
| 말레이시아    | 70.782        | 8%         | 인도네시아    | 193                | 7%         |
| 필리핀      | 67.881        | 8%         | 싱가포르     | 189                | 7%         |
| 인도네시아    | 67.764        | 8%         | 필리핀      | 161                | 6%         |
| 태국       | 49.023        | 6%         | 사우디 아라비아 | 149                | 6%         |
| 사우디 아라비아 | 37.126        | 4%         | 미국       | 142                | 5%         |
| 대만       | 35.242        | 4%         | 태국       | 129                | 5%         |
| 미국       | 32.801        | 4%         | 대만       | 106                | 4%         |
| 홍콩       | 31.696        | 4%         | 한국       | 83                 | 3%         |

자료원: Dairy Australia and ABS

## 사. ICT 산업

### □ 산업 규모

2004·2005 기준 호주 ICT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따른 매출(revenue from production)은 544억 호주 달러임이다. 전체 매출 중 약 60%를 통신서비스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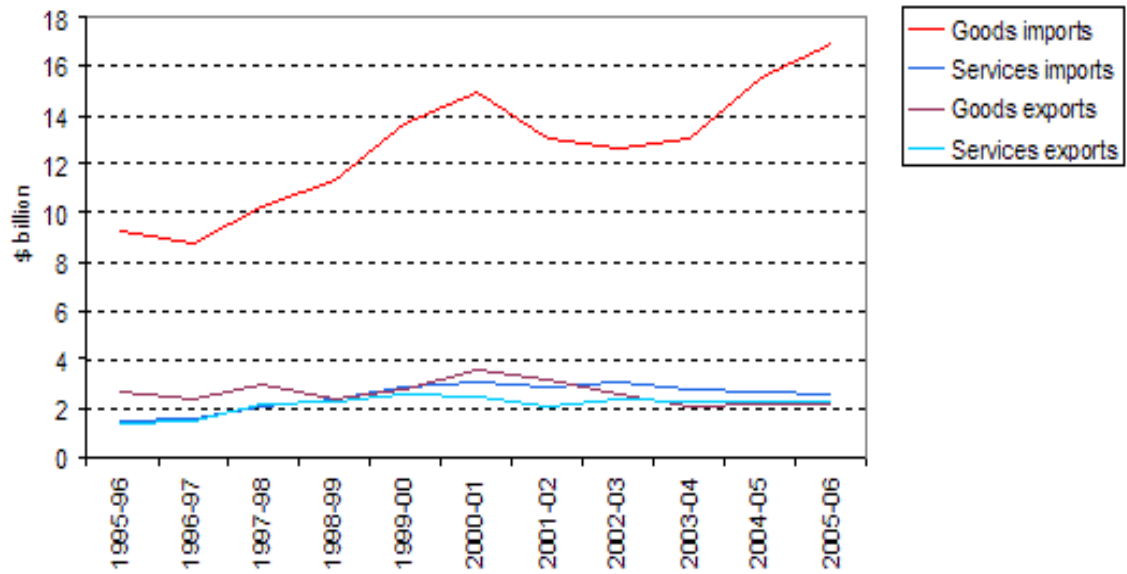
ICT 업계의 전체 소득(industry income)은 1033억 호주 달러로 통신 서비스와 유통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부문의 비중은 4% 미만이다. ICT 전문기업(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ICT 제품 및 서비스로부터 획득하는 기업)이 올린 소득이 약 90%를 차지한다.

|                                                           |         |
|-----------------------------------------------------------|---------|
| Manufacturing                                             | 5,141   |
| computer and business machine                             | 818     |
| Telecommunication, broadcasting and tranceiving equipment | 1,386   |
| Electronic equipment n.e.c                                | 1,991   |
| Electric cable and Wire                                   | 946     |
| Wholesale Trade                                           | 40,271  |
| computers                                                 | 21,285  |
| business machines                                         | 3,368   |
|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n.e.c                 | 15,618  |
| Telecommunication Services                                | 35,755  |
| Computer Services                                         | 22,183  |
| Data Processing                                           | 193     |
|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 192     |
| computer maintenance                                      | 588     |
| computer consultancy                                      | 21,210  |
| Total                                                     | 103,3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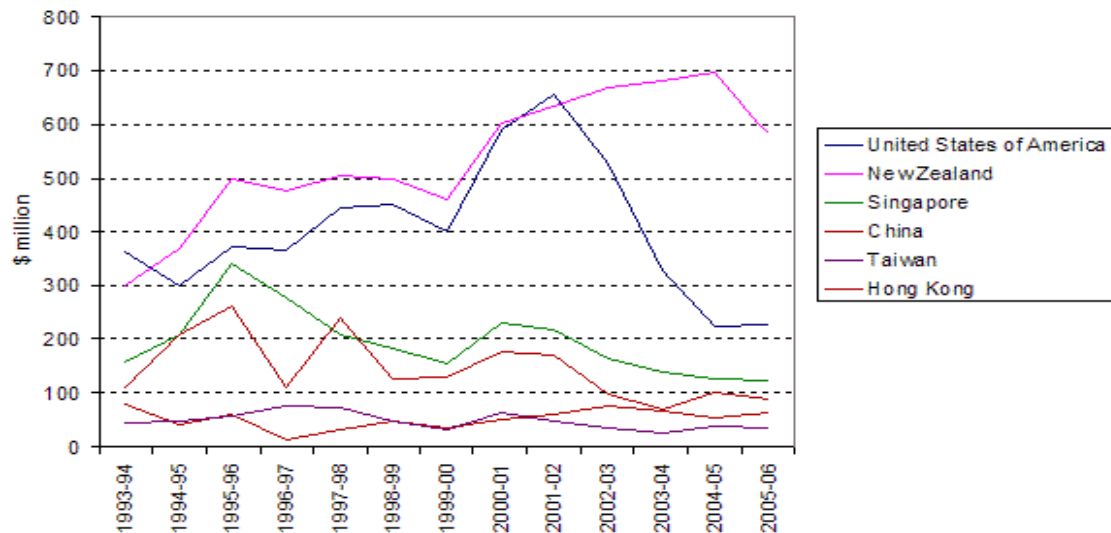
### □ 교역

호주의 2005·2006 ICT 제품 수출은 전년보다 1.8% 감소한 21억 7000만 호주 달러를 기록했다. 제품 수입은 전년보다 9.6% 증가한 17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뉴질랜드는 호주의 최대 수출국이나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수입국으로 대중 수입규모는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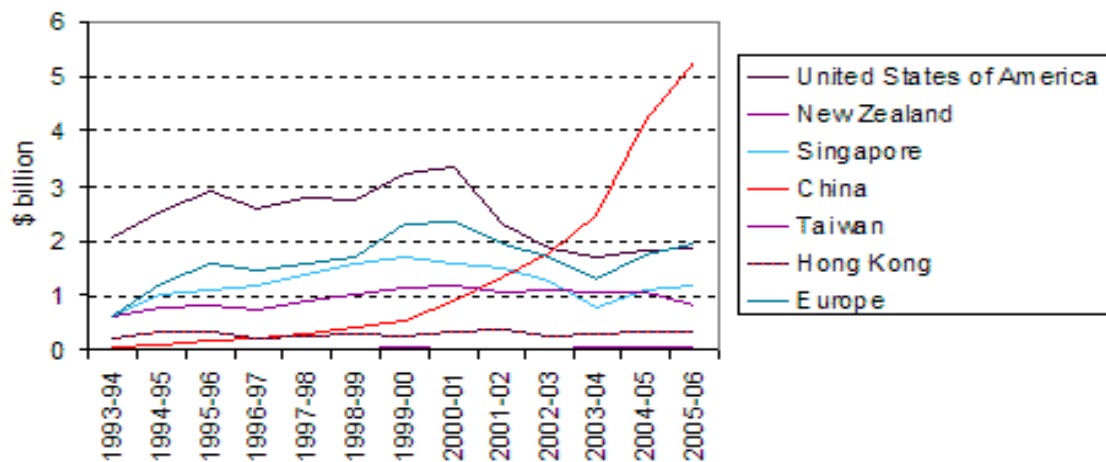
호주의 ICT 제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 추이



주요 수출국별 ICT 제품 수출 추이



주요 수입국별 ICT 제품 수입 추이



## □ 고용

약 37만 명이 ICT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중 92%가 전업근로자이다. 2004·2005년 전체 기술이민자 중 19%에 해당하는 5197명이 computing 전문가이다. 2006.9월 기준 IT 부문 신규 채용 수요는 43%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산업 평균 34%를 웃도는 것이었다.

## □ R &amp; D 활동

ICT 부문의 R & D 지출은 연간 약 30억 호주 달러로 이는 호주 전체 R & D 지출의 약 25%에 이른다. ICT 관련 R & D 지출의 절반 정도는 사회, 환경, 국방 등 비 ICT 부문에 의해 이루어졌다.

R&D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문은 information, computing, communication sciences로 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가. 기 체결 FTA

|        | 타결    | 발효   | 의의                                                                                                                                                                                                                           |
|--------|-------|------|------------------------------------------------------------------------------------------------------------------------------------------------------------------------------------------------------------------------------|
| 호-뉴질랜드 |       | 1966 | - 1966년 발효된 호-뉴 FTA는 현재 상품, 서비스 교류는 물론 각종 세관 정책, 규제 등에까지 보조를 같이하는 ANZCERTA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까지 발전해 왔음                                                                                              |
| 호-싱가포르 | 03.2  | 03.7 | - 싱가포르의 동남아 진출확대를 위한 중요 교두보로서 인식됐으며 ASEAN 국가 중 호주와의 무역-투자 교류가 가장 활발<br>- 한편 싱가포르의 높은 사회간접자본 및 인적자원 수준, 경제 자유화도 등으로 인해 FTA 체결은 서비스 수출 및 직접투자 확대의 좋은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                                                               |
| 호-태국   | 03.10 | 05.1 | - 최고 80% 수준인 태국의 높은 관세와 수입쿼터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공산품 및 농산품의 진출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br>- 2006년 태국은 호주의 8위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04년 12위)<br>- 또한 전반적인 직접투자 및 서비스 수출 환경이 크게 개선됐으며 특히 지분제한 완화로 광업, 컨설팅, 유통, 건설 부문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호-미국   | 04.5  | 05.1 | - AUSFTA는 1989년 미국-캐나다FTA에 이은 선진국간 두 번째 FTA임<br>- 호주측은 미국상품의 호주진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호주상품의 대미 진출에 큰 전환점이 온 것으로 평가<br>- 그 혜택으로 A\$ 2000억 규모의 미국 조달시장의 진출기회 확대, 향후 10년간 호주의 GDP가 A\$60억 증가, 2012년 까지 고용 0.3% 증가 등이 기대됨          |

## 나. 협상 진행 중인 FTA

|                   |                                                                                                                                                                                                                                                                                                                         |
|-------------------|-------------------------------------------------------------------------------------------------------------------------------------------------------------------------------------------------------------------------------------------------------------------------------------------------------------------------|
| 호 - 아세안<br>- 뉴질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11 협상 개시 발표</li> <li>- 타결 후 2014년까지 합의 내용의 완전 실행이 목표</li> <li>- 관세인하 및 철폐, 원산지규정 관련 사항 등 상품관련 사항은 순조로운 진행</li> <li>- 서비스시장 개방 관련, 진출규제의 negative listing을 요구하는 호주 등과 positive listing을 요구하는 아세안 국가들 간의 이견 차이가 계속</li> </ul>                                                 |
| 호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12 협상 개시</li> <li>- 호주의 대 칠레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05년 A\$4.2억으로 칠레는 중남미 국가로서는 호주의 제3위 교역 파트너임.</li> <li>- 호주기업들의 대 칠레 투자액은 총 A\$28억 달러</li> </ul>                                                                                                                                   |
| 호 -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4월 양국 정상은 협상 개시를 발표</li> <li>- 07.4월 8차 협상</li> <li>- 호 중 협상에 있어서도 투자부문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면 상품시장 개방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짐</li> <li>- 7차 협상부터 제품표준 검사 영업권 등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li> <li>- 호주정부, 2007/08년 예산에 호·중 자유무역협정 관련예산으로 향후 2년간 1270만불 배정</li> </ul> |
| 호주 - 말레이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4 협상 개시</li> <li>-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2위, 전체 국가 중 9위에 해당하는 호주의 교역 파트너</li> <li>- 06. 11 하워드 수상은 말레이시아 방문 시 양국간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힘</li> </ul>                                                                                                        |
| 호 -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4 최초 협상 개시</li> <li>- 공동 타당성 조사는 광범위하고 WTO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FTA 체결은 양국에 중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음</li> <li>- 호주정부, 2007/08년 예산에 호·일 자유무역협정 관련예산으로 향후 2년간 약 400만불 배정</li> </ul>                                                                                                  |
| 호 - 걸프<br>경제공동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ulf Cooperation Council(GCC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과 호주의 FTA 협상 준비 단계인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li> </ul>                                                                                                                                                                           |
| 한 - 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무현 대통령의 호주 순방에 맞춰 2006년 12월 타당성 조사 개시 발표</li> <li>- 조사기관: 한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호주 - ITS Global</li> </ul>                                                                                                                                                                          |

## 다. 신정부의 FTA 정책 전망

- 노동당의 기존 FTA 정책 비판 내용
  - 명목상으로는 다자간 협상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간 협상에 치중해 왔음
  - FTA가 호주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상타결 자체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음.
  - 현재까지 발효된 FTA는 호주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음.
  - 환경문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포괄적 FTA 결여
  - 협상 과정에 대한 공개가 부족함.
  - 협상 시작 전의 타당성 검토 및 영향 평가 조사가 부실했음.
- 노동당 집권 이후의 FTA 추진 전망
  - 다자간 협상과 양자간 협상의 우선권 문제는 특별히 현정부의 의지라고 보기는 어려움. 즉, 다자간 협상이 2006년 중단위기를 거쳐 겨우 재개되는 등 극히 부진을 보였기 때문에 하워드 정부가 양자간 협상에 집중했다고 볼 수도 있음.
  - 따라서 노동당 집권 이후에도 특별히 양자간 FTA 협상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음.
  - 또한 FTA 타결이 다자간협상 진척에 비해 해당부처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므로 관계 부처들은 FTA 협상진행을 지속 추진할 것임.
  - 노동당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FTA를 축소해야 된다.”와 같은 식의 극단적 주장은 일절 퍼지 않고 있음.
  - 다만 절차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협상 진행이 상당히 느려질 가능성은 있음.

### III. 무역

#### 1. 수출입동향

##### 가. 호주의 수출입 동향

##### 1) 2003 - 2005 수출입 실적

##### 교역 실적 및 주요 교역대상국

(단위: US십억불, %)

| 순위 | 국가   | 2003  | 2004  | 2005  |
|----|------|-------|-------|-------|
|    | 전체   | 155.2 | 190.0 | 224.4 |
| 1  | 일본   | 23.4  | 28.5  | 34.6  |
| 2  | 중국   | 15.3  | 21.2  | 28.4  |
| 3  | 미국   | 19.5  | 22.0  | 23.3  |
| 4  | 한국   | 8.3   | 10.3  | 12.2  |
| 5  | 뉴질랜드 | 8.6   | 10.2  | 10.9  |

##### 수출 실적 및 주요 수출국

(단위: US십억불, %)

| 순위 | 국가   | 2003 | 2004 |      | 2005  |      |
|----|------|------|------|------|-------|------|
|    |      | 금액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전체   | 70.4 | 86.4 | 22.8 | 105.7 | 22.3 |
| 1  | 일본   | 12.8 | 16.3 | 27.2 | 21.6  | 32.7 |
| 2  | 중국   | 6.0  | 8.1  | 35.4 | 12.2  | 51.3 |
| 3  | 한국   | 5.3  | 6.7  | 27.7 | 8.3   | 23.3 |
| 4  | 미국   | 6.2  | 7.0  | 13.3 | 7.1   | 0.8  |
| 5  | 뉴질랜드 | 5.3  | 6.4  | 20.7 | 6.9   | 6.5  |

##### 수입실적 및 주요 수입국

(단위: US십억불, %)

| 순위 | 국가 | 2003 | 2004  |      | 2005  |      |
|----|----|------|-------|------|-------|------|
|    |    | 금액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전체 | 84.8 | 103.7 | 22.2 | 118.7 | 14.5 |
| 1  | 미국 | 13.4 | 15.1  | 12.5 | 16.3  | 8.4  |
| 2  | 중국 | 9.3  | 13.2  | 40.8 | 16.2  | 23.5 |
| 3  | 일본 | 10.6 | 12.2  | 15.4 | 13.0  | 6.7  |
| 4  | 독일 | 5.3  | 6.0   | 14.7 | 6.6   | 10.2 |
| 9  | 한국 | 3.1  | 3.6   | 16.4 | 4.0   | 9.5  |

##### 2) 2006 교역 동향

2006년 호주의 수출은 US\$ 1,234억(전년비 16.6% 증), 수입은 US\$ 1,327억(전년비 11.9% 증)로 US\$93억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 대상국이자 6위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교역 기준 4위에 해당(일 - 중 - 미 - 한)한다. 석탄, 철광석 등 원자재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한편 원유, 석유제품, 금,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 호주의 2006년 주요국별 수출입 실적

(단위: US\$ 백만, %)

| 순위 | 주요수출국 | 금액      | 증가율  | 주요 수입국 | 금액      | 증가율  |
|----|-------|---------|------|--------|---------|------|
| 0  | 전체    | 123,446 | 16.6 | 전체     | 132,680 | 11.9 |
| 1  | 일본    | 24,422  | 12.8 | 중국     | 19,237  | 18.4 |
| 2  | 중국    | 15,413  | 25.6 | 미국     | 18,377  | 12.7 |
| 3  | 한국    | 9,304   | 11.6 | 일본     | 13,008  | -0.3 |
| 4  | 미국    | 7,604   | 7.8  | 싱가포르   | 8,101   | 23.5 |
| 5  | 뉴질랜드  | 6,751   | -1.6 | 독일     | 6,785   | 2.3  |
| 6  | 인도    | 6,672   | 25.5 | 한국     | 5,195   | 32.0 |

## 호주의 2006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US\$백만, %)

| 수출   |        |         |      | 수입   |         |         |       |
|------|--------|---------|------|------|---------|---------|-------|
| HS   | 품목명    | 금액      | 증가율  | HS   | 품목명     | 금액      | 증가율   |
|      | 전체     | 123,446 | 16.6 |      | 전체      | 132,680 | 11.9  |
| 2701 | 석탄     | 17,535  | 5.6  | 2709 | 원유      | 10,016  | 25.2  |
| 2601 | 철광석    | 10,905  | 29.6 | 8703 | 승용차량    | 9,483   | 2.3   |
| 7108 | 금      | 6,892   | 55.8 | 2710 | 석유(비원유) | 6,539   | 39.9  |
| 2709 | 원유     | 5,070   | 5.9  | 8471 | 컴퓨터     | 4,833   | 6.9   |
| 2711 | 석유가스   | 4,566   | 29.9 | 3004 | 의약품     | 4,461   | 2.3   |
| 2818 | 산화알루미늄 | 4,547   | 28.4 | 7108 | 금       | 4,351   | 104.7 |
| 7601 | 알루미늄   | 4,111   | 34.2 | 8704 | 수송차량    | 3,343   | 9.9   |
| 2603 | 구리     | 3,144   | 62.0 | 8525 | 무선통신기기  | 2,963   | 26.8  |
| 1001 | 밀과 메슬린 | 2,539   | 11.6 | 8802 | 항공기     | 1,732   | -17.7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3) 2007 교역동향

2007년 호주의 수출은 1,411억불(전년비 14.3% 증), 수입은 1,578억불(18.9% 증)로 무역수지 적자는 167억불을 기록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내구 소비재 수요 증가로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 호주의 2007 교역 총괄

(단위: US\$백만, %)

|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 2007 | 141,100 | 14.3 | 157,831 | 18.9 | -16,731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2007년 호주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뉴질랜드 등이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한국, 미국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한국은 호주의 전체 교역 대상국 중 4위, 수출국 중 3위, 수입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 2007 호주의 주요국별 교역 동향(교역규모 순)

(단위: US\$백만, %)

| 순위 | 국가   | 수출     | 수입     | 교역     |
|----|------|--------|--------|--------|
| 1  | 중국   | 19,828 | 24,465 | 44,293 |
| 2  | 일본   | 26,703 | 15,166 | 41,869 |
| 3  | 미국   | 8,435  | 19,845 | 28,280 |
| 4  | 한국   | 11,317 | 5,008  | 16,325 |
| 5  | 뉴질랜드 | 7,963  | 5,274  | 13,237 |
| 6  | 영국   | 5,950  | 6,796  | 12,747 |
| 7  | 싱가포르 | 3,389  | 8,803  | 12,192 |
| 8  | 태국   | 3,709  | 6,628  | 10,337 |
| 9  | 독일   | 1,196  | 8,190  | 9,386  |
| 10 | 인도   | 7,757  | 1,226  | 8,984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품목별로 보면 광물.에너지 자원 중심의 수출 구조가 지속되면서 국제 원자재가 강세에 따라 철광, 금, 원유 등이 특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 2007 호주의 10대 수출품목

(단위: US\$백만, %)

| 순위 | HS   | 품명                   | 금액     | 증가율  |
|----|------|----------------------|--------|------|
| 1  | 2701 | 석탄 및 석탄제품            | 17,388 | -0.8 |
| 2  | 2601 | 철광과 그 정광             | 13,471 | 24.3 |
| 3  | 7108 | 금                    | 9,523  | 38.2 |
| 4  | 2709 | 원유                   | 6,730  | 33.6 |
| 5  | 2711 |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 5,144  | 10.6 |
| 6  | 2818 | 인조커런덤, 산화/수산화 알루미늄   | 4,979  | 8.5  |
| 7  | 7601 | 알루미늄의 괴              | 4,486  | 8.8  |
| 8  | 2603 | 동광과 그정광              | 3,171  | 2.7  |
| 9  | 3004 | 의약품                  | 2,924  | 28.2 |
| 10 | 2710 | 석유, 역청유(원유제외) 및 그 제품 | 2,674  | 13.9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수입품목 중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유 수입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경기 호황 지속, 주화 절상으로 자동차, TV 등 내구 소비재의 수입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 2007 호주의 10대 수입품목

(단위: US\$백만, %)

| 순위 | HS   | 품명                   | 금액     | 증가율   |
|----|------|----------------------|--------|-------|
| 1  | 2709 | 원유                   | 12,315 | 23.2  |
| 2  | 8703 | 승용차                  | 11,651 | 22.9  |
| 3  | 2710 | 석유, 역청유(원유제외) 및 그 제품 | 6,945  | 6.7   |
| 4  | 3004 | 의약품                  | 5,302  | 18.9  |
| 5  | 7108 | 금                    | 5,151  | 18.4  |
| 6  | 8471 | 컴퓨터류                 | 4,809  | -0.5  |
| 7  | 8704 | 화물차량                 | 4,597  | 37.5  |
| 8  | 8517 | 휴대폰 등 전화기류           | 3,804  | 182.4 |
| 9  | 8528 | 텔레비전 수상기, 모니터 등      | 2,416  | 61.4  |
| 10 | 8708 | 자동차부품                | 2,002  | 20.2  |

\* 휴대폰(HS8517) 수입 급증은 세번 변경에 기인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가. 한호 교역 동향

#### 1) 2006 한호 무역동향

2006년 한국의 대호 수출은 46억 9천만불(전년비 23.1% 증), 수입은 113억 1천 만불 (전년비 14.7% 증)이며 무역 적자는 66억 2천만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한-호 무역 동향**

(단위: US\$ 백만, %)

|      | 대호 수출 |      | 대호 수입  |      | 수지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 2002 | 2,340 | 7.7  | 5,973  | 7.9  | -3,634 |
| 2003 | 3,272 | 39.9 | 5,916  | -1.0 | -2,644 |
| 2004 | 3,378 | 3.3  | 7,438  | 25.7 | -4,059 |
| 2005 | 3,812 | 12.8 | 9,859  | 32.6 | -6,047 |
| 2006 | 4,692 | 23.1 | 11,309 | 14.7 | -6,617 |

품목별로는 승용차, 경유·항공유 등 석유제품, 화물선 및 특수선박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무선 전화기, 텔레비전, 종이류 등 기존 주력 품목은 부진을 보였다. 석유제품은 한국 정유사의 단위 공장 당 정제능력이 월등히 크고 가동률이 높아 고부가가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은 한국산 탱커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으며 시추선 등 특수 선박류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주력품목 (휴대폰, TV 등) 부진의 주요인은 글로벌 제조사간 경쟁심화, 아국 기업의 제조기업 해외 이전 등이다.

**대호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 순위 | 총계       | 금액    | 증가율   |
|----|----------|-------|-------|
|    |          | 4,692 | 23.1  |
| 1  | 승용차      | 922   | 24.7  |
| 2  | 석유 제품    | 683   | 179.4 |
| 3  | 무선전화기    | 408   | -8.3  |
| 4  | 텔레비전     | 285   | -13.0 |
| 5  | 화물선      | 118   | -     |
| 6  | 자동차부품    | 100   | -1.8  |
| 7  | 특수선박     | 99    | -     |
| 8  | 타이어      | 92    | 21.5  |
| 9  | 도포한지와 판지 | 85    | -2.7  |
| 10 | 냉장고, 냉동고 | 81    | 2.5   |

원유, 철광석을 비롯한 지하자원 수입은 전반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석탄 수입은 다소 감소하였다.

**대호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 순위 | 총계           | 금액     | 증가율   |
|----|--------------|--------|-------|
|    |              | 11,309 | 14.7  |
| 1  | 석유, 역청유 (원유) | 2,184  | 27.3  |
| 2  | 석탄, 연탄       | 2,180  | -6.3  |
| 3  | 철광과 그 정광     | 1,322  | 39.7  |
| 4  | 알루미늄의 괴      | 605    | 47.0  |
| 5  | 아연광과 그 정광    | 442    | 69.9  |
| 6  | 쇠고기 (냉동한 것)  | 433    | 21.1  |
| 7  | 사탕수수당        | 358    | 46.0  |
| 8  | 동광과 그 정광     | 314    | 178.8 |
| 9  | 석유가스         | 263    | -26.4 |
| 10 | 밀, 메슬린       | 223    | 13.7  |

자료원: 한국 관세청

## 2) 2007 한호 무역동향

## □ 교역 추이 및 전망

2007년 대호주 수출은 47억불(전년비 0.2% 감), 수입은 132억불(전년비 17% 증)로 무역적자는 85억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06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던 석유제품류 수출이 예년 수준으로 회귀(2.5억('05)→6.8억('06)→3.1억('07))한 것이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대호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3,715억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5위), 전체 수입(3,569억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위)이다.

## 최근 5년간 한-호 교역추이

(단위: US\$백만, %)

| 연도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 2003 | 3,272 | 39.9 | 5,916  | -1.0 | -2,644 |
| 2004 | 3,378 | 3.3  | 7,438  | 25.7 | -4,059 |
| 2005 | 3,812 | 12.8 | 9,859  | 32.6 | -6,047 |
| 2006 | 4,692 | 23.1 | 11,309 | 14.7 | -6,617 |
| 2007 | 4,691 | -0.2 | 13,232 | 17.0 | -8,541 |

자료원 : 한국관세청

2008년 대호주 수출은 2007년 대비 9.3% 증가한 51.3억불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관의 근거는 1) 호주의 안정적 경제성장, 임금 상승 및 감세정책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 승용차, 휴대폰 수출 호조 예상, 2) 자동차 관련 품목(타이어, 자동차 부품, 축전지 등) 동반 호조 전망, 3) 건설 경기 호황으로 철강제품(강판, 형강), 건설기계류, 전선류 등 수출 호조 전망, 4) 호주화 강세 지속으로 전반적 수입 구매력 제고, 5) 중국의 수출가격 상승 요인(증치세 환급률 인하, 위안화 절상, 노동비용 상승 등) 발생에 따른 상대적 가격경쟁력 제고 가능 등이나 호주의 설비 투자 둔화, 우리 주력 품목 시장의 경쟁강화, 호주 수입-한국 수출구조간 불일치 확대, 호주-아국 경쟁국간 FTA 확대 등은 수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 품목별 동향

주력 수출품목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건설기계류, 철강제품 등은 호조를 보인 반면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석유제품 등은 부진을 보였다.

한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축전지도 동반 호조를 보였는데, 2007년 호주 연간 자동차 판매실적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105만대를 기록하였으며 경제 호황 지속과 호주화 절상으로 수입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산 자동차의 신차 시장 점유율은 7.0%를 기록했으며 유력 전문지 추천 자동차에의 선정,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효과적 프로모션 등에 힘입어 점유율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산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또한 품질 개선과 인지도 향상,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수출 증가세 시현하였다.

통계상의 무선전화기(HS8517) 수입 급증은 세번 변경에 기인하며 실제 수출 증가율은 약 18%로 추정되는데 2006년 무선 전화기 수출은 -8.3% 감소한바 있다. 광업 및 인프라 부문이 견인하는 건설 경기 호조 지속으로 건설기계류 수출이 크게 신장하였음에도 2007/08

호주 전체 건설부문 매출은 10.8% 증가가 전망된다(2006/07 12.0% 증). 철광석 및 석탄가격 상승, 건설 경기 호조로 호주 전체 주요 철강제품 수입이 30~40% 증가하였으며 우리 제품 수출도 대폭 확대되었다.

펄프 가격 상승, 우리 기업의 고단가 지역(미국, 호주 등) 집중 공략, 포장산업의 종이 사용 확대 등으로 종이류 수출도 견조한 성장을 보였다. 석유제품 수출은 국내 정유 기업들의 공급능력 확대로 2006년 급신장 하였으나 2007년 예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TV, 냉장고 등 내구 소비재는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 2007 대호 15대 수출 품목

(단위: US\$백만, %)

| 순위 | HS   | 품목명                      | 금액    | 증가율     |
|----|------|--------------------------|-------|---------|
| 1  | 8703 | 승용차                      | 1,132 | 22.8    |
| 2  | 8517 | 휴대폰 등 전화기                | 564   | 1,597.0 |
| 3  | 2710 | 석유, 역청유(원유제외) 및 그제품      | 307   | -55.1   |
| 4  | 8528 | 텔레비전 수상기, 모니터 등          | 261   | -8.4    |
| 5  | 7108 | 금                        | 137   | 319.1   |
| 6  | 4011 | 타이어(신품)                  | 109   | 19.1    |
| 7  | 8708 | 자동차 부품                   | 107   | 7.1     |
| 8  | 4810 | 도포한지와 판지                 | 95    | 11.1    |
| 9  | 8429 | 자주식 불도저 등 건설기계류          | 74    | 19.0    |
| 10 | 72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69    | 20.4    |
| 11 | 8544 | 절연전선, 케이블 등              | 68    | 35.4    |
| 12 | 8418 | 냉장고·냉동고                  | 68    | -16.3   |
| 13 | 7216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 47    | 95.8    |
| 14 | 8507 | 축전지                      | 46    | 92.7    |
| 15 | 3907 | 폴리아세탈, 기타 폴리에테르/에폭시 수지 등 | 42    | -3.5    |

자료원 : 한국관세청

수입 품목을 보면 석탄과 원당을 제외한 원자재 및 농산물 전반이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높은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석탄 및 원당의 수입 감소는 주로 호주측 공급능력 한계에(가뭄, 석탄 수송망 병목 현상 지속 등) 따른 것이다.

### 2007 대호 15대 수입 품목

(단위: US\$백만, %)

| 순위 | HS   | 품목명                | 금액    | 증가율   |
|----|------|--------------------|-------|-------|
| 1  | 2709 | 석유, 역청유(원유)        | 2,853 | 30.7  |
| 2  | 2701 | 석탄 및 석탄제품          | 2,246 | 3.0   |
| 3  | 2601 | 철광과 그 정광           | 1,713 | 29.6  |
| 4  | 7601 | 알루미늄의 괴            | 657   | 8.5   |
| 5  | 202  | 쇠고기(냉동)            | 457   | 5.7   |
| 6  | 2608 | 아연광과 그 정광          | 405   | -8.5  |
| 7  | 2603 | 동광과 그 정광           | 344   | 9.5   |
| 8  | 2607 | 연광과 그 정광           | 334   | 78.8  |
| 9  | 1701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 290   | -18.8 |
| 10 | 2711 |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 270   | 2.7   |
| 11 | 8407 | 불꽃점화식의 왕복식/로터리식 엔진 | 265   | 20.0  |
| 12 | 720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 239   | 66.6  |
| 13 | 1001 | 밀과 메슬린             | 235   | 5.0   |
| 14 | 201  |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      | 226   | 17.7  |
| 15 | 7502 | 니켈의 괴              | 197   | -11.6 |

자료원 : 한국관세청

### 3. 수입규제제도

#### 가. 수입 허가

동식물, 의약품 등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 수입은 사전수입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산품의 경우에도 자동차는 사전 수입허가를 득해야 한다. 동식물 등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호주에 수입되기 전(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에 반드시 호주 세관 에서 제시하는 수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수입상은 수입대상 물품의 카탈로그 등 세부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관은 관련 부처와의 상의를 거친 후 수입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검역관련 관관부처(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에서는 수입허가 신청 품목에 대한 Risk Analysis Management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특정품목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다.

#### 나. 원산지 규정

수입된 모든 품목들에는 원산지 규정(ROO)이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은 관세, 수입할당, 반덤핑, 상계관세, 라벨링 문제 등의 이유로 필요하게 되는데, 호주는 1995년에 체결된 WTO의 원산지 규정을 따르고 있다.

WTO 회원국에서 생산된 물품들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빠른 처리와 여러 혜택이 고려되며, 특혜 관세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원산지를 규정하는 원칙은 수입된 품목이 어느 특정한 한나라에서 전부 생산되었는지, 아니면 한나라 이상에서의 생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짓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를 적용함으로써 판단되기도 한다.

- 관세 등급/분류에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
- 자세한 제조 과정
- 첨부된 다른 부가가치의 비율

**그 밖의 원산지 규정에 따른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할 수 있다.**

- Director Origin Australian Customs Service
- 5 Constitution Ave Canberra ACT 2601 Australia
- Fax : 02-6275-6377
- Home Page: <http://www.customs.gov.au>
-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좌측 메뉴판에서 'import/export'를 클릭, 'rules of origin'을 선택

#### 다. 관세법 위반 시 제재내용

관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케이스 별로 분류/적용되어 처리된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 업자나 업체에서 전체적인 벌금이나, 부분적인 벌금을 물게 된다. 수입된 품목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벌금이 부과되지만,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서류상의 오류를 인정하여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벌금은 서류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하며 최소 벌금은 A\$500 이다.

- 호주 세관 정보센터
  - New South Wales 3rd Floor, Tower Sydney Central Building, 477 Pitt St GPO BOX 8 Sydney NSW 2000
  - Tel) 1300-363-260
  - Fax) 02-9213-4043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Customs House
  - 5 Constitution Ave Canberra City ACT 2601
  - Tel) 02-6275-5041
  - Fax) 02-6275-6005

## 라. 검역제도

호주는 해외로부터 질병 및 병충해 도입을 막기 위하여 엄격한 검역규정을 갖추고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검역은 Quarantine Act 1908에 의거하여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가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는 AQIS의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된 경우 실제 검역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샘플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빠른 검역통과를 위해서는 세부 사항의 정확한 라벨링과 편리한 포장상태가 요구된다.

### 모든 품목들에 대한 일반적인AQIS의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다.

- 물품 반입시 호주 검역청에 제반 선적서류 제시
- 검역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 작성
- 검역관의 검역실시(정밀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역관이 지정하는 특정 검역장소로 운반)
-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인도
- 검역의 결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의 성질에 따라 소독/폐기/기타 처리 됨
- 검역이 완료된 경우 검역청은 확인서류 발급
- 검역완료 이후 수하인이 7일 이내에 물품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검역청은 해당 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음

### 검역기준에 따른 식품류의 주요 품목별 수입허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 Canned Meat Product(캔 처리된 고기 식품)
  - 생선류가 아닌 육류를 5%이상 함유한 식품류는 수입 시 사전허가 필요
- AQIS의 승인을 받은 가공공장에서 제조된 상품만 수입가능
- 육류는 열처리 되어야 하며, 공인된 밀폐용기에 담아야 함
- 도살된 가축은 도살 전후에 공인된 수의 공무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함
- 매 선적 분마다 공인된 수의사가 발행한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 소고기 성분의 맛이 함유된 라면 등 면류의 제품은 수입 시 사전허가 필요
- Poultry(가금류)
  - 조리된 통조림 제품(cooked canned poultry)은 특별한 가공조건을 충족해야 함
  - Cooked uncanned poultry의 제품은 뉴질랜드에서만 수입 가능
- Dairy Products(유가공 식품)

- 모든 유가공 및 유함유 제품을 10%이상 함유한 식품류는 AQIS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수출국을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음
  - Category1: Foot and Mouth Disease(FMD)가 없는 국가
  - Category2: FMD의 예방접종을 하고, 지난 24개월 동안 FMD의 발병이 없는 국가
  - Category3: 기타국가
- Fish and Fish Products (어류 및 어류 식품)
  - 연어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산물에 별다른 큰 문제 없음
- Eggs and Egg Product(달걀 및 달걀 제품)
  - 계란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으며, 계란 함유량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AQIS의 허가 하에 수입이 가능
- Fresh Fruits and Vegetable(신선한 과일 및 채소): 수입 시 사전허가 필요
- Frozen Fruit and Vegetable(냉동과일 및 채소): 18°C상태로 운송된 제품만 수입 가능

#### 마. 수입금지 지역

AQIS는 특별히 수입금지 지역을 정하여 놓지는 않고 있으나, 국가/지역별로 한해 호주의 사람/동물/식물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을 정하여 놓고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 품목을 재배/생산하는데 대한 양 국가간의 특정협약이 이루어 졌을 때에는 수입이 가능하다. 그의 한 예로, 필리핀의 망고는 수입금지 품목 중 하나였으나, 필리핀이 호주의 pest risk협정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수입되고 있다.

#### 바. 수입금지 품목

식물성 생산품 중 모든 과일과 야채는 수입 시 허가가 필요하며 AQIS의 Risk Analysis Management 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품목별로 아래와 같은 규정을 갖고 있다.

- 사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산에 대해 수입금지
- 배: 전 국가(단, 한국산 배는 호주 phytosanitary requirements 충족 시 수입가능)
- 오렌지: 미국 및 오렌지를 제외한 전 국가
- 단감: 미국(캘리포니아산에 한함)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키위: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매실: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전 국가
- 양잠: 전 국가산에 대해 수입금지
- 땅콩: 경작용(종자용)은 수입금지
- 호프: 종자는 수입금지 (가공생산을 위해서만 수입허용)
- 초목류(Plant의 경우)
  - Narcissus Fly, Genud Musa, Xanthomonas Campestris, Fire Blight (고사병), Pear Blight (배고사병), Cabbage Butterfly (배추흰나비), Pieris Rapae, Pseudomonas Syringae, Corynebacterium Flaccumfaciencens, Colletotrichum Lindemuthianum, Mosaic (모자이크병), Narcissus Fly, Downy Mildew (노균병), Wood Wasps(목재 말벌)등의 질병 및 해충의 위험이 있는 식물은 수입금지
  -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규제가 따른다.

- 계란 수입 금지(계란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류의 경우 AQIS 허가 여부에 따라 수입가능)
- Foot and Mouth Disease(FMD)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유가공 및 유가공 제품은 수입불가
-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는 완전 수입금지
- 돼지고기류도 사전허가 필요

그 밖에 내용물이 사실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이 불가하다.

#### 사. 검역 관련기관

그 밖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호주 검역청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수입 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은 검역청의 ICON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케이스 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웹 사이트로부터도 접근이 가능한데, 호주 검역청의 웹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 Australian Quarantine & Inspection Service
  - <http://www.affa.gov.au/outputs/quarantine.html>
  - Tel) 02-6272-5999
  - Fax) 02-6272-5373

#### 아. 수입쿼터

수입쿼터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 자.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록절차 개관

대호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출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TGA 등록절차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한다. 아래 설명은 의료기기 중심이나 의약품도 이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호주 의료기기 시장은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에서 규제함.

- 일반 연락처
  - Email : [info@tga.gov.au](mailto:info@tga.gov.au)
  - Phone : 02 6232 8610
  - Fax : 02 6232 8605
  - Post : TGA, PO Box 100, Woden ACT 2606, Australia
  - <http://www.tga.gov.au>
- 일반적인 의료기기 관련 연락처
  - Email : [cab.medical.device.information@tga.gov.au](mailto:cab.medical.device.information@tga.gov.au)
  - Phone : 1800 141 144 (freecall) / Fax : 02 6232 8785
  - Post : Office of Devices, Blood & Tissues, PO Box 100, Woden ACT 2606, Australia
- 의료기기 테스트 관련 연락처
  - Email : [cab.medical.device.information@tga.gov.au](mailto:cab.medical.device.information@tga.gov.au)
  - Phone : 02 6232 8432 / Fax : 02 6232 8555
  - Post : Office of Devices, Blood & Tissues, TGA, PO Box 100, Woden ACT 2606, Australia

- Device Electronic Application Lodgement (DEAL, 온라인 등록시스템) 제도 관련 연락처
  - Email : cab.medical.device.information@tga.gov.au
  - Phone : 1800 141 144
  - Fax : 02 6232 8785

#### □ 의료기기 규제 체계

- 규제법령: The Therapeutic Goods Act 1989
  - 이 법령은 <http://www.comlaw.gov.au>에서 전문 조회 가능함.
-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의 하위조직인 The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가 상기 법령의 집행을 담당하며 The Office of Devices, Blood and Tissues(ODBT)가 의료기기 규제와 직접 연관된 부서임.
- 규제체계의 특징
  - 의료기기의 세부 분류는 각 기기가 가진 위험도에 따라 나뉨짐.
  - 합법적 판매와 관련한 규제제도의 핵심은 TGA에의 등록(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 )임.

#### □ 의료기기 등록 기본체계

- 모든 의료기기는 TGA에의 등록이 요구됨.
- 의료기기 등록과 관련한 표준 및 규제 등은 미국, 유럽 등의 체계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CE Mark 등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테스트 절차의 생략이 가능함. 단 이 경우에도 TGA에 대한 등록자체는 필수적임
- 호주 내에서의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TGA 등록은 호주측 파트너(법률에서는 Australian Sponsor라고 규정하고 있음.)만이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일반적 수출의 경우 바이어나 에이전트가 등록 절차를 수행하게 됨.
- 기존에 등록된 의료기기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ttp://www.tgasime.health.gov.au/SIME/ARTG/ARTGPublicWeb.nsf/DEVpublic?OpenView>

#### □ 등록대상 의료기기

- TGA는 의료기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아래의 목적으로 인간에게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 기계, 기구, 물질, 물품(any instrument, apparatus, appliance, material or other article (whether used alone or in combination, and including the software necessary for its proper application) intended by the person under whose name it is to be supplied, to be used for human beings for the purposes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diagnosis, prevention, monitoring, treatment or alleviation of disease
- diagnosis, monitoring, treatment, alleviation of or compensation for an injury or handicap
- investigation, replacement or modification of the anatomy or of a physiological process
- control of conception



- 위 장치, 기구 등의 액세서리도 포함
- 약리학, 면역학,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료 기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방법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구는 의료기기로 분류됨.
- 요약하자면 제조자가 치료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서 판매를 하는 경우 예외없이 TGA의 등록 대상인 ‘Medical Device’로 분류됨.

#### □ 의료기기 분류

- 사용 목적, 위험도, 인체에의 침습성(invasiveness)에 따라 크게 5개 카테고리로 분류.
- 상세한 분류 자료는 다음 문서 참조: <http://www.tga.gov.au/docs/pdf/devguid25.pdf>

#### □ 적합성 검사(conformity assessment )

- 위에서 언급한 분류에 따라 등록하려는 의료기기가 충족시켜야 할 적합성 조건 도출.
- 해외 수출업자가 당해 적합성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호주내 또는 해외에서 TGA 또는 TCA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테스트를 받는 방법과, CE Mark를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호주의 적합성 검사 절차는 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를 모델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CE 마크가 있는 경우 등록에 문제가 없으나 해당 CE 인증을 인정인지의 여부는 TGA가 결정함.
  - CE 마크 인증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http://www.tga.gov.au/devices/fs\\_eccert.htm#g](http://www.tga.gov.au/devices/fs_eccert.htm#g) 4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 □ 등록 관련 컨설턴트의 수배

- 기존에 TGA는 테스트를 포함한 등록 절차 수행을 의뢰할 수 있는 컨설턴트의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나 현재는 아래 관련 협회 리스트만을 등록하고, 해당 협회를 통해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음.
- Association of Therapeutic Goods Consultants Inc.
  - PO Box 273
  - ANNANDALE NSW 2038
  - Website : [www.atgc.com.au](http://www.atgc.com.au)
  - Email : [info@atgc.com.au](mailto:info@atgc.com.au)
  - Fax : 02 9660 8106
- The Australian Self-Medication Industry Association
  - PO Box 764
  - North Sydney NSW 2059
  - Website : [www.asmi.com.au](http://www.asmi.com.au)
  - Ph 02 9922 5111
  - Fax : 02 9959 3693

- Complementary Healthcare Council (CHC)
  - PO Box 104
  - DEAKIN WEST ACT 2600
  - Website : [www.chc.org.au](http://www.chc.org.au)
  - Ph : 02 6260 4022
  - Fax : 02 6260 4122
- Association of Regulatory and Clinical Scientists 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CS)
  - Suite 904
  - 28 Clarke St
  - CROWS NEST NSW 2065
  - Website : [www.arcs.com.au](http://www.arcs.com.au)
  - Ph : 02 8905 0829
  - Fax : 02 8905 0830
- Medical Industry Association of Australia Inc (MIAA)
  - PO Box 299
  - ST LEONARDS NSW 1590
  - Website : [www.miaa.org.au](http://www.miaa.org.au)
  - Ph : 02 9437 1151
  - Fax : 02 9437 3177
- 한국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행사
  - [PDF 문서](#)를 참조하기 바람.

#### 4. 대한수입규제 동향

##### □ 전반적인 수입규제 동향

2007년 11월 30일 현재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총 19개 품목으로로 지속 감소세에 있다(27개('04.12) → 28개('05.12) → 23개('06.12) → 22개('07.5)→ 19개('07.11)) 수입규제 유형별로는 상계관세(countervailing)부과가 1건(프랑스산 브랜디)이며 나머지는 모두 반덤핑관세부과 대상이다.

품목군 별로는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무기 화학제품 품목, 철강 및 철강제품 품목 등도 주요 규제 대상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최대 수입규제 대상국(7개 품목)이며 한국은 2위(6개 품목)로 마침내 한국은 호주의 최대 수입규제 대상국의 명예를 벗게 되었다.

한편 현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대상 품목은 태국산 이동식 휴지통 1품목 뿐이다. 법규 및 제도상 특별히 주목되는 변화는 없으며, 이상의 자료로 판단컨대 호주의 전반적인 수입규제 수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대한 수입규제 동향

2007.12.10 현재 총6개 한국산 품목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수입규제 유형은 모두 anti-dumping이다.

대한수입규제 현황(07.12.10 현재)

| 품목                  | HS코드                                                             | 유형  | 조사<br>개시  | 최종<br>판정  | 비고                                                                   |
|---------------------|------------------------------------------------------------------|-----|-----------|-----------|----------------------------------------------------------------------|
| 백판지                 | 4810.13.90/56<br>4810.19.90/57<br>4810.29.90/64<br>4810.99.00/85 | 반덤핑 | '04.12.15 | '05.7.28  | 관세율: 31.7%<br>'05.7.27 가격인상약속 발효                                     |
| 철/합금강의<br>평판압연제품    | 7208.52.00/41                                                    | 반덤핑 | '03.8.20  | '04.4.2   | 동국제강 0.4%(이후 미소마진<br>판정), 포스코, 기타 10.6%                              |
| 고밀도폴리에틸렌<br>(HDPE)  | 3901.20.00/03                                                    | 반덤핑 | '02.10    | '03.12.18 | 대림산업 무혐의, 기타업체 적용<br>2007.12.3 연례재심 개시                               |
| 초저밀도폴리에틸렌<br>(LDPE) | 3901.10.00/01<br>3901.90.00/06                                   | 반덤핑 | '02.10    | '03.12.3  | '05.9.23, 연례 재심결과 현대<br>무혐의,<br>기타업체 적용. 내용 대외비<br>2007.12.3 연례재심 개시 |
| PVC                 | 3904.10.00/18                                                    | 반덤핑 | '99.4     | '00.3.24  | 관세율:9~34%(36.9~75\$/MT)<br>'05.11.9 재심 결과 관세부과<br>5년 연장              |
| 세탁기                 | 8450.11.00/40/<br>03/04<br>8450.20.00/08                         | 반덤핑 | '02.7.15  | '03.9.18  | 관세율:8% LG전자 무혐의<br>2007.8.21 연례재심개시                                  |

기존에 규제를 받던 품목 이외에 신규로 조사대상이 되거나 반덤핑 관세 적용을 받는 한국 품목은 없으며 수입규제 적용을 받는 한국산 품목의 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10개(06.6)→9개(06.12)→8개(07.5)→6개(07.12))

## □ 2007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폴리올(PPG, HS3907.20.00/36)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07.4.27.부로 종료됨
- 열연형강(HSS, HS7261.31.XX)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07.7.5.부로 종료됨
- 발포성폴리스티렌(EPS, HS3903.11/12)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07.11.5.부로 종료됨
- 신규조사 개시, 예비판정 등 한국제품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12.10 현재까지 없었음

## 5. 관세제도

- 각 품목의 관세율은 호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4273>
- 호-미 FTA, 호-태 FTA 등의 체결로 미국 및 태국에서 수입된 품목은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0% 이거나 유예 품목이 있으므로 위 관세율표 상의 schedule 5와 6을 참조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관세율표 보는 법(예: 5402.33류 품목)

5402.33 .....품목명..... 5%, DC 5%

Unless otherwise indicated NZ, PG, FI, DC, LDC and SG rates are Free.

Unless indicated in Schedule 5, rates for US originating goods are Free.

Unless indicated in Schedule 6, rates for TH originating goods are Free.

- 기본 관세율은 5%이며 DC 국가 역시 5%가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석을 보면 싱가포르,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LDC 국가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미국 및 태국 산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 무관세이나 schedule 5와 6을 참조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LDC 국가와 DC 국가(주로 후진국, 개발도상국)의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customs.gov.au/webdata/resources/tariff/schedule1a.pdf>
-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HS CODE                        | 5402.33.00          |
|--------------------------------|---------------------|
| 일반                             | 5%                  |
| 미국                             | 2010년 전까지 3%, 이후 0% |
| 태국                             | 2007년 1%, 08년부터 0%  |
| 싱가포르,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LDC 국가 | 0%                  |
| DC국가                           | 5%                  |

- 원산지규정에 의해 한국제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적용될 뿐이다.
- 한편 모든 품목에는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General Sales Tax)가 부가되나 향후 수입업자는 관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6. 주요인증제도

호주의 공산품 품질인증제도는 무척 까다롭게 운용되고 있다. 유럽의 EC나 미국의 UL등 선진국 인증을 갖고 있어도 호주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그런 사례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품목에서는 까다로운 자국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인증제도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 가. 품질인증제도 개요

- QAS 마크 제도 (Quality Assurance Services): 호주는 1966년부터 자국 내 생산 제품과 수입제품이 호주 내 관련기관이 정한 기술표준과 호주 표준협회(Standard Australia)가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엄격한 검사과정을 통하여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본 취지이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수입규제 요인이 되기도 한다.
- RCM 마크 제도 (Regulatory Compliance Mark): QAS와 같은 취지이나, 특히 전기제품에 한정하여 1998년에 도입되었으며 형식적으로는 자율성을 띠고 있으나 전기제품 생산/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제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 나. 적용 대상 품목

### □ QAS 마크

품질 보증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품목은 정부 관련기관이 정하고 있으며, 품목 별로 별도 규정이 있다.

### □ RCM 제도

모든 전기제품

## 다. QAS 주요 내용

- QAS(품질마크제도): 제품 품질 및 생산공정이 호주의 기술표준과 Standard Australia 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사하는 제도임.
-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발성을 띤 제도로서 특정품목의 유관기관에서 별도의 표준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별도규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 미 이행 시 수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강제성을 띤다.
  - 예)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제정한 자동차 안전벨트의 표준안전기준, Urban Australian Water Authority가 정한 하수도/배관 관련 품목 안전기준 등
- 도입(시행) 시: 196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품질을 보증하는 Standard Mark로 사용되고 있음.
- 적용 대상 품목: 호주 QAS의 품질보증마크 획득을 희망하는 모든 품목

## 라. 공통검사항목

QAS 는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제품을 검사함.

-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안전성, 환경, 위생, 성능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되었는지 여부
- 제조공정상 품질관리(Quality of Manufacturing):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직접 제조과정 확인.
- 사후관리(Ongoing Monitoring): 품질보증마크 획득 이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QAS 마크 부착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랜덤 샘플링 및 공장 방문 검사 등)

## 마. 주관기관: 호주표준협회 (Standards Australia)

- 호주의 표준규격을 제정하는 주관기관은 Standards Australia(민간기관)이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품의 표준규격 및 규율 등을 제정한다. (예, 통신기기 관련 제품규정은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가 제정)

- 품질보증 마크의 등록/검사 및 승인 등 실무업무는 Standards Australia의 계열사인 SAI-Global사가 대행하고 있는데, 동 사는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 Standards Australia 연락처
  - 주소: 286 Sussex St. Sydney NSW 2000 (GPO BOX 5420, Sydney, NSW 2001, Australia)
  - 전화: (국내) 1800 623 503, (해외에서 걸 때) (61-2) 8206 6060
  - 팩스: (61-2) 9746 4765
  - 웹사이트: <http://www.standards.org.au>
  - 이메일: [researchsydney@standards.org.au](mailto:researchsydney@standards.org.au)
  - 설립연도: 1922년
  - SAI-Global사의 연락처도 위와 동일 함.

## □ 건강식품 및 의약품 관련 인증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이 의약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수입되기 위해서는 호주 식약청(TGA)의 인증이 필요하나 실제 한국 기업이 이 인증을 획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제품심사와 공정심사로 이루어지는 동 인증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어 한국제품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고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경우는 호주 식약청으로부터 간소한 절차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호주 내 인증대행 기관(한국인 담당자 있음)
  - Testing and Certification Australia
  - [www.tca.com.au](http://www.tca.com.au)
  - 전화: 612 9410 5111
  - 주소: 14 Nelson st. chastwood NSW2064

## 7. 지적재산권

호주는 지적재산권을 매우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현실에 맞추어 너무 지나친 규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기업이 호주 내에서 지재권을 침해 받은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지적 재산권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특허권(Patent)

특허란 새롭게 개발/개선된 상품이나 특정 방법으로 창의력과 유용함이 내재되어 있는 제품에 주어지는 권리이다. 이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데, 장기적인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이디어나 신기술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허권의 신청자는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인들과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 예술작품이나 수리학적 모델, 계획(Scheme)을 포함한 정신적 사고에 의한 것은 특허로 인정될 수 없다. 호주의 특허관련 업무는 IP Australia ([www.ipaustralia.gov.au](http://www.ipaustralia.gov.au)) 에서 맡고 있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5년째 되는 해부터는 매년 유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나. 상표권(trade mark)

상표권은 단어나 기호, 그림, 음악, 향기, 로고 등을 포함하거나 이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 집합체로서 다른 상품과 구분되어 질 수 있는 그 상품만의 특성을 가진 제품에 주어지는 것이다.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은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며, 호주 내에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지역 이름이나 특정 성(Surname), 혹은 일반인들에게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상표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호주에서 상표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나, 공정거래 위원회(Department of Fair trading and Practice) 의하여 등록이 권고된다. 최초 상표권 등록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종료 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10년씩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상표권 등록업무는 Trade Mark office of IP Australia 가 관할한다.

## 다. 디자인

디자인이란 완제품의 패턴이나 모양,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디자인의 등록은 제품의 패턴이나 모양이 상업적인 용도이며, 이에 따른 보호를 원할 때 등록이 가능하며 예술 작품의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다.

등록된 디자인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2개월간 보호되며 총 16년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등록 및 관리업무는 Design Office of IP Australia 가 관장한다.

## 라. 저작권

저작권은 문학, 미술, 음악, 필름, 방송, 멀티미디어와 컴퓨터 등에 적용되는데, 이는 원본을 무료로 무단 복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 받게 하는 법적 조치이다. 원본 자료는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의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Copyright Act 1968에 의하여 저작권의 라이선스와 권리를 인정 받게 되는데, 원본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나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Fair dealing Provision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저작권의 명확한 표기 (copyright notice)가 의무는 아니나 필름이나 방송, 멀티미디어 관련 품목에는 저작권 표기가 권고되고 있다.

작품의 성격 및 출판여부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제한이 있다. 예술 및 문학작품은 대개 작가의 사망 혹은 최초 출판된 해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영화 및 음향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 및 방송된 때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2003년 초부터 음반업체들이 대학생들의 CD무단복제 및 배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은 이들 학생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참고로, 호주 관세청의 웹사이트에서도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지적재산권 문제가 수출입 상품의 통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http:// www.customs.gov.au](http://www.customs.gov.au)를 방문하여, 좌측 메뉴 바에서 import/export를 선택하면 intellectual property를 찾을 수 있다.)

○ 주요 참고 사이트

- [www.ipaustralia.gov.au](http://www.ipaustralia.gov.au)

· 동 사이트에서는 상표 및 상호 등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 8. 통관/운송

호주의 수입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지연 등 특별히 까다로운 점은 없으며 소요 시간도 짧은 편이다. 과거에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서류 미비, 항만노조의 잦은 파업 등이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 가. 수입통관 절차

- 수입된 물품들의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서류수속을 밟아야 하며, 수입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추후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수입절차 이행 후 에라도 수입된 날짜로부터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
- 수입신고는 전 과정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검역에 관련이 없는 물품들의 98%가 Green Line으로 분류되며, 그 밖의 검사과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Red Line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검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 구체적인 검사내용은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 소재하고 있는 호주 관세청에서 폭 넓게 연결된 최신 컴퓨터 데이터망(Compile-System)을 통하여 검사의 체계적인 아웃라인이 잡히게 되며, 이 컴퓨터 시스템은 수입된 품목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관련서류 신고 시 Electronic Entry에 A\$30불, Manual Entry에 A\$50불 가량이 소요된다.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A\$2000(약 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 통관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제출서류와 절차

#### □ 제출 서류

선하증권(Bill of Lading)원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ountry of Origin)

#### □ 기본적인 절차

- ① 선적 및 선적서류 송부
- ② 도착통보(Arrival Notice)
  - Shipping Company: 선박도착 일시
  - Bank: B/L원본 및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도착 통보
- ③ 통관서류 제출(Fax /Courier)-Customs Agency
- ④ 품목별 상품분류(Hs Code)-Tariff Classification
- ⑤ 제세 산출
  - 관세(Duty): FOB x Duty Rate
  - Goods & Service Tax(GST, 일종의 부가가치세) : 관세 부과후의 금액 x 10%



## ⑥ Customs Entry(세관신고-Customs Computer Terminal Compile 시스템)

## ⑦ Nature 10: Wharf에서 통관

- Nature 20: Wharf->Bond
- Nature 30: Bond->통관

- Nature10,20,30는 세관신고 서류의 양식으로서, 일반적으로 Nature10,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화물인도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Nature20, Nature30를 선택한다.
- 식품류의 경우 Nature 10에 의하여 부두에서 조건부 통관한 후 지정된 검역 장소로 이동하여 검역과정을 밟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 나. 세관검사(Computer Clearance)

- Green-Line으로 분류된 품목들은(98%) 검사가 생략되며, Red-Line으로 분류된 품목들은 세부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 세관 직원에 의한 검사(Custom-Inspection)시 착안사항
  - 수량(Quantity)
  - 가격(Value)
  - 원산지(Country of Origin)
  - 라벨(Label)
  - 상업용 마크(Commercial Mark)
  - 유사 상품(Trade Mark)
  - Community Protection

## 다. 검역(Quarantine Inspection)

- 컴퓨터에 의한 검사와 검역직원에 의한 검사로 나뉜다.
- 제품 및 컨테이너와 팔레트에 대한 훈증 처리 여부를 주로 체크한다.

## 라. 제세 납부

- 통관수속과 동시에 지불해야 하는 제세
  - Duty
  - Goods & Service Tax(GST)
  - Overseas/Air Freight
  - B.S.R.A. & D/O/ITF & IDF
  - Custom Computer Terminal 사용료
  - Owner Code Application Fee
  - Supplier Code Application Fee
-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Service Charge는 1주일 내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Customs Agent's Fee/Professional Attendance Fee
  - Cartage to Warehouse Fee(필요한 경우)
  - Unpacking Fee(필요한 경우)
  - Cartage

## 마. 그 밖의 사항

- 모든 서류들은 알아보기 쉽게 명시/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 수입된 물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물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소 15시간이 (공휴일 제외) 걸리게 된다.
- 통관문제를 위하여 세관의 브로커를 이용할 경우, 일 처리가 보다 신속히 진행되는데, 세관 브로커를 알선해주는 브로커 카운슬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Tel) 61-2-9314-1711, Fax) 61-2-9314-2484
- 세관의 전산화 시스템으로 인하여 대략98%의 통관수속이 별다른 방해 없이 진행되나 수입업자나 업체에서 개별적인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최소24 시간 이상의 시간 소모가 예상된다.

## 바. 관련기관

- 일반적인 자료는 세관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케이스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할 경우 세관 정보센터의 이메일로 연락하면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Australian Customs House
  - 5 Constitution Ave Canberra City ACT 2601
  - Tel) 02-6275-5041/1300-363-263
  - Fax) 02-6275-6005
  - <http://www.customs.gov.au>
  - [Information@customs.gov.au](mailto:Information@customs.gov.au)
- AQIS Policy and International Division
  - Tel) 02-6272-5584
  - Fax) 02-6272-3307
- Import Risk Analysis Secretariat
  - Tel) 02-6272-6337
  - Fax) 02-6272-3307

## 사. 호주의 한국인 관세사

- Rohde & Liesenfeld P/L (윤광홍 공동대표)
  - 4A Lord Street (PO Box 362) Botany NSW 2019 Australia
  - Tel) 61-2-9666-1322
  - Fax) 61-2-9666-9466
  - E-Mail: [bobyoon@rlaus.com.au](mailto:bobyoon@rlaus.com.au)

## 아. 운송

- 호주전체 교역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금액기준)은 74%(수입 38%, 수출 36%)이며 항공운송의 비중은 26%이다.

- 호주에는 크고 작은 35개의 항구가 있으며, 이중 멜버른항이 호주최대의 항만으로 호주 전체 물동량의 약 40%를 처리하고 있다. 수입 물동량 기준으로는 시드니가 최대이며 시드니와 멜버른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2개 항구가 호주시장 진출의 관문이다. 이들 외의 주요 수입항구로는 브리스베인, 프리맨틀, 아델레이드 항 등이 있다.

#### 주요 항구 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전망

(단위: 천 TEU)

| 주요 항구    | 2000년 | 2005년 | 2010년 |
|----------|-------|-------|-------|
| 브리스베인    | 449   | 639   | 797   |
| 시드니      | 1027  | 1606  | 2252  |
| 멜버른      | 1327  | 1580  | 2165  |
| 아델레이드    | 127   | 170   | 206   |
| 프리맨틀(퍼스) | 342   | 345   | 427   |
| 합계       | 3273  | 4340  | 5847  |

자료원: Freight Logistics In Australia

- 한편, 멜버른 항구는 최근 수심이 낮음으로 인해 대형선박의 접안능력이 떨어지면서 항만준설 등 개보수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

#### 선박 운임

(2006.7월 기준, 부산항 출발, US\$)

|       | 20'(TEU) | 40'(TEU) | R/T(CBM) |
|-------|----------|----------|----------|
| 시드니   | 1,900    | 3,700    | 80       |
| 멜버른   | 1,750    | 3,400    | 80       |
| 브리스벤  | 1,750    | 3,400    | 100      |
| 퍼멘털   | 1,750    | 3,400    | 100      |
| 아델레이드 | 1,750    | 3,400    | 100      |

자료원: 무역협회(시장 모니터링 자료)

## IV. 투자

### 1. 투자환경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자본의 조달은 호주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이전의 노동당 정부와 현재의 보수연정(96년 이후 집권) 모두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해왔으며 여기에는 방송, 항공, 통신 등 전통적으로 민감한 분야까지 포함된다. 외투 기업은 자본 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으며 외환규제가 거의 없다는 점도 투자유치에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2005년 300대 외투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100%에 못 미치는 기업은 23개에 불과하며 50% 미만인 기업은 1개뿐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전통적으로 2차 산업보다는 유통업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이 FDI 수요를 주도해 왔으며 최근 수년간은 전세계적 자원붐으로 인해 광업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호주화의 강세도 투자동인으로 작용해왔으나 호주화가 최근 지속적으로 절하되어 투자유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 진출기지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유망 분야는 매우 좁은 편이다. 중국발 자원붐으로 인해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 해외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긴 하나 이는 대부분 대기업 또는 대규모 자본의 영역에 해당하며 금융업, 서비스 분야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호주의 대형유통망 등을 공략 대상으로 할 경우 이들은 현지법인이 아닌 납품 업체와는 거의 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호주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대소를 떠나서 법인 설립이 필수적이다.

호주의 투자유치 기관인 Invest Australia는 대호유통투자분야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있다.

- 농업(Agribusiness)
- 바이오산업(Biotechnology)
- 에너지산업(Energy Industries)
- 환경산업(Environmental Industries)
- 금융산업(Financial Services)
- 정보통신산업(ICT)
- 첨단 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 광업(Minerals)
- 나노기술산업(Nanotechnology)
- 서비스산업(Services)

현재로서 한국기업의 진출여지가 가장 큰 분야는 자원 개발 산업이다. 이미 채굴이 시작되거나 사전 조사가 끝난 프로젝트의 경우 유력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지분을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타당성 조사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호주 투자 진출의 장단점을 다시 정리해보면(업종불문), 다음과 같다.

- 장점: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인프라와 인적 자본 수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치경제 시스템, 뛰어난 자연 및 도시환경 등
- 단점: 높은 원가 및 제비용, 기존 히스토리(이력, 경력 등)의 중시, 정해진 규정과 절차의 준수, 노동자 관리의 어려움 등

한편, 자원부문은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투자분야인데 동 부문의 투자 안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소개한다.

#### ▣ BEHRE DOLBEAR & COMPANY, INC 발표자료 요약

□ 호주는 2005,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가장 안전한 광업 투자대상국으로 선정됐음.

컨설팅 기업인 BEHRE DOLBEAR & COMPANY, INC.는 광업부문 투자의 종합적 안전도를 조사, 매년 부적격 투자국("NOT TO INVEST" countries)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음. 호주는 종합 점수 59점으로 캐나다, 미국을 제치고 3년 연속 가장 안전한 투자국으로 선정됐음.

#### □ 조사 내용

- 조사대상 국가
  -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콩고, 가나,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멕시코, 몽고, 나미비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러시아, 남아공, 탄자니아, 미국, 베네수엘라, 잠비아, 짐바브웨

- 조사항목
  - ECONOMIC SYSTEM: 경제적 자유도
  - POLITICAL SYSTEM: 정치적 안정성
  - SOCIAL ISSUES: 사회적 이슈 및 안정성
  - PERMITTING DELAYS: 허가 등과 관련된 지연
  - CORRUPTION: 부패도
  - CURRENCY STABILITY: 통화 안정성
  - TAX REGIME: 조세체계의 투명성

## □ 조사 결과

- 호주는 청렴도·경제적 자유도·정치적 안정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1위를 차지했음.
  - 캐나다, 미국, 칠레, 멕시코도 고득점을 했음.
  - 단, 미국, 캐나다의 경우 사회적 이슈 및 안정성, 허가 등과 관련된 지연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NIMBY(Not in my backyard)'적 성향이 강하고 자원 개발과 관련한 이익집단, 환경단체 등의 활동이 강력하기 때문임.
- 한편 최하위는 베네수엘라로서 자원국유화 발표 등이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이 외에도 짐바브웨·콩고·인도네시아 등이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청렴도와 경제적 자유도가 낮고 통화가 불안정했음.

## 종합 순위 및 점수표

|    | Country | Economic System | Political System | Social Issues | Permitting Delays | Corruption | Currency Stability | Tax Regime | Total Points |
|----|---------|-----------------|------------------|---------------|-------------------|------------|--------------------|------------|--------------|
| 1  | 호주      | 9               | 9                | 8             | 8                 | 10         | 8                  | 7          | 59           |
| 2  | 캐나다     | 10              | 10               | 6             | 5                 | 10         | 9                  | 7          | 57           |
| 3  | 미국      | 10              | 9                | 4             | 3                 | 10         | 8                  | 7          | 51           |
| 4  | 칠레      | 9               | 8                | 7             | 7                 | 8          | 7                  | 4          | 50           |
| 4  | 멕시코     | 8               | 8                | 5             | 8                 | 7          | 6                  | 8          | 50           |
| 6  | 그리스     | 8               | 8                | 3             | 3                 | 5          | 8                  | 6          | 42           |
| 7  | 브라질     | 6               | 7                | 6             | 5                 | 4          | 6                  | 6          | 40           |
| 8  | 가나      | 6               | 5                | 5             | 7                 | 4          | 5                  | 6          | 38           |
| 9  | 아르헨티나   | 6               | 6                | 6             | 6                 | 4          | 5                  | 5          | 35           |
| 9  | 중국      | 8               | 2                | 4             | 5                 | 2          | 9                  | 5          | 35           |
| 11 | 나미비아    | 5               | 6                | 3             | 5                 | 4          | 5                  | 6          | 34           |
| 12 | 몽고      | 6               | 4                | 5             | 6                 | 3          | 6                  | 3          | 33           |
| 13 | 탄자니아    | 5               | 5                | 3             | 7                 | 3          | 4                  | 5          | 32           |
| 14 | 페루      | 6               | 3                | 1             | 3                 | 4          | 7                  | 5          | 29           |
| 15 | 인도      | 6               | 6                | 2             | 3                 | 3          | 5                  | 3          | 28           |
| 16 | 남아공     | 3               | 3                | 1             | 5                 | 2          | 8                  | 2          | 24           |
| 16 | 잠비아     | 4               | 4                | 2             | 5                 | 3          | 2                  | 4          | 24           |
| 16 | 카자흐스탄   | 4               | 4                | 4             | 3                 | 1          | 4                  | 4          | 24           |
| 17 | 파푸아뉴기니  | 4               | 4                | 1             | 2                 | 2          | 4                  | 5          | 22           |
| 17 | 볼리비아    | 4               | 1                | 1             | 4                 | 3          | 4                  | 5          | 22           |
| 21 | 러시아     | 2               | 1                | 3             | 3                 | 1          | 4                  | 6          | 20           |
| 22 | 인도네시아   | 3               | 5                | 1             | 3                 | 1          | 1                  | 3          | 17           |
| 23 | 콩고      | 1               | 3                | 3             | 3                 | 1          | 1                  | 4          | 16           |
| 24 | 짐바브웨    | 1               | 1                | 1             | 3                 | 1          | 1                  | 2          | 10           |
| 25 | 베네수엘라   | 1               | 1                | 1             | 1                 | 1          | 1                  | 2          | 8            |

## 2. 외국기업 투자동향

### 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 낮은 진입 장벽으로 외국인투자 활성화

호주는 외국인 투자 통계를 통계청에서 외환 포지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건별로 집계하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07.10월 현재, 2005년 말 기준 통계가 가장 최신의 자료이다.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자본 조달은 호주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이전의 노동당 정부와 현재의 보수 연정(1996년 이후 집권) 모두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해 왔는데 여기에는 방송, 항공, 통신 등 전통적으로 민감한 분야까지 포함된다. 외투 기업은 자본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으며 외환규제가 거의 없다는 점도 투자유치에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 300대 외투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100% 미만인 기업은 23개에 불과하며, 50% 미만인 기업은 1개뿐으로 나타난 바 있다.

호주에서는 전통적으로 2차 산업보다는 유통업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이 FDI 수요를 주도해 왔으며, 최근 수년간은 전 세계적 자원 붐으로 인해 광업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호주화의 강세도 투자 동인으로 작용해왔다. 2006년 상반기 호주화가 다소 절하되면서 투자유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 국제 원자재가가 재 반등을 하면서 호주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투자유치 총괄

(단위: AUD 백만)

| 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
| 순투자(당해연도) | 31,296  | 12,301  | 48,885  | -44,654 |
| 순투자(누계)   | 249,269 | 264,560 | 332,664 | 281,121 |

자료원: 호주통계청

2005년 말 순투자 누계 기준으로 2차 산업이 19.3%를 차지하고 있으나 통계 발표를 담당하는 통계청은 2차 산업의 경우 세부 업종별 실적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요 제조업 외투기업 리스트는 자동차 및 식품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광업이 전체 누계액의 21.1%, 유통업이 17.2%, 보험·금융업이 14.4%를 차지하고 있다.

#### 업종별 투자유치 동향

(단위: AUD 백만)

|               | 2003   | 2004   | 2005    |
|---------------|--------|--------|---------|
| 1차 산업         | 3,131  | 1,341  | 7,503   |
| 농림수산업         | -12    | 211    | -112    |
| 광업            | 3,143  | 1,130  | 7,615   |
| 2차 산업(제조업)    | 7,560  | 40,639 | -62,780 |
| 3차 산업         | 4,543  | 6,969  | 10,960  |
| 전기·가스·수도      | -1,349 | -993   | 615     |
| 건설업           | 690    | 534    | 729     |
| 유통업           | 1,869  | 5,957  | 3,323   |
| 숙박·요식업        | -318   | -372   | -1,026  |
| 운수·통신         | 1,497  | -1,936 | -82     |
| 보험·금융업        | 1,772  | 3,583  | 5,961   |
| 부동산 및 비즈니스서비스 | -55    | 59     | 1,340   |
| 기타 서비스        | 437    | 137    | 100     |
| 기타            | -2,933 | -64    | -337    |
| 전체            | 12,301 | 48,885 | -44,654 |

자료원: 호주통계청

## 업종별 투자유치 동향(2005년 말 누계)

(단위: AUD 백만, %)

|                   | 금액             | 비중           |
|-------------------|----------------|--------------|
| <b>1차 산업</b>      | 60,177         | 21.4         |
| 농림수산업             | 977            | 0.3          |
| 광업                | 59,200         | 21.1         |
| <b>2차 산업(제조업)</b> | 54,202         | 19.3         |
| <b>3차 산업</b>      | 153,578        | 54.6         |
| 전기.가스.수도          | 8,579          | 3.1          |
| 건설업               | 6,700          | 2.4          |
| 유통업               | 48,240         | 17.2         |
| 숙박.요식업            | 1,323          | 0.5          |
| 운수.통신             | 26,422         | 9.4          |
| 보험.금융업            | 40,573         | 14.4         |
| 부동산 및 비즈니스서비스     | 19,405         | 6.9          |
| 기타 서비스            | 2,336          | 0.8          |
| 기타                | 13,165         | 4.7          |
| <b>전체</b>         | <b>281,121</b> | <b>100.0</b> |

자료원: 호주통계청

투자국별로는 미국과 영국이 누계상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양국을 제외하면 일본과 EU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호주의 유력경제 주간지 BRW가 발표한 2005년 300대 외투기업 리스트를 국 별로 분석한 결과 미국기업이 100개, 영국이 37개, 일본 35개, 독일 20개, 프랑스 18개, 네덜란드 16개, 스위스 11개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 국가별 투자유치 동향 (연도별)

(단위: AUD 백만)

|            | 2003          | 2004          | 2005           |
|------------|---------------|---------------|----------------|
| 영국         | -10,025       | -498          | 4,916          |
| 일본         | 1,972         | 1,254         | 4,296          |
| 스위스        | 2,482         | 2,639         | 2,717          |
| 독일         | 523           | 938           | 1,610          |
| 네덜란드       | 778           | 4,169         | 1,396          |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109           | -526          | 1,051          |
| 프랑스        | 635           | 629           | 853            |
| 아일랜드       | 58            | 370           | 366            |
| 스웨덴        | 25            | 22            | 215            |
| 캐나다        | 2,339         | 219           | 214            |
| 말레이시아      | -124          | 141           | 198            |
| 이탈리아       | NA            | NA            | 133            |
| 한국         | -94           | 186           | 43             |
| 기타         | 13,623        | 39,342        | -62,661        |
| <b>전체</b>  | <b>12,301</b> | <b>48,885</b> | <b>-44,654</b> |

주: 위의 국가리스트는 2005년 순 투자액 순에 의한 것임

자료원: 호주통계청

## 국가별 투자유치 동향 (2005년 말 누계)

(단위: AUD 백만, %)

| 국명        | 금액             | 비중   |
|-----------|----------------|------|
| 미국        | 69,065         | 24.6 |
| 영국        | 51,314         | 18.3 |
| 일본        | 23,805         | 8.5  |
| 네덜란드      | 19,137         | 6.8  |
| 스위스       | 14,369         | 5.1  |
| 독일        | 9,891          | 3.5  |
| 프랑스       | 8,287          | 2.9  |
| 뉴질랜드      | 5,889          | 2.1  |
| 캐나다       | 5,825          | 2.1  |
| 싱가포르      | 4,200          | 1.5  |
| 말레이시아     | 3,259          | 1.2  |
| 스웨덴       | 1,249          | 0.4  |
| 아일랜드      | 902            | 0.3  |
| 버뮤다       | 846            | 0.3  |
| 한국        | 652            | 0.2  |
| 이탈리아      | 491            | 0.2  |
| 대만        | 154            | 0.1  |
| 기타        | 61,788         | 22.0 |
| <b>전체</b> | <b>281,121</b> |      |

자료원: UNCTAD, 호주통계청

한편 지역별 유치 동향을 보면 어느 하나의 지역(주)에 보다는 두 개 이상의 주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금융업, 유통업과 같이 여러 지역에 다수의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광업과 같이 광구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업종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투자 유치 동향<sup>4)</sup>

(단위: AUD 억)

| 지역(주)                        | 2002~03    | 2003~04      | 2004~05      |
|------------------------------|------------|--------------|--------------|
| New South Wales              | 96         | 114          | 79           |
| Victoria                     | 99         | 86           | 105          |
| Queensland                   | 113        | 142          | 99           |
| Western Australia            | 79         | 138          | 83           |
| South Australia              | na         | 30           | 3            |
| Tasmania                     | na         | 2            | 1            |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na         | 4            | 1            |
| Northern Territory           | na         | 2            | 6            |
| 2개 주 이상투자                    | 396        | 490          | 809          |
| 기타                           | 75         | 14           | 9            |
| <b>합계</b>                    | <b>858</b> | <b>1,022</b> | <b>1,195</b> |

주) 금액은 투자신고 총액 기준임

자료원: FIRB(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



### 3. 우리기업 투자동향

#### 가. 한국의 대호 투자 동향

##### □ 자원 개발 분야에 투자 집중, 최근 도소매업 비중 증가

우리나라의 대 호주 투자는 광산개발 등 자원 개발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 밖에 종합상사의 현지법인 설립이나 골프장 매입 등 레저산업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 이민자들의 투자는 소액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6년 대 호주 투자는 신고/신규법인 기준 49건, US\$ 1억 9천만으로 2000년 이후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신고 기준 투자금액(누계)의 약 75%를 광업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나 2001년 이후 도소매업(종합 상사의 현지 법인 설립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2007년의 경우 신규법인수만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전년 수준의 투자규모가 예상된다.

#### 한국의 대 호주 투자 동향

(단위: US\$ 천, 건)

| 연도        | 신고건수 | 신규법인수 | 신고금액      | 투자건수  | 투자금액      |
|-----------|------|-------|-----------|-------|-----------|
| Total     | 805  | 433   | 3,219,778 | 1,759 | 1,137,334 |
| 1980-1999 | 356  | 179   | 2,256,530 | 859   | 475,976   |
| 2000      | 41   | 26    | 123,078   | 78    | 58,056    |
| 2001      | 30   | 18    | 11,607    | 71    | 10,608    |
| 2002      | 29   | 17    | 54,910    | 59    | 62,656    |
| 2003      | 44   | 18    | 186,775   | 57    | 49,982    |
| 2004      | 41   | 23    | 79,738    | 83    | 54,021    |
| 2005      | 72   | 46    | 132,558   | 138   | 104,711   |
| 2006      | 78   | 49    | 187,897   | 151   | 142,781   |
| 2007.1-9  | 83   | 40    | 132,995   | 167   | 119,934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은 기존 신규법인의 신고/투자 건수 및 금액 집계에 지점 및 연락사무소를 추가하여 새로운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위의 통계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른 것임. 아래 업종별 투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법인 기준의 통계임.

업종별 투자 동향을 보면 도소매업과 광업을 제외한 여타 업종의 투자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 한국의 대 호주 업종별 투자 동향(신규법인/실제 투자건수 및 금액기준)

(단위 : US\$ 백만, 건)

| 연도              | 도소매업 |     | 광업 |     | 농림어업 |    | 제조업 |     | 숙박요식업 |    | 서비스업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01            | 3    | 4   | 0  | 0   | 0    | 1  | 5   | 3   | 4     | 0  | 3    | 1  |
| 2002            | 3    | 42  | 0  | 10  | 0    | 8  | 2   | 1   | 3     | 0  | 4    | 1  |
| 2003            | 7    | 33  | 2  | 7   | 0    | 6  | 4   | 2   | 3     | 1  | 1    | 3  |
| 2004            | 6    | 30  | 0  | 8   | 2    | 8  | 8   | 4   | 0     | 0  | 6    | 2  |
| 2005            | 11   | 49  | 3  | 33  | 0    | 0  | 7   | 3   | 8     | 2  | 8    | 3  |
| 2006            | 12   | 55  | 1  | 25  | 3    | 12 | 4   | 25  | 8     | 4  | 7    | 3  |
| 2007.1-6        | 11   | 4   | 1  | 29  | 1    | 6  | 6   | 15  | 4     | 2  | 3    | 1  |
| 누계('80~'07.1-6) | 87   | 293 | 29 | 354 | 14   | 76 | 86  | 108 | 51    | 31 | 49   | 20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대호 투자를 투자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실제 투자건수의 약 47%, 투자금액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 나. 한국 기업의 호주 자원 부문 투자 동향

| 광종     | 현황  | 사업명       | 추진업체      |
|--------|-----|-----------|-----------|
| 유연탄    | 생산  | 마운트쏘리     | 포스코       |
|        |     | 폭소리       | 포스코       |
|        |     | 카보로우다운즈   | 포스코       |
|        |     | 글레니스크릭-II | 포스코       |
|        |     | 뉴 팩       | 포스코       |
|        |     | 클라렌스      | SK        |
|        |     | 샤본        | SK        |
|        |     | 스프링베일     | 광진공/SK    |
|        |     | 앙구스플레이스   | 광진공/SK    |
|        |     | 미네르바      | 광진공       |
|        |     | 드레이톤      | 대성자원/현대상사 |
|        |     | 엔샴        | LG상사      |
|        |     | 다트브룩      | 쌍용        |
|        | 개발  | 와이웅       | 광진공 외 3社  |
|        |     | 토가라노스     | 광진공 외 3社  |
|        | 탐사  | 아데나       | 광진공       |
|        |     | 코카투       | 광진공/SK    |
|        |     | 타로보라      | 광진공/SK    |
| 철      | 생산  | 포스맥       | 포스코       |
|        |     | 잭힐스       | 포스코       |
| 연아연    | 생산  | 마운트가넷     | 고려아연      |
|        |     | 타운스빌      | 고려아연      |
| 마그네사이트 | 탐사  | 록헨튼       | 원진월드 와이드  |
| 계      | 23개 |           |           |

## 4. 주요 투자법 내용

### 가. 투자유치 정책 전반

호주정부는 경제활동 및 고용기회의 확대, 신기술, 경영기술 및 해외시장을 제공한다는 측면 에서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규모가 작은 제안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규모가 큰 제안도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승인된다.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는 관련 당사자와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규모가 크거나 혹은 좀 더 민감한 외국인 투자 제안이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현재까지 건수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외국인 투자 제안은 부동산 구입이었다. 정부는 주거용 택지 또는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도 신규주택 공급을 늘리는 주택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부동산 부문 이외에는 지역 총괄본부(RHQ)의 유치나 연구 개발(R&D) 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 나. 투자 규제 개황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라디오, TV방송, 일간신문, 민간 항공 산업은 규제업종이다. 기타 외자 가이드라인이 지정된 중요분야에 대해서는 외자비율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5,000만 호주달러 이상인 기존 호주기업의 인수나 외국인 1인이 15%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다수 외국인의 지분합계가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1,000만 호주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 및 미디어에 5% 이상 투자하거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비 포트폴리오 투자, 5,000만 호주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존 호주기업의 인수 혹은 50% 이상의 주식 취득,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 정부 혹은 정부기관에 의한 직접투자도 사전승인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호주로, 혹은 호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외화 및 호주 달러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다. 호주 내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호주 달러를 사고 팔 수 있다. 외화의 경우 RBA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다. 1만 호주달러 이상의 거래 및 환전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er에 보고해야 한다.

## 다. 투자 관련 법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법규는 아래의 법률과 규정이 총괄하고 있다.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Foreign Takeovers(Notices) Regulations
- 상법법령 전문은 <http://www.comlaw.gov.au>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 라. 투자인센티브

호주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인센티브는 거의 마련하고 있지 않다. 호주 정부의 투자 유치책은 투자유치 기관인 Invest Australia와 산업지원정책 실행 기관인 AusIndustry가 수행한다. AusIndustry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지분 소유기업의 모국가를 불문하고 호주 기업으로 등록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 정책이라기 보다는 산업 진흥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Invest Australia 운영 프로그램
  - Major Project Facilitation (MPF): 국가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며,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경제적 능력과 기타 준비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종이 정부 승인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MP로 등록을 할 수 있다. MP에 대해서는 Invest Australia가 투자 승인 획득을 위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타 산업 관련, 정부정책 지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 Invest Australia Supported Skills Programme(IASSP): 동 프로그램은 다국적기업의 아시아태평양본부를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지역본부의 위치가 호주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 Invest Australia는 해당 기업과 협정을 맺고 근로자들의 호주 내 이주(비자 발급)와 관련된 절차상 편의를 제공한다.

- AusIndustry 운영 프로그램
  - R&D Tax Concession: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R&D 비용의 125%까지 공제 허용
  - Commercial Ready: 신기술 등의 상용화 지원 프로그램
  - Commercialising Emerging Technology(COMET): 기술기업의 인큐베이팅에서 사업이 정상궤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기타 AusIndustry가 운영하는 지원프로그램은 [www.ausindustry.gov.au](http://www.ausindustry.gov.au) 참조

## 마. 자원부문 규제 현황

### ▣ 법령 규제

#### 가. 광산 채굴권 신청절차

- 호주의 광산 채굴에 대한 개발사업 인가 및 허가는 각 주(6개: NSW, VIC, QLD, WA, SA, TAS) 및 NT(Northern Territory: 북호주 행정자치구역)의 에너지자원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내용과 적용에 있어 거의 동일함.
- 광물 탐사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대부분 해당 州의 에너지자원부 장관에게 사업 계획, 탐사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해 사전 인가(Licence)를 받아야 함. 또한 이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 기관지 혹은 지역일간지를 통해 광물 탐사 작업을 관련 해 공표(public notification)할 의무가 있음.
- 한편, 탐사 및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발굴 지역의 지표면 파손 및 변형에 대한 비용 등 보상비용을 해당 지대의 소유주에게 지불해야함. TAS주와 NT의 경우 일부 비용을 사전에 예약시켜야 함. 또한 6개주와 NT 모두 탐사발굴 신청 지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NSW주와 VIC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연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함.
- 6개주 모두 광물개발 유보 라이선스(Retention Licence)를 발급하고 있음. 이 라이선스는 광물을 발견한 기업 혹은 단체로 해금 필요시 개발가치가 있을 때까지 발굴 혹은 채광(採鑛)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 유보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잠재적 가치가 있는 광물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유보 라이선스의 인가요건으로 공표의 의무가 있는 등 탐사 라이선스와 유사함.
- 호주 전지역에서 채광 임대권(Mining Lease)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탐사 라이선스 혹은 유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선권이 주어짐. 퀸즈랜드(QLD)주의 경우 채광 임대권 신청자는 적절한 사전 보유권(pre-requisite tenure)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광 개발계획에 대한 아웃라인과 세부계획안을 제출해야 함.
- 아울러 주 정부 기관지를 통해 광산 개발소식을 알리는 태스매니아(TAS)주를 제외한 호주의 전체 주에서는 광산 개발 신청시 공표의 의무가 주어짐.
  -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채광 작업이 인근 주거지역의 100~200m(南호주의 경우 400

- m) 내에서 이뤄질 경우 채광지역의 지주(地主)와 소유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주 관할 총독(Governor-in-Council)이 임대 기간을 결정하는 퀸즈랜드주 및 담당 에너지부 장관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 태스매니아주와 NT(Northern Territory)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채광 임대는 최장 25년까지 가능하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요건들이 있음.
- 채광 임대를 위한 첫해 비용은 서호주(WA)주의 1200호주달러(100헥타르 기준, 신청료 포함)에서부터 퀸즈랜드주의 4340호주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적용됨.

## 나. 관련 정책 및 법규

- 호주 자원정책 관련 법규는 각 주의 개별 관할사안으로서 해당 주의 관련법규를 1차적으로 적용하나 호주 연방법과의 충돌 발생시 연방법이 우선 적용됨. 호주 채광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호주(WA: Western Australia)주의 관련 법규들이 호주의 자원정책 관련 법규로서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바, 하기의 4개 법이 적용되고 있음.
- Mining Act 1978 (採鑛法)
  - 광물 탐사 단계부터 채굴에 이르기까지 라이선스 발급 등 WA의 역내 채광작업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관할하고 감독하는 법임.
  - 채광업체가 본 법을 위반할시, WA의 주 정부는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
  - 본 법과 관련해 주 정부와 채광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시 주 총독 관할 법정(Warden's Court)에 분쟁 조정이 위탁됨.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환경보호법)
  - WA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역내 채광작업이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될 시 채광작업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 Land Administration Act 1997 (토지관리법)
  - Mining Act 1978에 의하면 1899년 이전 자유롭게 취득된 광물자원을 제외하고 WA 역내 모든 광산 및 광물자원은 호주 연방정부(혹은 호주의 현 군주인 영국 여왕: the Crown)에 귀속돼 있는 바 채광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채광 지역에 대한 임대권을 연방정부로부터 사전 승인받아야 함.
- Native Title Act (NTA) 1993 (원주민 토지 보호법)
  - 1992년 호주 연방 최고법원인 HCA(Hight Court of Australia)의 결정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 및 보호할 목적으로 원주민 소유의 토지 거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채광 희망지역이 원주민 소유의 토지일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 이는 상거래 능력이 부족한 원주민들이 토지 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호주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법규임.
- 한편 호주의 역외(offshore) 자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리감독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하기 Offshore Minerals Act 1994가 있음.
- Offshore Minerals Act 1994 (the OM Act, 域外광물자원 보호법)
  - 본 보호법은 1994년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 호주의 연해 대륙붕에 매장된 석유자원을 제외한 기선(baseline) 3해리 이상의 영해(領海) 해저수역에 매장된 모든 광물자원과 관련해 탐사, 발굴, 그리고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법규를 제공하고 있음.

#### 다. 환경관련 규제

- 국가경제의 약 70%(GDP 대비 산업별 비중)가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에서 환경보호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은 물론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임.
- 호주 정부의 환경정책은 채광과 원전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감정(assessment)과 방지 그리고 훼손된 지역의 환경 재활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있음. 각 주의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와의 공조 아래 호주 관광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호주의 각 주(state) 및 행정자치구역(territory) 정부들은 역내는 물론이고 해안 기선(baseline)으로부터 3해리까지의 해수역에 있어 광물자원 관리 및 환경보호에 대한 우선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음.
- 환경 파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법규로 하기 2개 법이 있음.
  -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the EPBC Act: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
  - Petroleum (Submerged Lands) Act 1967 (PSLA, 석유 및 침수지 보호법)

#### ■ 세제상 규제

- 호주에는 현재 자원산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일된 세제는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일반 세제 법규(Government taxation legislation) 및 각 주별 광산업 관련 세제(State mining taxation)를 혼합 운용해 광물 및 에너지산업을 규제하고 있음.
- 호주의 광산업 및 석유산업 관련 법인세는 일반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30%의 법인세율(corporate rate)이 일괄 적용되고 있음. 고용주에게는 일반 업체와 마찬가지로 지급 급여세(Payroll tax, 4.75~6.85%),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변동세율 적용), 그리고 부가 급부세(Fringe Benefits Tax: FBT, 약 48.5%)가 부과됨.
- 아울러 호주내 수입되는 전체 상품에 대해 10%의 부가세(Goods & Services Tax: GST)가 일괄적으로 징수됨.(참고: 호주 국세청 [www.ato.gov.au](http://www.ato.gov.au))
- 채광지역, 유전(油田), 그리고 광물 수송 장비의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비용은 세금 공제가 가능함. 또한 채광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한 제반활동(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EPA) 비용도 공제 대상임.
- 호주는 거주국가와 수출국가의 국제적인 이중 과세(double taxation)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국가들과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맺고 있음.
- 호주 정부는 또한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바탕으로 해 타국가 거주 사업자들이 호주내 취득한 배당 이익(약 15%의 상한선), 이자(약 10%의 상한선), 그리고 지분 로열티(약 10%)에 대해 과세 상한선을 규정해 지나친 과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 한편, 호주 정부는 광산업 및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료 사용(Off-road component of energy grants)에 대한 세제 혜택(Fuel Excise Credits)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세제 개혁을 추진중임.(2006년 7월 개시 예정) 이의 결과로 향후 동 산업 개발에 사용되는 연료의 경우 일반 연료 소비세 기준 50%의 할인율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광물자원 발굴 및 생산을 위한 로열티(royalty)는 주 정부에 의해 징수되고 있으며, 2000~01년 기준 호주의 총 광산물 생산이익금의 약 3.5%에 해당하는 로열티가 징수됐음.(호주 총 GDP의 5.3%)
- 호주의 각 주 정부 및 NT에 지불되고 있는 로열티의 과세비율은 하기 표와 같음.(주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름) 판매이익은 프로젝트 기반이며 운용비용, 운용자산 감가상각비용, 재고비용, 임대 이자, 탐사비용 등의 프로젝트 비용을 공제한 후 산출됨.
- 해안 기선 3해리 이내 수역에 매장된 광물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해당 주 정부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반면, 3해리 이상의 역외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관련 로열티는 Offshore Minerals Act 1994 (역외광물자원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통상 석유자원을 제외한 역외 광물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해당 주 정부가 60%, 그리고 연방정부가 40%를 수취함.
- 현재 역외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통일된 로열티 시스템이 없으며 단지 Offshore Minerals (Royalty) Act 1981 (역외 광물자원 로열티 관련법)을 기초로 연방 정부 담당 장관 및 주 정부 담당 장관들로 구성된 합동운영위원회(Joint Authority)를 설치해 석유자원을 제외한 모든 광물자원들에 대한 로열티의 유형과 과세율을 결정하고 있음.
- 3해리 이내 주 정부 단독 관할 수역의 광물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해당 주 정부에 의해 적절하게 입법이 될 때까지는 역내(Onshore) 광물자원 로열티 시스템에 준해 로열티의 유형과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5. 진출형태별 절차

### 가. 투자진출 형태

호주의 경우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제외한다면, 법인과 지점의 구분보다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foreign company로 등록하는지 local company로 등록하는지의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서 행하는 투자승인 등의 단계에서는 현지법인과 지점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FIRB의 가이드에서는 "branch"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호주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 Australia Pty. Ltd"와 같은 상호로 호주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물론 투자진출 법인체의 성격상 자체 재산 체제를 갖추지 않은 경우 지점으로 대외적 명칭을 정하기는 하나 호주에서의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는 별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계좌개설, 은행 거래 등에 있어 법인으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국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만 초래할 수도 있다.

외국기업으로 등록하느냐 호주기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른 차이점은 외국기업의 경우 경영공시의 의무가 없으며 대신 ASIC에 본사의 경영장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기타 법인세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양자가 차이가 없으나 개념적으로 외국기업의 경우 본사의 수익중 호주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 호주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올린 수익을 포함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이중과세 협정이 없다고 가정할 때)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문제는 단순히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이므로 호주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회계사무소나 변호사사무실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경영공시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일견 장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은행과의 거래등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에 대한 신뢰가 높은 호주사회 전반적 풍토를 생각할 때 거래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 나. 법인설립 절차

### 1) 투자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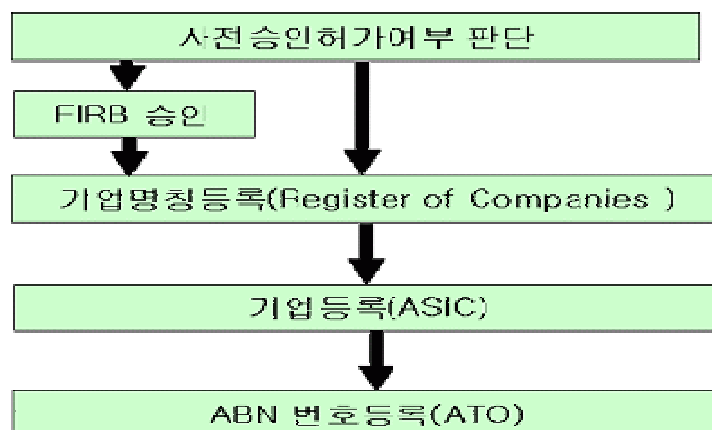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허가대상 투자는 투자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 제출 후 투자허가를 받아야 한다.

- A\$5천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존 호주기업의 인수
- A\$5천만 이상의 신규 투자
- 외국정부 또는 기관에 의한 직접 투자
- 기존 호주기업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져올 주식 취득 또는 발행

제조, 서비스, 자원가공, 석유 및 가스, 광물(우라늄 제외), 비은행 금융 중개, 주식 중개, 관광, 부동산(도시권 제외), 농림수산 부문에서의 A\$5천만 이하의 외국인 투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다음과 같은 투자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FIRB에 신고해야 한다.

- A\$5천만 이상인 기존 호주기업의 인수
- A\$5천만 이상의 비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취득 (농장은 A\$3백만 이상)
- A\$1천만 이상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

### <법인설립절차 도해>





## 2) 법인 등록

호주에서의 회사설립(법인등록)은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심지어 학생들도 수업의 일환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다. 법인의 명칭을 정하고 나면 이의 보전을 위해 기업등록소(Register of Companies) 또는 각주의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법인 명칭을 등록해야 한다. 명칭을 등록시킨 후에 다음 서류를 ASIC에 제출하면 법인으로 설립된다.

- 정관: 법인 명칭, 설립목적, 사업범위, 설립자 성명 및 주소, 주식소유관계, 주식 및 보증인의 책임한계, 주식자본금 규모, 주식가격 등 법인의 사업 및 권한을 규정
- 부정관: 이사의 임면 및 권한, 회의개최 및 투표, 주식양도 및 이익배당금 처리 등 법인의 경영 및 통제를 규정
- 법인 중역진 명단
- 등록사무실 공고

기업은 공개 또는 비공개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비공개 법인은 정관이나 부정관에 주식 이전권의 제한, 주주의 50인 이내 제한 (고용인 주주 제외) 및 저당 설정 또는 주식공매 금지조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회사 형태에 관계없이 외국인이 호주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투자승인은 물론 현지 근무 예정자의 이민(비자) 문제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바, 가급적 현지 변호사 또는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호주 내의 절차는 최소 영주권 소지자 이상이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바 설립 단계에 있어서는 현지 파트너의 수배가 필수라고 하겠다. (현지인 1인과의 공동 대표 체제 등)

### 다.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투자심의위원회는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 ASIC에의 등록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비자의 발급, 사무실 임차 등에 있어 최소한 등록 사무소가 필요하고 이렇게 볼 때 법인설립 절차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활동의 성격상 FIRB의 승인필요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6. 투자입지여건

### 가. 개요

호주의 산업공단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것이 없고, 주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성되었으며 일부는 민간 개발업체에 의하여 조성되어 있다. 각 주정부 및 지방정부들은 지역개발을 위하여 산업공단을 조성하고 있으나 국토에 비하여 인구규모가 적고 분산되어 있는 호주의 특성상 대부분의 공단들은 시드니 등 대도시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에 19개의 산업공단이 있으며 이중 테크놀로지 파크가 8개, 일반단지가 11개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공단은 전문적인 제조업 위주의 산업공단이라기 보다는 일반 사무용 건물과 공장이 혼재해 있는 지역개발 목적상의 산업지구의 성격이 강하다.

호주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공단의 형태는 테크놀로지 파크로 일반적으로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 구내 또는 주변에 위치하며, 대부분 주정부와 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다. 공단 입주 업체들에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세제 등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다.

호주 내에는 우리나라나 일부 국가에서와 같은 전문화된 대규모 생산단지와 같은 개념의 산업공단은 없는데 이는 호주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호주의 산업공단은 비즈니스 지역 또는 연구단지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산업공단에 진출할 경우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호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 과학분야의 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소 등의 형태로 테크놀로지 파크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IT 산업단지

### 1) 개요

호주에는 특정산업의 집중유치를 공단을 조성하거나, 입주 내외국인 기업들에게 세제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산업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IT 산업을 포함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등 초기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가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큐베이터 시설은 크게 두 개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이중 하나는 4개 주요대학(NSW대학, Sydney대학, UTS대학, ANU대학)의 공동스폰서 체제로 운영하는 ATP (Australian Technology Park)이며, 다른 하나는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CITA) 산하에서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10여 개의 인큐베이터 시설을 들 수 있다.

ATP의 경우, 현재 40여 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외국업체 입주자는 없으나 외국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은 없다. 그러나, CITA산하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5개 주 10여 군데에 분포되어 있는 BI의 경우 호주 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호주 내 사업자 등록은 비교적 소액의 경비로 쉽게 등록이 가능함.)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입주 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는 호주 내 비즈니스 관련 조언 제공 및 비서/리셉션 서비스, 사무용 필수품(팩스/인터넷/복사기 등)의 공동 사용 등이 있다.

## 다. 주요 인큐베이터 현황

### 1) Australian Technology Park

- 연락처
  - 주소: Suite 145 National Innovation Centre ATP, Eleigh, NSW 1430, Australia
  - 전화: (61-2) 9209 4124
  - 홈페이지: <http://www.atp.com.au>

- 입주 조건
  - 평가 기준 통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윤 창출 가능성과 지적 재산의 가치 등을 심사하며, 사업 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3개월간 Pre-incubator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음.
  - 재정 능력: 2년간 임차료 이외에 A\$10,000 (US\$6,000정도)의 경비가 소요됨.
  - 입주 시 비용
    - 임차료: 평방미터당 연간 A\$520- (약 32만원)
    - 면적: 초기 단계 시 3.5 평방미터, 중기 60 평방미터, 말기 125 평방미터
- 입주 시 장점
  - 일반 인큐베이터 시설에 입주하는 것 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Austrade(국영 무역진흥기관)와 AusIndustry(호주 연방 공업청)에서 제공하는 기술연구 개발비를 지원 받기가 용이해짐.
  - 최고 2년 동안 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대학의 주요 연구 분야 내에 들면 연구 보조 (인력 및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주요 연구 분야
  - IT, 멀티 미디어, 생명공학, 식품공학 등

## 2) Australian Distributed Incubator Pty Ltd

- 주요분야: IT
- 연방정부 지원금: A\$7백만
- 홈페이지: <http://www.adinc.com.au>
- 담당자: Mr Michael Paul, Program Co-ordinator
- 주소: Level 2, 455 Bourke St Melbourne VIC 3000 Australia
- 전화: (61-3) 9605 2550 / 팩스: (61-3) 9605 2511
- 이메일: michellep@adinc.com.au

## 3) Blue Fire Group

- 주요분야: IT
- 연방정부 지원금: A\$6백만
- 홈페이지: <http://www.bluefire.com>
- 담당자: Mr Kamal Sarma
- 주소: 2-6 Waltham St Artarmon NSW 2064 Sydney Australia
- 전화: (61-2) 9439 4394 / 팩스: (61-2) 9437 3879
- 이메일: ksarma@bluefire.com.au

## 4) Epicorp Ltd

- 연방정부 지원금: A\$1천만
- 담당자: Mr Roslyn Hughes
- 주소: PO BOX 2166 Canberra ACT 2501 Australia
- 전화: (61-2) 6242 1984 / 팩스: (61-2) 6241 5284
- 이메일: roslyn.hughes@epicorp.com.au

**5) EiR Pty Ltd**

- 주요분야: IT&T
- 연방정부 지원금: A\$1천만
- 홈페이지: <http://www.entres.com.au>
- 담당자: Mr Richard Henning
- 주소: 1 Sarich Way Technology Park Bentley WA 6012 Australia
- 전화: (61-8) 9451 0893 / 팩스: (61-8) 9361 4077
- 이메일: richard@entres.com.au

**6) ePARK**

- 주요분야: IT/무선통신분야
- 연방정부 지원금: A\$5백만
- 홈페이지: <http://www.epark.com.au>
- 담당자: Ms Lucie Hedman
- 주소: Sydney Office : Level 2, 18 Bulletin Place Sydney NSW 2000 Australia  
Melbourne Office (담당자: Mr Nick Batchelor): 125 Victoria St Fitzroy VIC 3065
- 전화: (61-2) 9251 0106(시드니)/ (61-3) 412 031 313(멜버른)
- 팩스: (61-2) 9252 6487(시드니)
- 이메일: lucie@epark.com.au / nick@epark.com.au

**7) Information City Victoria**

- 연방정부 지원금: A\$8백만 불
- 홈페이지: <http://www.informationcity.com.au>
- 담당자: Mr. Robert Crompton, Executive Director
- 주소: PO BOX 80, Flinders Lane Post Office Melbourne VIC 8009
- 전화: (61-3) 9369 8299 / 팩스: (61-3) 9369 8225
- 이메일: robertc@jtp.com.au

**8) inQbator**

- 연방정부 지원금: A\$9.5백만
- 담당자: Dr Laurie Hammond
- 전화: (61-7) 5578 9500
- 팩스: (61-7) 5578 9522
- 이메일: laurie.hammond@inqbator.com.au

**9) IItem3 Pty Ltd**

- 연방정부 지원금: A\$7.34백만
- 홈페이지: <http://www.item3.com.au>
- 담당자: Dr Rob Forage
- 주소: Level 1, 40 Chandos St St Leonards Sydney NSW 2065 Australia
- 전화: (61-2) 9431 1901 / 팩스: (61-2) 9966 9774
- 이메일: rforage@item3.com.au

## 10) IT & C Incubator of the Northern Territory

- 연방정부 지원금: A\$5백만
- 홈페이지: <http://www.itcint.com.au>
- 담당자: Mr Norman Evans
- 주소: Level 1, Harry Chan Arcade 60 Smith St Northern Territory, Australia(GPO BOX 1369 Darwin NT 0801)
- 전화: (61-8) 8982 9800 / 팩스: (61-8) 8982 9801
- 이메일: [info@itcint.com.au](mailto:info@itcint.com.au)

## 11) SA BITs (Playford Centre)

- 연방정부 지원금: A\$1천만
- 홈페이지: <http://www.palyford.com.au>
- 담당자: Mr Geoff Thomas
- 주소: PO BOX 8121, Station Arcade SA 5000 Australia
- 전화: (61-8) 8468 9888
- 팩스: (61-8) 8212 3809
- 이메일: [gthomas@palyford.com.au](mailto:gthomas@palyford.com.au)

## 라. 자유무역지대

### 1) 호주의 자유무역지대 개황

호주는 아래의 다원 자유무역지대 외의 어떠한 자유무역지대도 조성하지 않고 있다.

### 2) 다원 자유무역지대

- 설치 목적
  - 저개발 지역인 Northern Territory 주의 개발 촉진
  -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주도 산업 육성
- 설립시기 및 규모
  - 설립시기: 1986. 12월
  - 규 모: 약 200ha (60만평)
  - 소 재 지: Northern Territory 주의 Darwin
- 수출지원제도
  - 관세 면제: 가공 및 변형 후 재수출할 경우, 수입 후 12개월 이내에 재수출 할 경우
  - 관세 및 GST(부가세) 환급 (Single Export Shipment Claims): 수입물품 전량이 가공 및 재수출될 경우 환급.
  - 신용환급 (Approved Exporter Claims): 기존의 성실한 수출이행 실적으로 세관이 신용을 부여한 경우, 수출이행 검사가 면제되어 월별 수출이행 보고 및 환급요청 만으로도 관세 및 GST(부가세) 환급

## ○ 인센티브제도

- 주정부 인센티브: 공장부지 특별분양, 편의시설 활용혜택 부여, Payroll tax 및 인지세 면제
- 금융지원 및 자문서비스 제공: 공장설립 및 확장자금, 철거 및 이전경비, 운송경비 등 지원, 산업디자인 및 마케팅지원, 주택지원, 종업원채용 및 훈련지원
- 선납관세의 단기 무이자 지원
- 연방정부 인센티브: 수출시장 개척자금 지원대상 자격부여,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자금 지원대상 자격부여,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 최고 50년까지 공업용 부지 장기임대 및 자기소유 건물 신축허용
- 참고 사항: 다윈 지역 거주인구는 2005년 현재 10만 명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의 소도시 이나, 다윈에서 호주 남부 아델레이드를 잇는 대륙 종단 철도 공사가 완료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마. 주요 지역별 사무실 임대료

2007년 5월 기준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살펴보면 브리즈번(퀸즈랜드주) 지역이 S/M당 호주화 617불로써 가장 고가이며, 브리즈번 다음으로는 퍼스(서부호주주)가 S/M당 호주화 593불, 시드니(뉴사우스웨일즈 주)가 582불로써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제2의 도시인 멜버른은 양호한 도시기반 등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M당 평균 임대료는 호주화 359불에 불과하여 사무실 임대료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도시 별 사무실 연간임대료(S/M당) 변동내역

| 지 역            | '07.5월 평균시세 | 피크시기 평균시세         | 변동률     |
|----------------|-------------|-------------------|---------|
| 시드니 비즈니스 중심지   | A\$ 582     | A\$ 602 ('89.6월)  | -3.3%   |
| 멜버른 비즈니스 중심지   | A\$ 359     | A\$ 392 ('89.3월)  | -8.4%   |
| 브리즈번 비즈니스 중심지  | A\$ 617     | A\$ 264 ('90.6월)  | +133.7% |
| 퍼스 비즈니스 중심지    | A\$ 593     | A\$ 431 ('90.12월) | +37.6%  |
| 아델레이드 비즈니스 중심지 | A\$ 260     | A\$ 222 ('90.6월)  | +17.1%  |
| 캔버라            | A\$ 344     | A\$ 332 ('92.12월) | +3.6%   |

주: '07.5.3일 기준 환율 (A\$1 : US\$ 0.8245)

자료: The Age 및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2007 11월 발표된 사무실 임대료 변동 관련 자료 역시 위와 같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자료에서 측정기간은 2006.9-2007.9월 이다.

|                | Total<br>Vacancy<br>(%) | Rental<br>growth<br>(% pa) | Yield move<br>since Sept<br>06 (% points) |
|----------------|-------------------------|----------------------------|-------------------------------------------|
| Brisbane CBD   | 0.2                     | 58.0                       | -0.50                                     |
| Perth CBD      | 0.5                     | 36.5                       | -0.25                                     |
| Sydney CBD     | 6.9                     | 8.9                        | -0.50                                     |
| Canberra       | 4.6                     | 7.5                        | -1.40                                     |
| Melbourne CBD  | 4.3                     | 5.9                        | -0.50                                     |
| North Sydney   | 9.3                     | 5.6                        | -0.85                                     |
| Chatswood      | 11.6                    | 5.5                        | -0.50                                     |
| Adelaide CBD   | 6.2                     | 4.3                        | -0.85                                     |
| Macquarie Park | 3.7                     | 4.0                        | -0.40                                     |
| Parramatta     | 8.7                     | 1.4                        | -0.25                                     |

자료원: <http://www.dbrreef.com>

## 바. 호주 투자 시 입지선정 시 관련 참고사항

- 호주 투자진출 시 입지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은 사업유형과 그에 따른 입지형태의 선택이다.
  - 신규 공장 건설: 나대지를 구입 또는 임차 하고 별도의 공장시설을 건설
  - 기존 공장 인수: 기존 공장시설을 구입 또는 임차
  - 창고의 구입 또는 임차: 특별한 제조시설 등이 없이 단순히 스토커용으로만 쓰는 경우를 의미함. 사무실 건물이 붙어 있는 경우와 사무실은 별도 위치에 마련하는 경우로 나뉨.
  - 사무실의 구입 또는 임차: 창고와는 별도로, 또는 창고는 없이 사무실만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임.
- 사무실만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구입보다는 영업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고, 적정 가격대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임차 시는 반드시 변호사(solicitor)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함. 변호사 비용과 인지세 등 행정비용은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임.
  - 호주 현지 부동산 기업 또는 한인 부동산 업체를 통해 적절한 곳을 물색할 수 있음.
- 창고의 구입 또는 임차
  - 공업단지(Industrial Area)내에 설치된 대형 창고를 이용할 수 있음. 사무실 건물이 붙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
  - 스토커양이 많지 않은 경우 이른바 ‘셀프 창고’를 이용할 수 있음. 이러한 셀프 창고의 경우 소수의 관리인이 있어 그들을 통해 상품의 반입 및 출하를 할 수도 있고 설비를 이용해 직접 할 수도 있음. - 대형 창고에 비해 시내 인근에 인접해 위치한 경우도 적지 않음.
- 신규공장 건설 또는 기존공장 건물 인수
  -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는 토지소유자(Landlord)와 지방정부(Council)임. Council은 한국의 개념으로는 대도시의 경우 구, 지방의 경우 군 정도에 해당하며 이들 council은 공장지로 활용할 수 있는 ‘Industrial Area’를 설정해 두고 있음. 단, Industrial Area에 대해 지방정부가 소유권 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은 통상 수 개의 부동산 기업, 금융 기업, 개인기업에 나눠져 있음.
  - 공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뉘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4A, 4B의 구분임. 후자의 경우 시간대에 관계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반면, 4A 지역은 주중에도 정해진 시간에만 작업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작업이 제한됨.
  - 따라서 해당 공업용지 상에서 원하는 공장 운영이 가능한지의 검토와 최종 승인은 Council의 Planning Division을 통해 진행하며 이 때 유능한 에이전트가 필요함. 특히 Council에 따라 산업시설 유치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른데, 불과 30Km 떨어진 council에 동일한 내용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한 곳은 5주가 소요된 반면 다른 곳은 5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함. 일부 산업시설 유치에 호의적인 지방정부의 경우 특히 고용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함.
  - 이러한 문제 때문에 통상 부동산 에이전트는 의뢰인으로부터 적정 토지의 물색에서 시작해 소유주와의 가격 협상, 지방정부와의 절차 진행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의 비용은 시간당 A\$50~300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호주에서는 일반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약 한 달간 공시하고 의의를 접수한 다음,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해결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공장 건설 시에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함.
- 시드니가 소재한 NSW 지역에서 입지 선정 시 호주 최대의 상업항인 보타니 항, 시드니 공항과의 연계, 드니, 울릉공, 뉴캐슬 등 주요 도시와의 연결성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 NSW 지역의 도로망은 퀸스랜드 주나 빅토리아 주에 비해 매우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www.yahoo.com.au 에서 "industrial property + 해당지역(예: 시드니, NSW)" 을 키워드로 해서 검색하면 많은 상공업 관련 부동산 사이트들이 검색되므로 이들 사이트들을 통해 대략적인 임차 및 구입 비용을 참고할 수 있음.

(자료원: 현지 부동산업계 인사 인터뷰)

## 7. 노무관리

### 가. 고용

가장 일반적인 인력채용 방법은 Sydney Morning Herald 와 같은 일간신문의 구인란에 광고를 통하는 방법이다. 간부직 혹은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옐로 페이지에서 헤드헌팅(채용) 전문기관을 찾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채용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피고용인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분야에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

### 나. 임금

산업별 단체협약(호주에서는 Award로 표현함)에 의거,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피고용자의 급여가 동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급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급여는 2주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된다.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주당 38시간이다. 초과근무나 휴일근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Award가 정하는 지급체계에 따라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초과근무 3시간까지 및 토요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 초과근무 3시간 이상 및 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2배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2003년에는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주당 35시간 근무를 선호한다는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2005년 이후 광업계에서 시작된 고급 기능인력 부족사태가 여타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유경력 용접공의 연봉이 의사의 수입을 초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임금수준 동향은 <http://www.rba.gov.au/Statistics/Bulletin/G06hist.xls> 의 통계를 참고하기 바란다.

### 다. 휴가제도

년 4주(근무일 기준 20일)의 연례휴가, 병가(Sick leave, 근무 1차 년도에는 년 5일, 그 이후부터는 년 12일),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13주의 장기근속 휴가(Long service leave) 등이 있다.



연례휴가비(Annual leave loading)는 통상임금의 17.5%를 휴가 전에 지급해야 한다. 94.3.31부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남자에게도 자녀 출산 시 52주의 무급 휴가를 (원할 경우)줄 수 있게 되어 있다.

## 라. 사회보장제도

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있으며 고용주 및 피고용자가 각각 일정액의 금액을 적립하여 피고용자 퇴직 시 지급된다.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인 급여의 9% 이상 출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Worker's Compensation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마. 노동조합 활동

영국식의 강력한 산업별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노사분규가 잦고 규모가 큰 것이 특징으로, 호주의 노동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광산, 항만, 철도, 항공은 물론 중, 고교 등 교육자들의 파업도 빈번한 실정이다. 호주의 노동조합은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정권의 향배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노조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 있다. 직장단위 노조는 거의 결성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산업별노조의 협상력이 막강한 때문이며, 동일 직장내의 산업별노조 복수 가입도 인정되고 있다. 노조는 대표기구인 호주 노동조합 평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를 정점으로 45개의 산업별 노조가 있으며, 직장별 노조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당이 정권을 새로이 잡으면서 뜨거운 총선쟁점이었던 노사관계는 06.3월 자유당정부가 실시한 개별근로계약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법(Work Choice)의 개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개정방향은 개별근로계약 폐지 등을 통해 노사간 이해관계 조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의 집행을 위해 "Fair Work Australia"를 설립할 예정이다. 과도기를 거쳐 2010년부터 단체협약제도 전면실시 예정이며, 노조에서는 조기 전면실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주요 노사관계 개정 공약

- 현 직장 계약서 사용자에게 2년간 유예기간 부여(해고 방지)
-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고용인에 대한 협상의 유연성 부여
- 10만불 이하 고용인의 임금수당 기준액(refer in awards)의 유연성
- 단체 계약 지원, 단체계약 구조하에서 개인의 추가사항 조정
- 임금 수당 기준액의 간결화와 현대화
- 15명 이하 소규모 기업과 사업에 대한 특별 고려 조치
- 노동자 측의 불법 투쟁 규제(비밀투료 및 파업중 임금지급 불허)
- 현 정책의 노사 가입 권리 유지
- 빌딩과 건설산업 분야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강한 제재 추진
- 새로운 공평한 산업 관리 기관의 재정인 (Fair Work Australia)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인력 확충을 위해 기술이민제도의 재검토, 모든 중고등학교에 "기술훈련센터", "무역센터" 설치 등 기술 실무교육 강화 추진

노사분규 건수의 변화 추이

|          | 노사분규 건수(분기별) |
|----------|--------------|
| Mar-2002 | 179          |
| Jun-2002 | 205          |
| Sep-2002 | 240          |
| Dec-2002 | 198          |
| Mar-2003 | 162          |
| Jun-2003 | 141          |
| Sep-2003 | 193          |
| Dec-2003 | 187          |
| Mar-2004 | 187          |
| Jun-2004 | 190          |
| Sep-2004 | 194          |
| Dec-2004 | 149          |
| Mar-2005 | 119          |
| Jun-2005 | 138          |
| Sep-2005 | 150          |
| Dec-2005 | 96           |
| Mar-2006 | 101          |
| Jun-2006 | 24           |
| Sep-2006 | 44           |
| Dec-2006 | 50           |

자료원: 호주 통계청 Industrial Disputes

## 8. 조세제도

### 가. 호주의 조세제도

- 2000. 7.1일부로 종전 판매세 (Sales Tax)가 폐지되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일종인 상품 및 서비스세(GST: Goods & Services Tax)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 개혁이 단행되었다.
- 2007년 현재 호주의 법인 소득세는 30%이며, 개인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 누진제가 적용된다.
- 개인 소득세는 기존에 A\$ 6,000까지가 면세대상이며, 최고 세율은 47%로서 소득 구간별 누진 적용되는데, 현재의 세율은 2005년 7월부터 소폭 인하 시행되고 있으며 2006년 7월 이후 최고 과세의 적용을 받는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되었다. 위의 개인 소득세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 원천 징수되고 있는데, 동 원천징수 시에 의무적인 의료보험 (Medicare) 비용 1.5%가 함께 공제된다. 이에 따라 호주의 일반인들은 최고 세율이 48.5%라고 말하기도 한다.

- 한편, 호주의 세제 중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인데, 호주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대신하여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 (양도차익)을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 부과 시 합산과세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나. 부가가치세(GST) 세제 개황

-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일부 기초 생필품을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 등 모든 소비활동에 적용되는 세제로 10%의 단일 세율이며, GST세제 도입으로 연방정부 관할 간접세인 도매 판매세(Wholesale sales tax)와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FID, Debit tax, 인지세(Stamp Duty)등 간접세는 폐지되었다. GST는 영세율 대상(GST FREE)과 면세 대상(Input Taxed)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소비 행위에 부과된다. 그러나 부가세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는 사업자(Enterprise)는 GST를 환급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GST의 부담이 없다.
- GST는 모든 수입활동에도 적용이 되나,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 되어 수출업자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 1) 세율: 10% 단일 세율

### 2) 부과대상: 일부의 면세나 영세율 적용 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과 용역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과됨.

### 3) 적용단계

- 모든 거래의 단계에서 적용됨.
- 생산자는 거래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GST(Input GST)를 판매 시에 징수하는 GST(Output GST) 금액에서 차감하며 동 차액만큼만 [호주국세청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납부하면 된다.

### 4) GST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영세율 대상 (GST Free Supply)

- 영세율 대상 사업자는 판매에 대하여 GST를 징수할 필요가 없고 매입 시에 부담한 GST는 환급 받을 수 있어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는 전혀 GST가 없게 된다.
  -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 수출품, 진료, 의약품, 개인 의료보험 등 건강관련 품목, 교육, 종교, 자선 사업, 물, 어린이 보호용품 등

#### □ 면세 대상 (Input Taxed Supply)

- 면세 대상 사업자는 판매에 대하여는 GST를 부과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 사업자와 달리 매입 시에 부담한 GST를 환급 받을 수는 없다.
  - 면세 대상 품목: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일반적이 금융 서비스 활동, 주거용 집세

## 5) GST사업자 등록

- 개인, 기업 또는 기타 단체로 GST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GST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일년간 매출액이 일정한도(A\$50,000, 비영리 단체의 경우 A\$10,000)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반 소비자와 같이 매입에 관련된 GST를 부담하여야 하나, 판매에 대하여는 GST를 징수할 수는 없다.

## 6) 신고서 작성

- 연간 매출이 A\$2천만 불 이상인 사업자는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연간 매출이 A\$2천만 불 이상인 사업자는 신고서와 세액을 컴퓨터를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신고서와 납부는 매월 말 또는 분기말 다음달 21일 까지 제출/납부 하여야 한다.
- 기타의 사업자는 분기별 또는 매월 별로 신고할 수 있다.
- 환급의 경우 호주 국세청은 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환급을 해주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환급 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환급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호주 국세청에 납부할 다른 종류의 세금(법인세, FBT 등)과 상쇄할 수 있다.

## 7) 세금 계산서

- 공급 가격이 A\$50 이하인 경우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 세금 계산서에는 호주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격 등의 사항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 다. 개인 소득세율 (2006. 7월부터 적용)

### 연간소득기준 Tax rates 2007-08

| Taxable income       | Tax on this income                            |
|----------------------|-----------------------------------------------|
| \$0 – \$30,000       | 29c for each \$1                              |
| \$30,001 – \$75,000  | \$8,700 plus 30c for each \$1 over \$30,000   |
| \$75,001 – \$150,000 | \$22,200 plus 40c for each \$1 over \$75,000  |
| \$151,001 and over   | \$52,200 plus 45c for each \$1 over \$150,000 |

## 라. 법인세율

호주의 법인세율은 30%로 이는 이익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준 법인세율을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에서 호주는 높은 편으로 재계에서는 끊임없이 법인세율 인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 아래자료는 지방정부 등에서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oecd 국가 법인세율 비교

|                  |             |
|------------------|-------------|
| UnitedStates     | 35.0        |
| France           | 34.4        |
| Belgium          | 34.0        |
| Italy            | 33.0        |
| NewZealand       | 33.0        |
| Spain            | 32.5        |
| Japan            | 30.0        |
| <b>Australia</b> | <b>30.0</b> |
| UnitedKingdom    | 30.0        |
| Mexico           | 28.0        |
| Norway           | 28.0        |
| Sweden           | 28.0        |
| Germany          | 26.4        |
| Finland          | 26.0        |
| Netherlands      | 25.5        |
| Korea            | 25.0        |
| Portugal         | 25.0        |
| Austria          | 25.0        |
| Denmark          | 25.0        |
| Greece           | 25.0        |
| CzechRepublic    | 24.0        |
| Luxembourg       | 22.9        |
| Canada           | 22.1        |
| Hungary          | 20.0        |
| Turkey           | 20.0        |
| Poland           | 19.0        |
| SlovakRepublic   | 19.0        |
| Iceland          | 18.0        |
| Ireland          | 12.5        |
| Switzerland      | 8.5         |

##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가. 외환관리

호주의 외환관리 기구는 중앙은행인 준비은행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으로 중앙은행이 통화발행 및 금융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외환정책도 수립, 집행하고 있다. 1959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외환관리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경제성장 및 금융시스템의 발달로 금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면서 1959년 연방 준비 은행법(The Reserve Bank Act 1959)을 제정하여 준비은행이 외환도 관리하게 되었다.

호주는 '83.12월부터 외환관리를 종전 통제 위주에서 점차 완화하여 환율 문제뿐 만 아니라 신용장 개설, 해외투자 및 송금 등 전분야에 걸쳐 외환관리를 대폭 자유화 했으며, 현재는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과 외국은행의 대호투자와 호주통화의 해외반출 및 세무목적 이외에는 외환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 세무 목적상 보고해야 할 외환 현금거래 대상
  - 관련 법규: 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1988
  - 보고 기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 and Analysis Centre (AUSTRAC)
  - 보고 대상: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거래업체 및 귀금속 취급업체가 A\$1만 이상의 현금거래 및 A\$5천 이상의 외환을 송금하거나 및 수취할 때
- 환율 제도: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1983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 정부가 환율결정 및 외환 수급 조절 등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했었으나, '83. 12월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환율이 시장수급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되고 있는데, 호주 중앙은행이 지난 20년간 환율시장에 개입한 사례는 총 6회에 그치고 있다.
- 무역대금 결제: L/C 방식의 대금결제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대형 수입상은 D/A 또는 D/P, 소형수입상은 T/T 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품인도 후 입금도 매우 흔하다.

## 나. 자금조달

호주는 금융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은행 등 자금조달원이 매우 다양하며 대출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다만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율 또한 다소 높은 편이다.

이러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외에, 정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즉 정부 지원책 중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Commercialising Emerging Technologies (COMET) – AusIndustry

- 동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30억 달러 규모의 범국가적 “Backing Australia's Abilit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
- 지원 내용은 컨설팅 서비스와 금융 제공으로 대별되며 전략적 파트너십 수립과 자본 조달 포함
  - 동 프로그램은 1999년 시작되어 한 해 평균 200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최근 2011년까지 연장이 결정됨
  - 1999-2004 기간 중 총 2억 7천만 불의 외부 자본이 조달되었으며 500여건의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짐

### ☐ Commercial Ready – AusIndustry

- 기업의 혁신 활동과 그 상용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2004~2010년까지 연간 2억불 지원
  - 동 프로그램은 이전의 R&D Start Program을 대체한 것으로 3년 이내에 완료 가능한 5만불~5백만 불 규모의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며 세 전 매출이 연 5천만 불 미만인 기업이 수혜 대상임
- 구체적인 지원 대상 활동은 초기 단계의 상용화 활동, R&D, 기술검증(Proof of Concept)이며 전체 소요 비용의 50%까지 지원함

#### □ R&D Tax Concession – AusIndustry

- 호주 국세청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동 프로그램은 특정 산업을 제한하지 않고 기업이 R&D활동에 투입한 비용의 125%까지(최대 175%)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
- 지원 대상인 R&D 활동은 높은 기술적 위험을 안고 있거나 신지식을 획득하거나 새로운 물질, 제품, 장치, 프로세스, 서비스 개발과 연관된 것이어야 함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IR&D Board에 R&D 활동을 등록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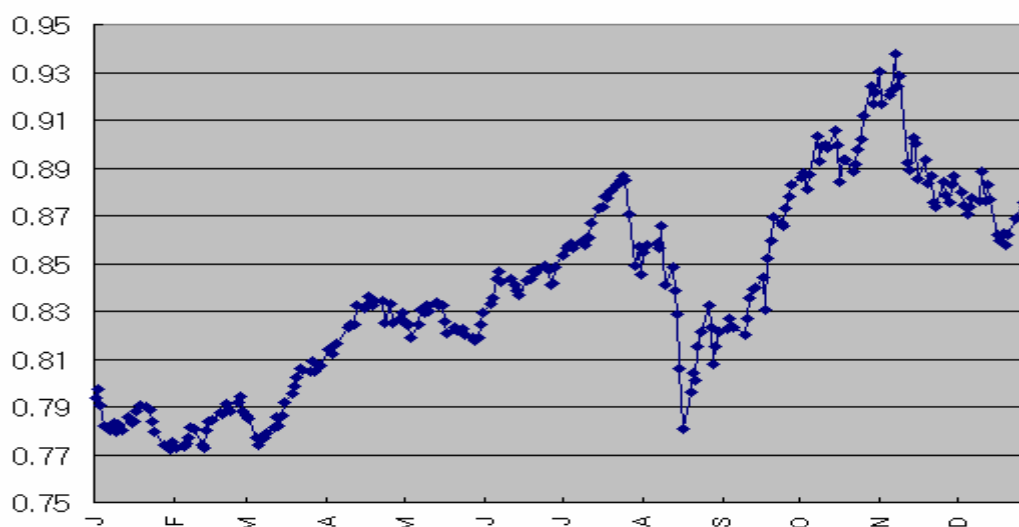
#### □ Tradex – AusIndustry&ATO

- 재수출용 또는 수출제품에 투입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써 호주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던 TEXCO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임
  - 감면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DITR 산하 AusIndustry의 승인과 함께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수입 시 제출함
- 수입된 제품은 1년 내에 재수출 되어야 하나 AusIndustry의 승인으로 동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수출 제품 제조에 사용된 경우 모든 수입 및 제조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 □ ICT Incubators Program (ICTIP) – DCITA(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신규 ICT기업의 고용과 수익, 수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조성된 3천 6백만 불 규모의 기금으로 직접 금융지원 외에 벤처 캐피탈 등 민간 투자가로부터의 자본 조달을 지원함

#### 미화대비 호주화 환율 변동 추이



호주화는 연초부터 강세를 지속 미화대비 1:1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으나 11월 말을 기점으로 다시 약세를 보여 12월 28일 기준 환율은 1:0.8734 이다.

## V. 기타 유용한 정보

### 가. 시장 규모

호주는 768만KM2의 광대한 국토에 인구는 2천만 명에 불과한 적은 규모의 시장이다. 따라서, 다품종 소량소액 주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민 증가율 (0.3%)을 포함해도 연간 인구 증가율이 1.2%에 불과하다. 호주의 총 인구 중 약 60%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베인, 아델라이드, 퍼스 등 거점도시에서 거주 하고 있어 상권도 이들 5개 도시에 분산, 광역화되어 있다.

주 별 인구분포와 GDP 현황을 볼 때, 시드니와 멜버른이 소재하고 있는 남부의 New South Wales 와 Victoria주가 호주 전체인구의 60%, GDP 60%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의 Queensland주와 South Australia주를 합치면 인구와 GDP에 있어서 각각 85%에 육박할 정도로 동남부 해안가에 인구와 경제력이 밀집 되어 있는 셈이다. 더욱이 수입물품의 75%가 시드니와 멜버른을 통과함에 따라 호주 동남부지역은 호주시장 진출의 관문이다.

### 나. 시장 특성

지속적인 수입시장 개방과 최근 호주달러화의 강세로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세계경제의 중심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주요 수출 품목은 농수산물, 광산물로 이들 1차 산업 제품이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호주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호주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공급자의 시장 지배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호주의 주요 도시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유통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호주동부의 시드니에서 서부의 퍼스까지의 거리는 3,400 Km로서 이는 서울에서 홍콩까지의 거리보다 먼 거리이다. 시드니 에서 퀸스랜드 주 북부에 있는 슈퍼 체인점 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2,000Km 이상을 운송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견고한 외 포장과 적절한 내 포장 등 이중포장이 중요한 요구 조건이 되고 있으며 호주에 제품 에 판매하려고 하는 해외 공급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2006년말 기준 US\$3만6천 달러 전후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무척 검소하여 내구재가 아닌 소비재 경우에는 저가의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다.

유통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절대 소비량이 적음으로 인해 수입품의 소매가격은 턱없이 높게 형성되는데, 일반적인 제품은 수입원가의 400% 선에서 소매가격이 형성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 다. 유통 구조

호주의 유통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특히 최종 소매업자들도 직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량주문이 빈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 유통구조는 수입상 -> Wholesaler / Distributor -> 소매상의 단순한 경로를 가지고 있으나, 대형 유통체인은 Buying Agent를 통한 구매방식도 취하고 있다. 유통 마진율은 단계별로 상이하지만 높은 인건비, 운송비, 임대료 등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가격의 3-4 배 이상으로 소매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금 결제 방식에 있어서 대형수입상은 DA/DP 조건, 소형 수입상은 L/C 개설보다 T/T 송금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연중 구매시즌은 업종 및 품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0-11월 및 4-5월이 가장 활발하다.

유통단계별 마진율은 시장에서의 상품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경쟁이 충분한 경우의 마진율은 아래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경쟁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300% 이상의 마진을 붙이기도 한다.

## 2. 물가정보

| 항 목                   | 조 사 품 목(기준)                                | 가 격(USD) |
|-----------------------|--------------------------------------------|----------|
| <b>1. 의복(7개 항목)</b>   |                                            |          |
| 1.1 순모 양복             | 1벌 / Pierre Cardin 남성용 상하의 순모100%, 춘추복     | 607.64   |
| 1.2 넥타이               | 1개 / Ninaricci 실크100%                      | 152.10   |
| 1.3 와이셔츠              | 1벌 / 현지 유명브랜드 면100%(긴 팔, 흰색)               | 67.68    |
| 1.4 양말                | 1켤레 / 현지 유명브랜드 면100%                       | 12.93    |
| 1.5 코트                | 1벌 / Burberry 롱코트(추동형)                     | 608.40   |
| 1.6 스타킹               | 1켤레 / 현지 유명브랜드 밴드타입                        | 8.37     |
| 1.7 청바지               | 1벌 / Levi's 하의                             | 83.65    |
| <b>2. 식료품(9개 항목)</b>  |                                            |          |
| 2.1 쇠고기               | 1KG / 안심                                   | 13.69    |
| 2.2 돼지고기              | 1KG / 구이용(삼겹살, 목살)                         | 7.60     |
| 2.3 닭고기               | 1KG / 생닭 1마리                               | 3.80     |
| 2.4 쌀                 | 1KG / Short Grain                          | 2.15     |
| 2.5 밀                 | 1KG / 밀가루                                  | 1.22     |
| 2.6 설탕                | 1KG / 백설탕                                  | 0.91     |
| 2.7 계란                | 10개                                        | 3.80     |
| 2.8 감자                | 1KG / 현지산                                  | 2.98     |
| 2.9 미네랄워터             | 1.5리터 / Evian 1 pet                        | 2.49     |
| <b>3. 한국식품(7개 항목)</b> |                                            |          |
| 3.1 고추장               | 1KG                                        | 4.94     |
| 3.2 된장                | 1KG                                        | 3.80     |
| 3.3 라면                | 1개 / 농심 신라면(120g)                          | 0.61     |
| 3.4 설령탕류              | 1인분 / 설령탕, 곰탕, 갈비탕 중 1개                    | 9.13     |
| 3.5 불고기               | 1인분(200g)                                  | 9.89     |
| 3.6 삼겹살               | 1인분(200g)                                  | 9.89     |
| 3.7 김치찌개              | 1인분                                        | 9.13     |
| <b>4. 기호식품(7개 항목)</b> |                                            |          |
| 4.1 햄버거               | 1개 / 맥도날드 빅맥                               | 2.62     |
| 4.2 피자                | 1판 / Pizza Hut 슈퍼슈프림 오리지널 1판(Large)        | 12.13    |
| 4.3 코카콜라              | 250ml 1캔                                   | 1.40     |
| 4.4 수입산맥주             | 355ml 1캔 / 하이네켄                            | 2.88     |
| 4.5 수입산 담배            | 1갑 / 말보로라이트                                | 6.77     |
| 4.6 위스키               | 750ml / 조니워커블랙 I                           | 50.19    |
| 4.7 커피                | 1병(175g) / Taster's Choice Original        | 11.22    |
| <b>5. 주택(4개 항목)</b>   |                                            |          |
| 5.1 중급아파트임차비용(월)      | 150㎡/월 / 침실 3개미만 Semi-furnished            | 1977.29  |
| 5.2 중급단독주택임차비용(월)     | 150㎡/월 / 대지 500㎡ 미만 /침실 4개미만Semi-furnished | 2433.59  |
| 5.3 복덕방비용             | 월 임차료의 %                                   | 0.00     |

|                          |                                           |          |
|--------------------------|-------------------------------------------|----------|
| 5.4 임차보증금                | 월 임차료의 %                                  | 100.00   |
| <b>6. 가전제품(6개항목)</b>     |                                           |          |
| 6.1 TV                   | 한국산, 29인치 칼라TV, 범용형                       | 493.56   |
| 6.2 VTR                  | 한국산, 6헤드 스탠다드형, 범용형                       | 128.52   |
| 6.3 DVD Player           | 범용형, 비디오 콤보형(x)                           | 90.50    |
| 6.4 전자레인지                | 한국산, 20리터급, 범용형                           | 102.67   |
| 6.5 냉장고                  | 한국산, 500리터급, 가정용                          | 1520.23  |
| 6.6 에어컨                  | 한국산, 400W 기준, 가정용(기본형)                    | 531.59   |
| <b>7. 잡화(7개 항목)</b>      |                                           |          |
| 7.1 구두                   | 1켤레 / 현지유명브랜드 소가죽 구두                      | 342.22   |
| 7.2 치약                   | 150g 1개 / 현지유명브랜드                         | 4.90     |
| 7.3 칫솔                   | 1개 / ORAL B Advantage                     | 4.99     |
| 7.4 면도기                  | 1세트 / Gillette Contour Plus(면도기 1, 면도날 2) | 5.32     |
| 7.5 건전지                  | 1세트 / 에너지아저 1.5V AA 1세트                   | 4.99     |
| 7.6 화장지                  | 1통(300매) / Kleenex Facial Tissue          | 4.80     |
| 7.7 세수비누                 | 1개 / DOVE Cream Bar White                 | 2.00     |
| <b>8. 사무실용품(8개 항목)</b>   |                                           |          |
| 8.1 복사용지                 | A4 1권(250매)                               | 2.28     |
| 8.2 볼펜                   | 1타(12개) / BiC round stic USA              | 4.02     |
| 8.3 연필                   | 1타(12개) / 현지산 HB 사무용연필                    | 3.12     |
| 8.4 공CD                  | 1통(12개입) / SONY CD-R 700MB                | 7.30     |
| 8.5 핸드폰                  | 1대 / Nokia 범용형                            | 196.97   |
| 8.6 핸드폰사용료               | 1개월 기본사용료                                 | 52.47    |
| 8.7 인터넷가설비               | 1회 / 최초 1회 설치비                            | 105.71   |
| 8.8 인터넷사용료               | 1개월 기본사용료                                 | 45.63    |
| <b>9. 자동차(5개 항목)</b>     |                                           |          |
| 9.1 자동차                  | 2000cc 기본형 한국산 오토기어(A/T) 에어컨              | 16730.90 |
| 9.2 엔진오일                 | 1리터 / MOBIL 가솔린 모빌 10W40                  | 11.41    |
| 9.3 휘발유                  | 1리터 / 휘발유 (옥탄가 95.1%)                     | 1.20     |
| 9.4 자동차등록비               | 2000cc 기준                                 | 501.93   |
| 9.5 자동차보험료               | 2000cc 기준(1년 계약) 신형차, 종합보험, 신규가입차         | 608.40   |
| <b>10. 대중교통(4개 항목)</b>   |                                           |          |
| 10.1 지하철                 | 1구간요금                                     | 2.97     |
| 10.2 시내버스                | 1구간요금                                     | 1.22     |
| 10.3 택시(기본)              | 기본요금                                      | 3.06     |
| 10.4 택시(추가)              | 추가요금(1Km당)                                | 1.35     |
| <b>11. 공공서비스(11개 항목)</b> |                                           |          |
| 11.1 전화개통비               | 1회선 / 가입비, 장치비 포함                         | 44.87    |
| 11.2 전화사용료               | 월 / 기본사용료(가정용)                            | 22.81    |
| 11.3 전화사용료(시내)           | 3분(180초) / 가정용 평상시간(평일 08:00-21:00)       | 0.15     |
| 11.4 공중전화(시내)            | 3분(180초) / 평상시간(월-토, 06:00-24:00)         | 0.30     |
| 11.5 국제전화(정상)            | 3분(180초)/현지-서울간 /평상시간(월-토,06:00-24:00)    | 1.83     |
| 11.6 국내우편                | 1통 / 일반편지(2-3페이지) 일반우편                    | 0.38     |
| 11.7 국제우편(일반)            | 1통(10g 이하) /현지-서울간 일반우편                   | 0.90     |
| 11.8 특급우편                | 1개(1KG 이하) / 현지-서울간 DHL 서류                | 90.00    |
| 11.9 전기요금                | 1kwh / 가정용                                | 0.16     |
| 11.10 수도요금               | 1m³ / 가정용                                 | 0.76     |
| 11.11 가스요금               | 1m³ / 가정용                                 | 0.01     |
| <b>12. 교육(6개 항목)</b>     |                                           |          |
| 12.1 외국인학교               | 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數)                           | -        |
| 12.2 외국인학교               | 등록금 / American School                     | 500.00   |
| 12.3 외국인학교               | 기부금 / American School                     | -        |
| 12.4 외국인학교               | 수업료 (초등 1년간) / American School            | 8000.00  |

|                             |                                |          |
|-----------------------------|--------------------------------|----------|
| 12.5 외국인학교                  | 수업료 (중등 1년간) / American School | 11600.00 |
| 12.6 외국인학교                  | 수업료 (고등 1년간) / American School | 12800.00 |
| <b>13. 레저, 오락(6개 항목)</b>    |                                |          |
| 13.1 골프장 그린피                | 비회원 18홀 1라운드 선진국(중급), 후진국(중상급) | 45.00    |
| 13.2 골프장 회원권                | 매매가능 18홀 선진국(중급), 후진국(중상급)     | 63000.00 |
| 13.3 골프공                    | 1타(12개) / Titleist DT SoLo     | 17.20    |
| 13.4 골프채                    | Callaway 드라이버 1개               | 460.00   |
| 13.5 DVD 타이틀                | 1개 / 최신영화                      | 25.09    |
| 13.6 영화관람료                  | 1회 / 개봉관 성인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 10.26    |
| <b>14. 의료, 약품(5개 항목)</b>    |                                |          |
| 14.1 의료보험료                  | 4인 가족 기준(1년) Full Cover (치과제외) | 3802.48  |
| 14.2병원진료비(의료보험×)            | 몸살감기, 내과초진                     | 0.00     |
| 14.3병원진료비(의료보험○)            | 몸살감기, 내과초진 (의료보험 커버 시)         | 0.00     |
| 14.4 치과                     | 스케일링 1회                        | 0.00     |
| 14.5 약품(해열제)                | 아스피린 10정                       | 0.00     |
| <b>15. 신문, 방송, 잡지(4개항목)</b> |                                |          |
| 15.1 현지신문                   | 1개월 / 현지 유력지                   | 19.77    |
| 15.2 한국신문                   | 1개월                            | 41.83    |
| 15.3 케이블TV                  | 1개월 / 기본시청료                    | 40.27    |
| 15.5 잡지                     | 1부 / Time 혹은 Newsweek          | 4.18     |
| <b>16. 호텔(6개 항목)</b>        |                                |          |
| 16.1 특급호텔(정상)               | 싱글 1박                          | 384.81   |
|                             | 트윈 1박                          | 384.81   |
| 16.2 특급호텔(할인)               | 싱글 1박                          | 182.52   |
|                             | 트윈 1박                          | 182.52   |
| 16.3 중급호텔(정상)               | 싱글 1박                          | 228.15   |
|                             | 트윈 1박                          | 228.15   |
| 16.4 중급호텔(할인)               | 싱글 1박                          | 102.67   |
|                             | 트윈 1박                          | 102.67   |
| 16.5朝食(특급호텔)                | 특급호텔 컨티넨탈 블랙퍼스트 1식             | 22.81    |
| 16.6朝食(중급호텔)                | 중급호텔 컨티넨탈 블랙퍼스트 1식             | 16.69    |
| <b>17. 임금(2개 항목)</b>        |                                |          |
| 17.1 사무실직원                  | 월 급여 / 대졸 초임                   | 2970.00  |
| 17.2 사무실비서                  | 월 급여 / 학력불문 초임                 | 2500.00  |
| <b>18. 노동여건(9개 항목)</b>      |                                |          |
| 18.1 법정 최저임금                | 월 급여                           | 1550.00  |
| 18.2 상여금                    | 월 급여대비 % / 연간 근로자 상여금          | 0.00     |
| 18.3 사회보장부담금                | 월 급여대비 % / 연간 근로자 사회보장 부담금     | 9.00     |
| 18.4 법정휴가일수                 | 일(日) / 연간 근로자 법정휴가일수           | 20.00    |
| 18.5 출산휴가일수                 | 일(日) / 여성근로자 출산휴가일수            | 90.00    |
| 18.6 연간 국경일                 | 일(日)                           | 10.00    |
| 18.7 토요일 휴무                 | 실시여부                           | 실시       |
| 18.8 노동쟁의 시 냉각 기간 일수        | 일(日)                           | 14.00    |
|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 주(週)                           | 40.00    |
| <b>19. 사업여건(5개 항목)</b>      |                                |          |
| 19.1 법정 최저자본금               |                                | 0.00     |
| 19.2 회사설립 변호사비용             |                                | 420.00   |
|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 법인세                            | -        |
|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 개인소득세                          | -        |
| 19.5 법인 은행대출금리              | 1년                             | 8.50     |

주: 환율 1USD=1.12AUD / 주2: 2007년 하반기 기준

### 3. 바이어 발굴

####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1) 업체 디렉터리 (KOTRA 무역자료실에서 이용가능)

- Yellow Pages Sydney 2007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 Yellow Pages Melbourne 2007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 White pages Sydney 2007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 White pages Melbourne 2007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 Kompas Australia 2006 / APN Business Publishing Pty Ltd Group
- The Business Who's Who Products and Trade names Guide 2006 / Dun & Bradstreet (Australia) Pty Ltd.

상기 디렉터리 중 실제로 가장 유용한 자료는 옐로 페이지이다. 업데이트가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며 내용도 매우 풍부한 편이다. [www.yellowpages.com.au](http://www.yellowpages.com.au)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 2) 주요 협회 리스트

- Advertising Federation of Australia Limited (AFA)
- Aerosol Association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AIA)
-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AREMA)
- Association of Liquid-paperboard Carton Manufacturers Inc (ALC)
- Australasian Bottled Water Institute Incorporated
- Australasian Soft Drink Association Ltd (ASDA)
- Australian Automobile Association (AAA)
- Australian Automotive Aftermarket Association Ltd
- 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
- Australian Canegrowers Council (CANEGROWERS)
-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 Australian Computer Society (ACS)
- Australian Council of Wool Exporters
- Australian Direct Marketing Association
- Australia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nufacturers' Association Ltd
- Australian Federation of Travel Agents (AFTA)
- 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 (AFGC)
- Australian Foodservice Manufacturers' Association
- Australian Fruit Juice Association
- Australian Industry Group
- Australian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AIIA)
- Australian Market Research Society (MRSA)
- Australian Publishers' Association Ltd
- Australian Pump Industry Association (PIA)
- Australian Record Industry Association Ltd (ARIA)

- Australian Society of Perfumers and Flavourists
- Australian Toy Association Ltd (ATA)
-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BCA)
-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 of Australia Inc (CTFAA)
- Council of Textile and Fashion Industries of Australia Ltd
- Direct Selling Association of Australia Inc
- Federation of Automotive Products Manufacturers
- Food and Beverages Importers' Association
- Grains Council of Australia
- Hairdressing & Beauty Industry Association
- Medicines Australia
- Motor Trades Association of Australia (MTAA)
- National Association of Forest Industries
- National Farmers' Federation (NFF)
- Packaging Council of Australia (PCA)
- Pharmaceutical Society of Australia
- Proprietary Medicines Association of Australia Inc
- Refrigerated Warehouse and Transport Association
- Restaurant and Catering Association of Australia
-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Union of Australia (TCFUA)
- Wool Producers

### 3) 전시회 정보

- 2007-2008년에 개최되는 호주 내 주요전시 정보는 KOTRA시드니 무역관 및 멜버른 무역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 ([http://www.exportal.or.kr/digitalkotra/exbt\\_list.jsp](http://www.exportal.or.kr/digitalkotra/exbt_list.jsp))

###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호주는 공급자(바이어) 중심 시장으로 공급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들의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며, 온라인 정보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당한 수준의 유력기업도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지극히 단순한 형태로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 정보는 어디까지나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호주 옐로 페이지: <http://www.yellowpages.com.au/>
- 호주 화이트 페이지: <http://www.whitepages.com.au/>
- 제조업체 검색: <http://www.ausmanufacturers.com.au/>
- 기업검색: <http://www.industrysearch.com.au/>
- 공급업체 검색: <http://www.ferret.com.au/>
- <http://www.tradepoint.com.au/>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호주는 지리적으로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절이 북반구와 정반대이다.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은 물품 주문 시 자신의 판매 계획을 감안하여 물품인도 날짜를 지정하고 있다. 만일 해외공급업체가 이들의 지정한 인도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그것으로 거래가 중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 공급 업체들은 인도 날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 가. 소량수입 주문

시장의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 미국이나 EU와 비교할 때 1회 주문량 자체가 소량일 경우가 많다. 심지어 TARGET, K-MART 및 BIG W, WOOLWORTHS와 같은 호주 대형 유통 체인점들의 주문량도 해외 공급업체들이 납품 할 수 있는 최소 주문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남성용 와이셔츠에 대한 호주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문량은 3-4가지 색상에 300다즌 정도이며 DAVID JONES와 같은 중형 백화점은 2-3가지 색상에 150다즌 정도이다.

그러나 호주는 1인당 국민소득이 U\$3만6천불 달하는 OECD 국가 중 하나로 광범위하고 안정 적인 대중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어 주문회수가 비교적 많고 일단 거래 및 신뢰가 형성되면 주문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호주에 물품을 출하고자 하는 해외 공급업체들은 호주의 이러한 시장 특성을 이해하고 소량 주문이라도 적극 수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나. 미국 달러화로 FOB 기준의 견적 요구

관세는 FOB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유통업체들은 FOB 가격기준의 미국 달러화로 견적을 내줄 것을 요구한다.

##### 다. 표준 팔레트 크기의 견고한 포장 요구

호주에서 쓰이는 팔레트는 우리나라를 위시한 대부분의 국가의 팔레트와 규격이 다를 뿐 아니라 호주 유통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출 포장은 여 타국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호주 표준 팔레트(PALLET)인 1,165MM X 1,165MM 크기의 카톤 포장에 외 포장된 상태에서 카톤 당 총 중량이 20KG을 넘지 않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 타국과 다른 점은 다중포장(MULTIPLE PACKS)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광대한 국토에 거점시장이 분산되어 있는 호주에서는 시드니나 멜버른 등 주요도시에 있는 중앙 창고에 수입물품이 도착되면 겹포장은 뜯어내고 내포장물만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체인점들로 운송하는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주 유통업체들은 장거리 운송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내 포장을 요구 하고 있으며, 또한 각 내 포장에도 참조 번호, 상품 명세, 수량들이 인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라. 호주 표준 라벨링 규정 준수

호주연방 및 각 주정부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해외 공급업체들이 유의해야 할 이러한 규정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수입품들에는 원산지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함
- 모든 제품에는 성분 표시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예를 들면 신발은 SOLE과 UPPERS가 가죽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야만 하며, 식료품은 모든 성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모든 중량 및 크기는 미터법으로 표시되어야 함.
- 몇몇 제품들은 특정 규격에서만 판매가 가능함. (예: 중량단위 75G, 100G, 125G, 150G 등)
- 모든 섬유제품에는 취급 시 주의사항, 원산지 등이 영어로 상세히 설명된 TAG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한국산 의류 중 계절 이월상품 재고 처분 시 영문 라벨링이 없는 제품이 수입 되곤 하는데, 통관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
- 모든 식료품에는 제조일과 유통기한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잠옷의 경우 FLAMMABILITY에 관한 경고문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마. 표준 규격 및 소비자 보호

호주 표준협회는 매우 광범위한 표준 규격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지 않은 상품은 원칙적으로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호주 소매업체는 물론 해외 공급업체 들도 판매 하고자 하는 물품이 호주 표준규격에 부합되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공정거래법 (TRADE PRACTICES ACT)을 통해 철저히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이 법은 기만적인 상 관행 및 불량품 판매금지, 애프터 서비스 및 보증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바. 기타 유의 사항

호주의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다품종 소량소액주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다가 제품의 규격이 한국과는 다르고 계절마저 상이하다 보니, 대부분의 우리기업들은 호주 시장을 재고처리 시장으로 인식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호주가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나, 국민 소비성향이 매우 높은 편이고 일단 거래가 시작되어 파트너와의 신뢰가 쌓이면 좀처럼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량, 소액 주문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후발개도국과의 가격 경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품질 고급화 노력이 요구 된다.

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납기지연, 가격인상요인 발생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업체의 양해를 구함으로써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외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며 클레임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신속히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입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금결제 통화를 달러나 유로화에서 호주화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호주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절상되고 있는 데, '07년 12월 현재 호주화는 연초대비 10% 이상 절상되었으며 호주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자재의 국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호주화의 가치는 내년에도 절상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한 대금결제 방식도 L/C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D/A, D/P 조건 등 다양한 결제조건을 수용하는 유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물건을 잘 만들어 놓고도 저가 포장재 사용 및 포장 불량으로 물건조차 저가품으로 인식 받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압축포장 및 고가 포장재 사용을 통해 고급품 이미지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소형수입상들은 L/C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복잡성 때문에 직송금방식(T/T, D/A, D/P) 거래를 선호하는 바 대금결제에 있어서 신축성을 요하며,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상담시에 FOB(부산) 등을 기준으로, 품목별 가격표 준비가 필수적이다.

호주현지진출 우리기업들의 지사가 시드니에만 집중되어있어 멜버른과 같은 여타지방상권에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케팅방법에 있어서는 다품종 소량 주문형 시장이라는 특성을 감안, 재고 판매 전략도 채택해 볼만한 것으로 보인다.

##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 가. 상관습

상관습은 매우 보수적이며 인콰이어리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지 못하지만, 단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고 거래를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적은 인구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작고 대부분의 거래가 소액소량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장기 안정적인 거래선으로 확보하려는 자세가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관건이다.

또한 호주는 제품 안전규정 및 소비자 보호규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특히,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정착돼 있어 사후 클레임의 소지가 큰 시장임을 숙지하여, 수출 시 관련 안전 규정과 소비자보호규정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 나. 유통마진

품목 및 업종에 따라 크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에 민감한 식료품 분야는 13-15% 정도이고, 할인백화점에서 의류 및 일반잡화의 유통마진은 30-40% 정도이나, 고급 백화점에서는 100% 이상이다. 의류전문 소매 체인점들은 30-50% 정도의 유통 마진을 보고 있다. 판매량이 적은 소형 소매점들은 최소한 80% 이상의 유통마진을 보고 있으나, 야채와 과일은 40% 이하 수준이다. 대형 도매업자들의 경우 대량주문에는 15%, 소량주문 에는 30-40% 정도의 유통마진을 보고 있다.

### 다. 국산품 선호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불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내적으로 전개한 국산품 애용 운동의 영향도 없지 않으나, 호주 대형 유통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수입 보다는 우선적으로 국내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짧은 납기 때문에 유행이 나 소비자 기호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언어 장벽이 없어 의사 소통이 원활하며 환율 변동에



다른 손실 위험이 없고 광고, 선전비의 일부를 부담시키기가 국내 공급업체들 이 해외 공급업체들보다 용이하며 L/C 개설, 통관 등 번거로운 절차가 없다는 장점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호주 대형 유통업체들은 운송료, 보험료, 관세 등 수입에 따르는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국내 제품 가격보다 최소한 10-15% 정도는 저렴해야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가 없어 수입을 할 경우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수입상이나 디스트리뷰터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있는 자신의 BUYING AGENT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고 있으나 주문량이 소량이거나 마무리 공정이 수입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상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 수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소매업체들은 대부분 수입상이나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있으나 최근 직접 수입하는 소규모 소매상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절이 북반구와 정반대이다.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은 물품 주문 시 자신의 판매 계획을 감안하여 물품 인도 날짜를 지정하고 있다. 만일 해외 공급업체가 이들의 지정한 인도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그것으로 거래가 중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 공급업체들은 인도 날짜에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 라. 비즈니스 에티켓

호주는 개인주의 사회이다.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개인주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진다. 모든 업무는 근무시간에 이뤄지며 오후 5시가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김없이 퇴근한다. 누구도 타인의 자유시간을 침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끝난 후 밖에서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각 직장 또는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맥주나 와인을 한잔씩 들고 담소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끝난 후 술집에서 거래처를 따로 접대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일도 거의 없다. 이렇듯 호주인들은 타인의 개인생활을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생활을 보호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 생각한다.

면담이나 협상은 반드시 사전 약속(최소2주이상)을 통해 하되 주중 저녁 시간, 주말(토, 일요일), 금요일 오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적인 업무처리는 근무 시간 중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호주인들은 무척 가정적이다. 그래서 퇴근하면 대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금요일 밤을 제외하고 오후 8시 정도가 되면 지하철과 도로는 썰렁하다. 이미 퇴근 시간 대의 러시 아워가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 마. 관공서 관행

호주에서는 사회 관행이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정의가 확립되어 있고 모든 일에 원리원칙이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뇌물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세관의 수입물품 통과절차도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심사 위주로 진행되나, 샘플링 검사 에서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신뢰를 쌓기까지 이후 5-6회 동안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호주 관공서의 일처리 태도는 매우 친절하나 결코 서두르지 않으므로, 성격이 급한 편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은행에서도 학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서두르는 법이 없다. 호주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하고 이를 당연시하며, 차례를 기다리지 않는 행동을 싫어한다. 또한 차량을 운전할 때에도 주변의 차량에 양보하는 미덕을 갖추고 있다.

관공서는 물론 은행, 전철역, 버스정류장, 식당, 쇼핑센터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줄을 서고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일 처리가 느린 반면 처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고 철저하다. 빨리빨리 대강 대강이란 게 없다.

관공서에서 특정 업무 담당자가 휴가(통상 1개월)를 떠나거나 장기 출장을 떠났을 경우, 그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달리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 업무가 마비되나, 호주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비단 관공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2월 중반부터 약 한달 간은 현지 휴가기간으로 대부분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 바. 용수 다량 사용업체 투자진출 유의

호주는 '07년에 들어서 30년내 최대 가뭄으로 인하여 수자원 부족이 심각하여 물사용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폭의 전기료 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용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호주로의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호주는 BT, 유전공학, 의학 등의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보유(노벨물리학상, 노벨생리학&의학상, 노벨화학상 수상자 8명 배출)하고 있는 바, 동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연구소는 호주와의 기술협력 또는 투자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 사. 호주의 숙련인력 부족

호주의 기업가들은 기업운영시 최대 애로사항으로 흔히 노동인력 부족을 꼽는데, 최근 호주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3%를 상회하는 등 경제활황으로 실업률이 4%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국내 노동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호주 투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현지 근로자 채용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가. 한솔 흥데코 (성공사례)

한솔 흥데코는 1993년부터 서 호주주(West Australia) 번버리(Bunbury)항 인근 지역에 조림 사업을 개시했다. 한솔의 유칼리투스 조림지는 번버리 항 인근 150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현재 약 1만 6천 ha(여의도의 약 30배)에 달한다. 동 조림사업은 목재펠트 원료(우드칩) 공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조림사업 시작 후 10년이 소요되었다.

동사는 2004.3월 우드칩 공장을 완공,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으며 초기 단계에는 연 50만 톤 생산/매출 2백 10억을 목표로 향후 연 100만 톤 생산/매출 5백억 수준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동 공장은 조림지와 항구로부터 모두 근접, 내륙에 위치한 일본 기업들보다 10~15%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된다.

한솔의 조림지는 특히 교토협약에 즈음하여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조림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의 판매가 가능하다. 호주 조림지의 CO<sub>2</sub> 흡수량은 2008~2023년간 250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한솔 측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조림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가 천억 원~3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찬스(Kim Chance) WA주 농산림부 장관은 한솔의 조림산업이 양국 모두에 큰 성과를 주었으며 향후 이러한 방식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지프 갤럽 (Geoff Gallop) 서 호주 수상은 한솔이 서 호주의 수출기지로서의 가치를 일찍이 예견한 점, 조림산업과 우드칩 공장이 서 호주 고용에 크게 기여한 점, 공장건립 과정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 나. 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 개발 성공사례)

광업진흥공사가 SK와 함께 50%의 지분을 투자한 호주 스프링베일 석탄광은 호주 광산업을 대표하는 몇 개의 석탄광 중의 하나이다. 원래 90년대 초반에 한국의 한 대기업이 스프링베일 광구 입찰에서 운영권을 따내어 92년도부터 지표시설 및 갱도 굴진을 시작하였으나, 몇 년 동안 운영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손을 떼고 말았다.

그 후 2000년 12월에 광업진흥공사와 SK가 지분 참여를 시작하여 2002년에는 손을 떼기로 한 한국기업의 지분을 완전히 인수하였다.

##### 1) 안정된 거래선 확보

호주 New South Wales주 Lithgow시 북쪽에 위치한 스프링베일 석탄광은 시드니로부터도 북쪽으로 16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근거리에서 위치해 있으며, 근처에 철도 및 국도가 통과하고 있고 Port Kembla항이 동쪽으로 240km 지역에 있어, 지리적인 입지조건도 아주 좋은 편이다.

여기에다가 1994년 1월에 인근 Delta 전력이 보유한 2 곳의 인근 발전소와 장기 석탄공급 계약까지 체결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 놓은 상황으로, Mount Piper 발전소와 Wallerawang 발전소에 연간 230만 톤의 석탄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상기 230만 톤의 장기 공급분을 초과하는 생산물량은 대부분 Delta 전력에 Spot 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 석탄가격이 회복되고 광산 생산량이 늘어나 호주 국내공급 초과분에 대한 수출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04년 전세계적인 원자재가격 파동 당시, 장기 공급분 외의 여유 물량을 한국으로 수출하여 한국의 석탄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2) 영업 현황

탄광 영업 초기에는 생산에 차질이 있었으나, 1999년 이후부터 현장 기술진이 막장지질에 기술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하여 2000년부터는 정상궤도에 도달하였다. 노천에서 생산되는 양을(96-99 년: 약 60만 톤) 제외한 순수 스프링베일 갱내 생산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말 약 300만 톤에 이르고 있다. 또 판매의 월별 변동 및 대금 입금시차에 기인하여 현금 흐름의 연도별 편차가 있으나, 2000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호주화로 2000만 불 이상의 현금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

### 3) 향후 사업계획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평균 A\$41억 4천만 불에 이르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05년도부터 통월 폭이 현재의 255미터에서 305미터로 확장되고 2006년부터 통월 블록의 길이가 1.8km에서 3.5km로 길어지면, Main Heading 굴진 부담이 현저히 줄고 동시에 통월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그에 따른 증산과 능률 향상이 기대된다.

#### 다. K사 (실패사례)

호주 바이어들의 구매 성향은 보편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는데 신중을 기하는 편이다. 그리고 약간의 가격 차이로 현 거래선을 바꾸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현지 바이어들의 의하며 일반적으로 가격차이로 거래선을 바꿀 경우에는 현재 구입가격보다 15~20% 정도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시도한다고 한다. 이는 현 거래처를 바꿈으로서 발생하는 제품 test 검증 및 인증비용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를 감안 할 때 최소 15~20%의 비용절감효과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선을 바꾸는 일이 다른 나라 바이어에 비하여 비교적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반면에 한번 공급자로 선정이 되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장점도 지니고 있다.

한국의 K사는 특수 보안장비 개발 및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관련 업계에서는 특수 보안장비사업의 후발 주자로 업계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K사가 단기간에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불가사의한 기적과 같은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였다. K사는 대기업 또는 대규모의 업체만이 손을 댈 수 있다는 특수 보안 장비 사업에 과감히 뛰어 들었고 또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관련 업체들의 소문을 뒤로 한체 우여곡절 끝에 첫 모델을 성공리에 개발하여 당시 미국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가를 하게 되고 전시장을 방문한 몇몇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선금까지 받으면서 제품생산과 신제품 개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진통은 바로 이 시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다. 무리한 사업확장과 제품개발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투자가 몰색에 나서게 되지만 경험이 부족한 K사에게 좀처럼 투자가 발굴이 되지 않자 곧 K사에게 시련이 닥치기 시작한다. 처음 두어번 오더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납기 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자 걱정이 앞선 해외 바이어업체들은 그동안의 선금지불방식을 더 이상 허용치 않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K사의 자금 사정은 더욱 더 극도로 나빠지고 심지어 급한 자금회전을 위하여 수출상품에 불량요소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수정하여 보내지 않고 LC 결재를 위한 목적으로 불량제품을 실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K사로 부터 제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부품하청업체들은 급기야 제품 공급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K사가 개발중인 특수 보안 장비는 모델 사양이 매우 빠르게 바뀌는 제품류인데 항상 자금에 압박을 받은 K사는 그때 그때 마다 바이어들과의 제품개발과 선적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호주 바이어는 K사의 약속 미이행으로 인하여 많은 현지 주요 딜러망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악순환으로 발전되고 급기야 K사는 모든 바이어들로부터 거래를 거절 당하게 되고 또 일부업체에서는 그동안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준비가 안된 무모한 의욕만을 앞세운 계약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호주 바이어에게 손해를 끼친 흔하지 않은 사례이며 K사가 제품불량을 인식하고서도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무리수를 쓴것이 오히려 호주업체로부터 더이상 오더를 받지 못할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된 사례이다.

## 7. 이주정착 가이드

### 가. 집 구하기

호주에서 집을 구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예산 이외에도 자녀가 취학 할 학교의 위치, 전철(City rail)역과의 거리,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라면 아동을 위한 학교를 미리 고려한 다음, 학교 인근지의 주택을 물색해야 한다.

주택물색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나 일요판 신문에 실리는 임대광고를 통하여 얻는 경우도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지역마다 체인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복덕방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 구역내의 매물을 가격대, 평형태, 주택 형태별로 매물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의가 있을 경우 집을 보여주고(inspect) 상담을 해준다.

- 주요 웹사이트: <http://www.domain.com.au>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 마음에 드는 주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을 많이 보는 것이 선불리 쉽게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것은 사전에 부동산 업자들과 매물이 있는지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고, 적당한 매물이 있는 경우 만날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작정 복덕방을 찾아 가서 바로 집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 거의 실패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여러 복덕방을 접촉하여 매물의 조건 등을 확인한 다음 주택내부를 살펴볼(Inspect) 집 리스트를 작성하여 중개업자와 시간약속을 하고 집을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호주의 집세는 1주 단위로 계산된다. 즉 주당 A\$400 혹은 A\$700 하는 식이다. 마음에 드는 집을 정했으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는 서류상 집주인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 작성, 관련 비용 접수 등 모든 일을 대행한다.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증금(Bond/4주 분의 월세)과 월세(rent/1개월 분 임차료)가 전부이다. 보증금은 계약 시 지불하고 계약 종료 시 돌려받게 되나, 퇴거 시 집의 상태에 따라서 원상 복구비 명목으로 일부는 돌려 받지 못한다.

이를 위해 최초 계약 시 집의 상태에 대한 인스펙션 폼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동 Inspection 작성시 임차인은 추후를 대비하여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나중에 bond를 돌려 받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나. 은행 계좌개설

호주 국민은행(National Australia Bank), Westpack 등 다수 지점을 가진 은행에 여권을 가지고 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집세 납부는 본인 은행계좌로부터 자동 이체하는 방법도 있으며 부동산에서 발행한 deposit book을 매월 작성 현금 혹은 수표로 해당은행에 직접 내거나 혹은 최초 소개받은 부동산에 가서 현금 혹은 수표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 다. 전화신청

호주 국영 통신회사(민영화 진행 중)인 텔스트라에 전화 한 통화로 간단하게 새로운 전화 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주택임차 계약서를 통해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에는 한국인 통역을 바꿔 달라고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드니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통신서비스 회사가 2개 있는 바, 이들의 도움을 얻어 전화 신청은 물론 인터넷 연결(ADSL)까지 해결할 수 있다.

## 라. 가스, 전기, 수도

- 가스는 The Natural Gas Company(전화: 131 606)를 통하여 연결을 요청하고, 구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들을 접촉할 경우 집 주소, 집 전화번호 및 인적 사항 등을 물어오므로 주택임차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 물론, 가스, 전기, 수도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주택이 라 할 지라도, 세입자가 바뀌면 새로운 세입자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동 사항은 아래의 전기, 수도 연결 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전기는 Energy Australia (전화 131 535)를 통하여 연결하고 구좌를 개설하면 된다.
- 수도의 경우, UNIT(연립주택), 아파트는 집주인이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 후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련 수도국에 연락하여 신규입주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마. 비품 구입

- 호주는 TV 및 비디오가 한국과 달리 PAL 방식이어서 Multi 기능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던 제품은 사용할 수가 없다. 또한 전압이 240 볼트로서 한국의 220V 보다 높고 싸이클도 달라(50 Hz: 한국 60 Hz) 전압 및 싸이클에 민감한 제품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험자들에 의하면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승압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2008년부터 호주의 TV방송은 모두 HDTV방송으로 송출될 예정임.
- 필요한 전자제품은 호주에서 모두 구입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가격보다 50% 이상 비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바. 생활정보 수집방법

- 호주에 도착하여 가장 빨리 정착하는 방법은 한국 교포들이 발행하는 주간 정보지를 입수해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어로 제작되는 주간정보지는 시드니에서 10여종이, 멜버른에서 4종(멜버른저널, KOREA21, 일요신문, 멜번의 하늘)이 발간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매주 금요일에 발간된다.
- 매주 금요일에 한국식품점이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는데, 주간정보지에는 한국인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주요기관은 물론 동문회 연락처와 병원, 중고품 판매광고, 비디오대여점 등 한국인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시드니무역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좌측 중하단부에 있는 “호주교민의 통신 마당”에서 교민업체를 검색할 수 있음.
- 멜버른 지역에서는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라디오 한국어방송(AM 1224 KHZ)이 매주 일요일 오후 3시-4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멜버른 교민소식은 물론 종합뉴스, 일요시사, 웰빙건강, 문화공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아무런 연고도 없이 호주에 도착한 경우라면, 택시를 이용해서 “캠시” 또는 “이스트우드”, “스트라스필드” 전철역에 가자고 하면 한국인이 모여 사는 지역에 당도하게 된다. 한국간판이 걸린 근처의 아무 가게에 들어가도 주간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요일에 발간되기 때문에 금, 토, 일요일에 구하기가 가장 쉽다.

## 사. 자녀 교육여건

### 1) 호주의 교육제도

- 호주의 학제는 초등학교(Primary) 6년, 중고등학교(Secondary) 6년, 대학교(Tertiary) 3~6년으로 나누어 진다.
- 보통 중고등학교(Secondary)는 HighSchool 이라고 칭하는데, 중등과정 4년(7~10학년), 고등과정 2년(11~12학년)으로 나뉘어 지며, 중등과정을 마친 후 대학진학에 뜻이 없거나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바로 졸업하게 된다.
-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만 고등과정에 진학하며, 11~12학년을 다니면서 대학입시 준비를 한다.
- 호주의 대학교 입학 자격시험은 주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 시드니지역에서는 HSC (High School Certificate)로 불리며, 멜버른 지역에서는 VCE (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으로 불리고 있는데, 시험 내용은 장시간에 걸친 주관식으로 논리성과 응용력 테스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중등과정(10학년) 까지만 마친 학생들은 대부분 직업전선에 뛰어들기 위해 기술전문 학교(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에 진학하는데, TAFE는 약 200개가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이다. 한편, 호주의 학제는 매년 2월에 시작되어 11월에 마치게 되며, 2학기로 운영된다.

### 2) 시드니에서의 자녀 한국어 교육

- 호주에 파견된 국가 공무원이나 주재상사 직원들에게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는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의 교과 과정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드니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교포자녀를 위한 기초 한글과정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주재원 자녀들에게 만족할 만한 교과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시드니에는 North Turamurra라는 지역에 주말 한글학교(린필드 한국학교)가 있어서 주재원 자녀들이 귀국했을 때 받게 될 학습 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국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학교는 한국의 동급 학년에서 받는 수업과 동일 한 진도로 수업을 진행되나, 매주 토요일에만 운영되어 어려움이 따른다.



- 린필드 한국학교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뤄지는 수업은 2시간을 한 묶음으로 해서 3교시수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 20여명과 학생수 150여명으로 구성된 린필드 한국 학교는 시드니 북부지역의 하이스쿨을 빌려서 운영되고 있다.
  -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과목을 두루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어(한자교육 포함)와 수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오후에 사회관련 과목의 수업이 추가된다.
  - 현재 학교의 학급 구성은 유아부(3세부터), 유치부(초등학교 입학 전 기초 한글교육), 초등학교 학년별 6개 학급, 중등부 학년별 3개 학급, 고등부 2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학년별 수업 진행 방향
  - 유아반, 유치반
    - 오전 1 교시(9:30-11:20)와 2 교시(11:50-1:30) 수업을 진행하며, 유아반은 학생들의 사회 성 교육을 중심으로 미술, 음악, 예절 등의 과정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 유치반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 기초 교육과 사회 활동성 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 한국의 교과과정에 따른 기초 한글과 기본 수학 익히기를 중심으로 1 교시 (9:30-11:20)는 국어, 2 교시(11:50-1:30)는 수학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수업은 없다
  -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 한국의 교과서를 공급받아 교과서를 중심으로 오전에는 국어, 산수를, 오후에는 사회 과목 수업을 오후 3 시 30 분까지 진행한다.
  - 중학교 과정
    - 한국의 교과서를 공급받아 교과서를 중심으로 오전(9:30-오후 1:30)에는 국어, 수학을 중심으로, 오후에는(2:00-3:30) 주로 사회와 국사 등을 가르친다. 국어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한자 수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한국 교육현실에서 중시되는 논술교육, 토론교육을 도입해 2000 년도부터 시행되는 수행능력 평가제에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 고등학교 과정
    - 고등학교 과정은 한국의 대학입학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국어와 수학 2 개 과목만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후 수업도 국어 수학을 격주로 보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국어의 경우 교과서와 함께 논술 수업에 주안점을 두고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 주요기사 등을 복사해 토론하거나 쓰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 이 외에,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과외공부도 가능한데, 과외비는 개인과외의 경우, 시간당 A\$60불(US\$50) 수준이며, 그룹일 경우 학생2-3명에 A\$120불(US\$90) 수준이다. 각종 악기 교습비도 위 과외비와 유사하다. 한편 시드니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영어 다수 존재하여 문법에서 에세이 작문까지를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다.

## 자. 자동차 구입

호주 생활에 있어 자동차 구입은 필수라 하겠다. 대중교통망은 전반적으로 시설면, 용량 면에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차량 구입에 있어 우선 결정할 사항은 신차를 구입할 것이냐 중고차를 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호주의 경우 중고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



나 이는 재판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자금사정이나 체제 기간등에 맞추어 결정하면 된다. 시드니 지역의 경우 중고차 매매점은 파라마타 로드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소재해 있다. 교민잡지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매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이 때 보험문제, 차량등록문제, 명의이전문제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호주의 경우에도 유류대가 크게 상승하여 연비가 높은 차를 구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주요 웹사이트: <http://www.drive.com.au>

### 카. 병원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일단 주거지 인근의 일반의(GP)를 찾아 진단을 받고, GP의 진단에 따라 처방을 받거나 다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 공립 병원(public hospital)의 응급실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000번을 눌러 앰بول런스를 부를 수 있다. 최근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병원도 증가 추세이다. 영주권자 내지 시민권자의 경우 메디케어라 불리는 일종의 국민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 대부분의 진료 및 치료를 공립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못하는 범위가 있고, 사립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공립병원의 경우 때로는 치료를 받기 위해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함) 별도의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주권이 없는 단기 체류자는 민간 보험을 이용하게 되는데 보험료는 통상 월 300-400 호주 달러(가족 기준)이며 안과, 치과 등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8. 출장가이드

### 가. 국가 지도



### 나. 개관 (일반사항)

- 국명: 호주 (Commonwealth of Australia)
- 위치: 오세아니아 (동경 113°9' - 153°39', 남위 10°41' - 43°39')
- 면적: 768만 km<sup>2</sup> (한반도의 약 35배, 남한면적의 약 80배)
- 기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 수도: 캔버라
- 인구: 20,014,000명
- 주요 도시: 시드니(4,170천명), 멜버른(3,529천명), 브리즈베인(1,693천명), 퍼스(1,417천명)

- 천명), 아델레이드(1,110천명)
- 인구 구성: 유럽인(89.2%), 아시아인(4.1%), 원주민(1.6%), 아랍인(1.0%)
- 언어: 영어(공용어)
- 종교: 영국성공회(23.9%), 천주교(26.0%), 장로교, 침례교 등
- 화폐 단위: Australian Dollar(A\$)
- 환율: A\$1 = US\$0.87 (2007. 12월 현재)

## 다. 비자

### 1) 비자관련 일반사항

- 호주 입국시는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국으로의 Transit을 위해 공항 내에서만 체류할 경우에는 8시간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도 체류가 가능하다.
- 비자 취득 후 12개월 이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무효화된다. 관광비자로 입국시 체류기간은 3개월이며,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 도입된 ETA (전산방문 비자)는 3개월 미만 호주를 방문할 경우 취득이 가능하다.

### 2) 비자 발급

- 관광, 상용비자는 호주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거나, ETA(전산방문비자)를 인터넷 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ETA 전산비자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없다. ETA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인터넷 서비스비로 지불해야 한다.
- ETA 비자 취득은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신청한 경우 1분이면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 경우를 예상하여 출국 최소 3일 이내 비자를 신청해야 함.
- ETA 비자 취득 조건: 유효한 여권 소지, 방문목적이 여행, 친지 방문 또는 회의나 컨퍼런스 참석일 경우, 호주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ETA 시스템 회원사인 항공사로 여행할 경우 가능하다.
- 3개월 이상 체류시 단기방문/상용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주한호주대사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관련정보 [www.australia.or.kr](http://www.australia.or.kr)를 참조.

## 라. 출입국절차

### 1) 호주 입국절차

- 입국 심사: 여권, 항공권, Incoming Passenger Card 및 Customs, Quarantine and Wildlife Statement(기내 배부 또는 입국심사장에 비치)를 호주공항 입국심사 창구에 제출

### 2) 출국 절차

- 항공편 체크인
- 이민성 출국심사(여권, 항공권, 탑승권, Outgoing Passenger Card 제출)

### 3) 여권분실 해결절차(여행증명서)

- 여행증명서는 정식 여권 발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귀국 또는 제3국 여행을 하거나, 해외여행 중 여권의 만료 또는 분실자가 귀국하는 경우에 발급받음
-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칼라사진 3매, 항공권 원본 및 사본, 수수료 (A\$13), 한국에서 발행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여권분실경위서 1부,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함.
- 소요기간: 1주일
-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접수하되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함. 우편접수 시 분실우려에 대비하여 접수 및 반송용 등기우편봉투는 추적 가능한 우편을 이용하고, 반송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함.

### 4) 통관절차

- Customs, Quarantine and Wildlife Statement에 명시된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검사대를 통과(통과 시 동 Statement 제출)
- 신고해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일반적으로 US\$ 150 상당)을 내게 됨.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호주가 환경보호 의지가 강하여 미신고 식품이 적발되면 입국절차도 복잡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벌금을 물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고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만을 위한 세관 검사대에서 휴대품을 검사 받는다. 신고된 식품 등이 친지선물용 정도로 판단될 경우, 세관검사는 간략한 검사로 통과 된다.
- 무세반입 허용 범위
  - 1인당 술 1리터, 담배 250개피 또는 250그램(18세 이상)
  - 개인용 의류(모피류 제외), 신발류, 위생 및 장식용품(향수 및 보석 제외)
  - 출국시 재반출할 물품
  - 모피의류, 향수, 보석을 포함한 기타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 가격이 총 A\$400(18세 미만은 A\$200) 미만인 경우에만 면세
  - 김, 고추장 등 식품의 경우, 밀폐포장되고 내용 성분표기가 명확한 제품만 휴대반입이 허용되며, 집에서 담근 고추장, 김치 등 식품은 모두 압류조치된다.

### 마. 통화/환전

#### 1) 통화

- 화폐단위는 Australian Dollar(A\$)이며, A\$ 1 = 100 Cents이다. 원래는 파운드화를 사용했으나, 1966부터 달러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지폐의 종류는 A\$ 100, A\$ 50, A\$ 10, A\$ 5(2종) 등 6종이며, 동전의 경우에는 A\$ 2, A\$ 1, 50 Cents, 20 Cents, 10 Cents, 5 Cents 등 6종이 있다.



-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호주의 화폐는 고액권으로 갈수록 크기도 커지는데, 동전의 경우 2달러짜리가 1달러짜리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 호주달러화의 환율은 2008년 1월 현재 A\$ 1= US\$ 0.88수준으로 호주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호주의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평균 경제성장을 보다 높고 호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지하자원의 국제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 결제수단으로서의 호주 달러화 선호도가 유지되고 있어, 호주달러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 환전

- 공항, 시중 은행 및 사설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환전소에 비해 환율이 유리하나, 입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소액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설 환전소는 환율이나 수수료 면에서 매우 불리한 편이다. 원화는 호주에서 환전할 수 없다.
- 환전금액이 클 경우 HKSB(홍콩상하이뱅크)와 같은 시중의 중국계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이 경우 모든 환전창구에서 신분증(여권 등)을 요구한다.
- 한편, 면세점이나 관광객 상대 기념품점 등을 제외한 일반 상점에서는 거의 미화를 받지 않는다.

## 바. 주요 연락처/유용한 현지어 표현

### 1) 주요 연락처

| 기관명(소재지)      | 대표자      | 전화번호            | 웹사이트                                                                     |
|---------------|----------|-----------------|--------------------------------------------------------------------------|
| 주호주한국대사관(캔버라) | 대사 조창범   | (61-2)6270-4100 | <a href="http://www.mofat.go.kr/australia">www.mofat.go.kr/australia</a> |
| 시드니총영사관(시드니)  | 총영사 박영국  | (61-2)9210-0200 | <a href="http://www.korconsyd.org.au">www.korconsyd.org.au</a>           |
| 시드니무역관(시드니)   | 관장 이 기   | (61-2)9299-1790 | <a href="http://www.kotra.or.kr/sydney">www.kotra.or.kr/sydney</a>       |
| 멜버른무역관(멜버른)   | 관장 박봉석   | (61-3)9699-3833 | <a href="http://www.kotra.or.kr/ktc/mel">www.kotra.or.kr/ktc/mel</a>     |
| 한국관광공사(시드니)   | 지사장 안덕수  | (61-2)9252-4147 | <a href="http://www.visitkorea.or.kr">www.visitkorea.or.kr</a>           |
| 대한광업공사(시드니)   | 사무소장 박경규 | (61-2)9959-5444 | <a href="http://www.kores.or.kr">www.kores.or.kr</a>                     |

### 2) 유용한 현지어표현

- 호주영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영어와 조금 차이가 있음에 유념해야한다. 호주 영어는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의 중간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파벳 a의 발음을 대부분 ‘아’로 발음한다. 가령, ‘I can’t’의 경우 미국식으로는 ‘아이 캔트’가 되지만 호주에서는 ‘아이 칸트’로 발음된다.

- 그 밖에 알아두면 호주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표현들은 아래와 같다.
  - Shout는 한잔 사기
  - 동료들과의 술자리나 저녁식사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이 함께 자리한 동료들에게 한턱 낸다는 뜻으로 "That's my shout"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 표현은 상당히 친근감이 있는 표현으로 호주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mateship 이미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B.Y.O
  - B.Y.O는 Bring Your Own의 약자이다. 이것은 주류 판매허가를 받기 힘든 호주의 식당들이 손님에게 마실 술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있게 배려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레스토랑을 예약하기 전에 B.Y.O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Licensed'라고 쓰여있는 음식점은 주류 판매허가를 얻은 곳으로서, B.Y.O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Aussie와 Mateship
  - 호주에서는 Aussie(오지)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이 말은 순수 토박이 호주인을 일컫는 것으로 상당히 친밀감이 있는 단어이다. 영국 및 아일랜드계의 이민자의 자손들은 스스로를 Aussie라고 칭하면서 호주 개척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진다. 'Mate'은 호주 남성들이 자주 쓰는 말로 친근하게 상대방을 부르는 표현이다.
  - G'day mate!
  - 호주발음으로 '그대이 마이트'라고 읽히며, 친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운 인사로 쓰이는 말이다. 영국식 인사 Good Day에서 줄여져 사용되고 있다.
  - Tar
  - '타'라는 말은 'Thank you'를 슬랭 형식으로 짧게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이다. 이 외에도 Cheers 역시 Thank you 대신 사용되는 말이다.

## 사. KOTRA 무역관 안내

### 1) 시드니 무역관

- 오시는 길
  - 방법1: 택시-Market St. 1번지 빌딩하차, 공항에서 30 여분 소요
  - 방법2: 대중교통-시드니 Kingsford 공항에서 전철 또는 300번 공항버스 이용. Town Hall 역에서 하차, Kent St. 방향으로 도보로 5분 정도 이동하면 건물(Market St. 1번지, BT Tower)이 보임. 30분 가량 소요
- 무역관연락처
  - 주소: Korea Trade Centre, Sydney Suite 2404 Level 24, 1 Market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전화: (61-2)9264-5199
  - 팩스: (61-2)9264-5299
  - E-mail: [info@kotra.org.au](mailto:info@kotra.org.au)

### 2) 멜버른 무역관

- 오시는 길
  - 방법1: 택시 - 멜버른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택시요금은 통행료를 포함하여 약 A\$ 45 내외로 소요시간은 약 35-45분 정도임(무역관 주소를 보여주면 됨)

- 방법2: 대중교통(Skybus & Tram) - 멜버른 공항에서 Skybus를 타고 '멜버른 타운 홀'에서 내린 후, 타운 홀 앞에서 St. Kilda행 트램으로 갈아탄 다음 '도메인 인터체인지'에서 내림. 무역관은 '도메인 인터체인지'역 앞에 위치함.

○ 무역관 연락처

- 주소: Korea Trade Centre Melbourne Level 6, 20-22 Albert Road, South Melbourne, Victoria, 3205 Australia
- 전화: (61-3)9699-3833 .팩스: (61-3)9699-3811
- E-mail: [kotramel@bigpond.net.au](mailto:kotramel@bigpond.net.au)

**'KOTRA'가 추천하는 바이어 선물**

바이어와의 첫 만남이라면 한국전통문양이 들어간 한국적인 제품이되 바이어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저렴한 것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갈피, 열쇠고리, 핸드폰악세사리, 팬등이 선물하기 좋다.

첫상담이 아닌 기존의 바이어라면 바이어의 성향에 따라 인삼차, 자개 보석함, 명함함과 같은 한국전통공예품이되 개인용 소지품이 적당하다. 하회탈과 같은 나무공예품은 세관 통관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벽걸이 공예품은 아시아 문화 애호가가 아니면 처치 곤란 선물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호주 문화 이것만은 주의하자**

□ 상담시간

호주인들은 상담중 점심시간이 1~2시간 지나도 전혀 관계치 않고 상담을 진행하거나 샌드위치처럼 간단한 식사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초면에 정규 근무시간 (오전9시-5시) 외의 상담이나 주말에 상담을 요구하는 것은 실례가 되는 일이니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접대문화'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먼저 권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사전 약속은 필수

업체와 미리 약속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 업체를 방문한다는 것은 호주에서는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특히 큰 업체의 경우 구매 담당자는 2개월 전에도 약속을 잡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사전 약속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이 주선된 바이어와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바이어가 원하는 사항에 대해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하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상담을 진행시킬 수 있다.

아. 호텔

**KOTRA 현지 호텔 평가표**

| 호텔명                               | 접근성 | 쾌적성 | 안전성 | 부대시설 | 평점   |
|-----------------------------------|-----|-----|-----|------|------|
| Shangri-La Sydney                 | 9   | 10  | 10  | 10   | 9.75 |
| Sydney Harbour Marriot            | 9   | 10  | 10  | 10   | 9.75 |
| Novotel Sydney on Darling Harbour | 7   | 8   | 9   | 8    | 8.0  |
| Stamford Plaza Sydney Airport     | 6   | 9   | 8   | 8    | 7.75 |
| Carlton Crest                     | 8   | 8   | 8   | 8    | 8.0  |

## 1) Shangri-La Hotel, Sydney (☆☆☆☆☆)

- 위치 : 사진자료상 표기 57번(176 Cumberland St. The Rocks)
  - 시드니공항에서 차로 25분, 시내 Wynyard(원야드) 전철역에서 도보 8분 거리
- 객실 요금 (Standard Room기준/싱글,트윈 요금 동일)
  - A\$450(약 US\$350/성수기), A\$280(약 US\$215/비수기)
  - 호주의 호텔은 방의 전망에따라 가격차이가 20%이상 나기도 함.
  - 시즌별, 객실 종류별 숙박요금은 [www.wotif.com](http://www.wotif.com)에서 검색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 모든 객실에서 고속인터넷 이용 가능(사용료: 하루 무제한 A\$20.0)
  - 각종 회의실에서는 무선LAN과 2Mega급 고속인터넷 사용도 가능 (사용료와 설치비가 따로 청구됨)
- 각종 부대시설
  - 특급관광지에 소재한 특급호텔로서, Gym, Spa등 모든 시설을 구비함.
  - 회의실로 사용 가능한 룸은 총 18개이며, 최대규모 Ballroom은 670sm이나, 2개를 연결 (벽을 터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 칵테일 파티의 경우 1,800명을 동시수용할 수 있음.
- 연락처
  - 전화 : 61-2-9250-6000
  - 팩스 : 61-2-9250-6250
  - 이메일 : patrick.burke@shangri-la.com
  - 웹사이트 : www.shangri-la.com

## 2) Sydney Harbour Marriot (☆☆☆☆☆)

- 위치 : 사진자료상 표기 18번(30 Pitt St. Circular Quay)
  - 시드니공항에서 차로 25분, 시내 원야드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
- 객실 요금 (Standard Room기준/싱글, 트윈 요금 동일)
  - A\$450(약 US\$350/성수기), A\$259(약 US\$200/비수기)
  - 호주의 호텔은 방의 전망에따라 20%이상 가격차이가 나기도 함.
  - 시즌별, 객실 종류별 숙박요금은 [www.wotif.com](http://www.wotif.com)에서 검색 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 모든 객실에서 고속인터넷 이용 가능(사용료 : 하루 무제한 A\$24.95)
  - 각종 회의실에서 고속인터넷 사용 가능
- 각종 부대시설
  - 특급관광지에 소재한 특급호텔로서, Gym, Spa등 모든 시설을 구비함.
  - 각기 다른 크기의 평선룸 20개 보유
  - 최대룸인 The Gallery는 252sm이며 옆방과 터서 사용할 경우 3배로 확장이 가능



- 연락처
  - 전화 : 61-2-9259-7000
  - 팩스 : 61-2-9251-1122
  - 이메일 : sydney.sales@marriothotels.com
  - 웹사이트 : [www.marriot.com/mc](http://www.marriot.com/mc)
- 특기사항 :
  - 호텔에 렌트카 서비스업체(AVIS)가 상주해, 렌트카에 가장 편리함.
  - 시드니에 동명호텔(Sydney Marriot)이 있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3) Novotel Sydney on Darling Harbour (☆☆☆☆)

- 위치 : 사진자료상 표기 32번(100 Murray St, Darling Harbour)
- 객실 요금 (Standard Room기준/싱글,트윈 요금 동일)
  - A\$450(약 US\$350/성수기), A\$200(약 US\$155/비수기)
  - 호주의 호텔은 방의 전망에따라 가격차이가 20%이상 나기도 함.
  - 호텔별 객실요금, 객실 크기별 요금은 [www.wotif.com](http://www.wotif.com)에서 검색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
  - 모든 객실에서 고속인터넷 이용 가능(사용료 : 분당 A\$0.5)
  - 각종 회의실에서는 고속인터넷 사용이 가능
- 각종 부대시설
  - 시드니 전시컨벤션센터에 인접한 중상급 호텔로서, 회의시설은 많이 보유하지 않으나, 그 외 대부분의 시설을 완비함.
  - 12개의 회의실 갖고 있으나, 모두 소규모의 방으로 구성됨.
- 연락처
  - 전화 : 61-2-9934-0000
  - 팩스 : 61-2-9934-0099
  - 이메일 : h1181-sb01@accor.com
  - 웹사이트: [www.novoteldarlingharbour.com](http://www.novoteldarlingharbour.com)
- 기타 특이사항: 전시회 참가시 투숙이 권장되는 호텔임.

### 4) Stamford Plaza Sydney Airport (☆☆☆☆)

- 위치 : 시드니공항에 인접 (30 Pitt St. Circular Quay)
  - 시드니공항에 인접, 시내와는 차로 25~30분 거리
- 객실 요금 (Standard Room기준/싱글,트윈 요금 동일)
  - A\$390(약 US\$300/성수기), A\$115(약 US\$89/비수기)
  - 이 호텔은 전망에따른 가격차이가 거의 없음.
  - 시즌별, 객실 종류별 숙박요금은 [www.wotif.com](http://www.wotif.com)에서 검색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 모든 객실에서 고속인터넷 이용 가능
  - 사용료: 분당 A\$0.55 또는 하루 무제한 A\$ 29.00)
  - 각종 회의실에서 고속인터넷 사용 가능
- 각종 부대시설
  - 공항에 인접한 호텔로서, Gym, Spa등 모든 시설을 구비함.
  - 11개의 각기 다른 크기의 평선룸 보유
- 연락처
  - 전화 : 61-2-9317-2200
  - 팩스 : 61-2-9317-3855
  - 웹사이트 : [www.stamford.com](http://www.stamford.com)
- 특기사항 :
  - 시드니 다른 지역에도 Stamford 호텔이 있는 바, Airport를 강조해야 함.

#### 5) Carlton Crest Hotel (☆☆☆☆)

- 위치 : 사진자료상 표기 27번(169 Thomas St, Sydney)
- 객실 요금 (Standard Room기준/싱글,트윈 요금 동일)
  - A\$300(약 US\$230/성수기), A\$135(약 US\$105/비수기)
  - 이 호텔은 전망에따른 가격차이가 거의 없음.
  - 호텔별 객실요금, 객실 크기별 요금은 [www.wotif.com](http://www.wotif.com)에서 검색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 모든 객실에서 전화모뎀 인터넷 이용 가능(사용료: 분당 A\$0.5)
- 각종 부대시설
  - 시드니 도심 차이나타운 인근에 위치한 중급 호텔로서, 비즈니스 호텔이라기 보다는 절약하려는 여행자에게 적합한 호텔임. 따라서, 식당, 로비, 아주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함.
  - 11개의 중소규모 회의실 갖고 있음.
- 연락처
  - 전화 : 61-2-9281-6888
  - 팩스 : 61-2-9281-2213
  - 이메일 : [res@carltoncrest-sydney.com.au](mailto:res@carltoncrest-sydney.com.au)
  - 웹사이트 : [www.carltoncresthotels.com.au/sydney](http://www.carltoncresthotels.com.au/sydney)
- 기타 특이사항: 바이어와의 상담을 염두에 둔 호텔이라기 보다는 저렴한 여행을 즐기려는 가족에게 적합한 호텔임.

시드니 시내지도 및 호텔 위치(<http://www.scvb.com.au/why/sydney/maps>)



자. 식당

KOTRA 현지 식당 평가표

| 식당명            | 맛.위생 | 분위기 | 편의성 | 서비스 | 평점   |
|----------------|------|-----|-----|-----|------|
| Cafe Sydney    | 8    | 10  | 8   | 9   | 8.75 |
| Machiavelli    | 8    | 9   | 9   | 8   | 8.5  |
| Kabuki         | 9    | 8   | 8   | 9   | 8.5  |
| Golden Century | 10   | 8   | 8   | 7   | 8.25 |
| Han Cook       | 8    | 6   | 9   | 7   | 7.5  |

### 1) Cafe Sydney (R5)

- 위치: 위 호텔지도에서 55번과 15번의 중간지점(5층, Customs House, 36 Alured St, Sydney)
- 주요 메뉴: 스테이크 종류와 생선요리(서양식)
- 가격대: 앙트레, 메인, 디저트 포함시 일인당 A\$60~90(US\$45~70)
- 전화 : 61-2-9251-8683
- 웹사이트 : www.cafesydney.com

### 2) Machiavelli (R5)

- 위치: 위 호텔지도에서 6번과 20번의 중간지점 (123 Clarence St. Sydney)
- 주요메뉴 : 스테이크 종류와 스파게티 (서양식)
- 가격대 : 앙트레, 메인, 디저트 포함시 일인당 A\$45~80(US\$35~60)
- 연락처: 61-2-9299-3748
- 특기사항: 지하에 위치해 전망은 없으나, 호주 역대 수상들이 즐겨찾은 명소중 하나임.

### 3) Kabuki (R2)

- 위치: 위 호텔지도에서 6번과 7번의 중간지점 (31 Market St. Sydney)
- 주요 메뉴: 일본식 스시, 사시미 등 (서양식)
- 가격대: 중식 기준 일인당 A\$30~40(US\$25~30)
- 연락처: 61-2-9267-4552

### 4) Golden Century (R3)

- 위치: 위 호텔지도에서 28번과 33번의 중간지점 (393 Sussex St. Sydney)
- 주요메뉴: 바다가재, 왕게, 새우, 전복 등 해산물 요리(중국식)
- 가격대: 일인당 A\$50~70(US\$38~54)
- 연락처: 61-2-9212-3901
- 특기사항 : 전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중국식당으로 알려지고 있고, 손님이 너무 많아 조용히 환담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님. 맛을 즐기는 식당임

### 5) Han Cook (R4)

- 위치 : 위 호텔지도의 7번(힐튼호텔) 근처임 (238-242 Pitt St. Sydney)
- 주요메뉴 : 김치찌개, 칼국수 등 한식 일체
- 가격대 : 일인당 A\$10~20(US\$8~15)
- 연락처 : 전화 : 61-2-9267-6500
- 특기 사항: 시드니 시내 중심에 소재한 한식 대중 음식점으로서, 손님을 초대하기에는 적당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음식맛은 좋은 편임.
- 식당 분류(용도에 따른 분류)
  - R1: 가벼운 런치나 간단한 식사 혹은 차를 즐길 수 있는 식당
  - R2: 비즈니스 미팅.상담에 적합한 조용한 식당
  - R3: 주류를 중심으로 접대에 적합한 식당
  - R4: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
  - R5: 제대로 된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

## 차. 교통

### 1) 한국과의 교통

- 인천~시드니 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각각 주 7회 운항중이며, 비행시간은 약 10시간이 소요된다.
- 인천~멜버른을 운항하는 직항편은 없으며, 시드니를 경유하여 호주 국내선을 이용해야 한다. 멜버른을 행선지로 하는 출장자는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마치고 국제선 공항청사를 일단 빠져 나와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국제선 청사에서 2km 거리에 위치한 국내선 청사로 이동해야 하는데, 국제선 청사와 국내선 청사간 이동은 전철, 공항셔틀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인천~시드니-멜버른 항로로 이동할 경우,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시드니 도착시간과 멜버른행 비행기 탑승시간은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내선 청사도 2개로 이루어져 있어 자칫 착오로 엉뚱한 국내선 청사에 내릴 경우 무거운 여행가방과 함께 수백 미터의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곤란을 겪게 되는 때문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택시 이용 시에 본인이 이용할 다음 국내선 항공편 번호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이용하여 멜버른으로 이동하는 경우, 시드니-인천간 노선은 출발이 이른오전 (8시, 9시)임으로 오전 중 멜버른-시드니 연결 항공편이 없음을 양지하여야 한다.

### 2) 시내교통

- 한국에서 호주를 방문한 출장자가 시드니나 멜버른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차량 핸들이 우측에 있는 문제 이외에도, 도심 내에 일방통행로가 많아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심각한 주차문제로 인해 주차료가 택시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 시내버스, 전철, 모노레일 등 대중교통편 이용도 출장자가 상담을 위해 이동하는 데에는 권장할 만하지 못하다. 목적지에서 정확히 내리지 못할 경우 약속시간을 놓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정차하는 지역마다 안내방송을 하기는 하지만, 독특한 호주식 영어발음은 초행자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마치고 시간여유가 있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는 것도 호주를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 시드니 지리에 밝지 못한 출장자들에게는 장거리가 아닌 경우, 택시이용이 권장된다.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장거리인 경우에는 전철을 이용하여 목적지 근처에서 하차한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호주의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약 2달러(A\$2.8)이나, 탑승과 동시에 시간, 거리 병산제가 적용된다. 1Km마다 1.2달러가 부과되기 때문에 탑승하여 3Km를 간다면 5.6달러가 소요된다. 그러나 도심에서 시속 25Km 미만의 속도일 경우 시간할증료(분당 약 50센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택시요금은 우리나라 3배 수준으로 보면 착오가 없다.

- 통상 전철역에는 빈 택시들이 다수 기다리고 있어, 택시를 잡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다. 그러나 용무를 마치고 전철역으로 돌아갈 택시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럴 경우에는 갈 때 이용한 택시기사에게 1시간쯤 후에 또는 몇 시간쯤 후에 다시 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다. 다시 와줄 경우에는 약 1.1달러(A\$1.4)의 부킹료를 더 내게 된다.
- 시내버스의 경우, 다양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 정도로 빈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두시간에 세대 꼴로 운행된다. 그나마 노선별 막차 운행시각이 다르긴 하나 대부분 저녁 7시를 전후하여 시내버스가 마감된다. 버스 요금은 거리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에 탑승할 때 행선지를 말하고 이에 합당하는 요금을 내어야 한다.
- 전철의 경우, 노선이 단순하기 때문에 출장자들의 이용도 권장된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편도요금에 110~130%정도로 왕복권을 살 수가 있다. 전철 구내방송이 잘 알아 듣기에 쉽지 않고, 역사마다 역명이 잘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목적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호주의 공항에는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시내관광 안내책자를 공항 안 여러 곳에 비치하고 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심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 요소요소에 비치된 안내책자는 무료이기 때문에 한권쯤 가져 올 필요가 있다. 이 책자는 주요지역별 지도, 전철노선도, 기타 가볼만한 곳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 주소개념
  - 호주를 방문하는 출장자에게 곤혹스러운 일 중 하나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도로명이 한 도시안에도 여러개가 존재하여 자칫하면 엉뚱한 주소로 찾아갈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하거나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에도 도로명 뒤에 표기된 구역명을 함께 알아두어야 실수가 없다.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지역명칭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하는데, 우리가 통상 시드니라고 칭하는 지명은 도시명이 아니고 NSW주에 속 한 여러개의 소지역 (우리나라 구청급 행정구역)명이다. 따라서, 시드니나 멜버른은 우리나라 서울이나 대전처럼 도시명이 아니고 종로구 또는 유성구와 같은 구에 해당하는 지역명이다. 호주사람들은 시드니의 중심부 상업지대를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로 칭하기도 한다.

시드니에는 Albert Street가 54개나 존재하고, Albert Road는 5개, Albert Avenue는 4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동일명칭의 도로가 다수이기 때문에 어느구에 속한 Albert Street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택시를 이용할 때에 실수가 없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124 Albert Street, Hornsby" 또는 "83 Albert Street, Sydney"처럼 구역명을 함께 불러줘야 한다.

- 호주는 우측핸들 시스템
  - 호주는 영국식 교통체계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교통시스템을 갖고 있다.
  - 좌회전, 우회전 신호체계도 마찬가지로이며, 도심 이외의 지역에서는 로터리 (Round About)가 많이 설치되어 과속을 방지하고 있다. 로터리에서는 언제나 우측차량에 진입우선권을 줘야한다.
- C.B.D에서는 택시이용이 바람직
  - 호주의 상업 중심지역은 도로가 좁을 뿐 아니라, 주차장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주차장을 찾더라도 주차요금이 택시요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자가운전의 경우 목적지에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한참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도 택시 이용이 바람직하다.

- 또한, 좁은 도로에서 일방통행 차선과 진입금지 표기가 많아 현지에 거주하는 운전자들도 자주 이용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목적지를 길 건너편에 두고도 한참을 다시 돌아야 목적지 앞에 차를 댈 수 있는 때문이다. 우측핸들에 자신있는 운전자에게도 택시이용이 권장된다.

○ 도심 외곽지역이라면 렌트카도 O.K

- 도심 외곽지역에서 바이어와의 약속이 있다면, 택시이용보다 렌트카 이용이 유리할 수 있다. 택시 요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왕복 20Km 거리를 택시로 달리게되면, 웬만한 승용차 하루 렌트비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차량은 공항에서 임차하거나, 투숙호텔 주변의 렌터카 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국제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렌터카 회사가 많기 때문에 출국전 준비가 필요하다. 렌터카 회사는 시내 지도책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 그러나 호주의 교통체계가 우측운전대 시스템인 관계로 호주가 초행 길인 출장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은 곤란하며, 통역원 등 현지교통에 익숙한 사람에게 운전을 맡겨야 한다.

○ 비즈니스관광

- 관광은 휴식을 줄 뿐 아니라 시야도 넓혀주고 바이어와의 대화 소재 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매년 호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600만명을 넘고 있어 시드니나 멜버른에는 호주인들이 운영하는 일일관광 여행사뿐 아니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일관광 여행사도 많다. 지리정보에 어둡고 교통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출장자에게는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함이 권장된다.

**일일관광 주요 프로그램(시드니 중심)**

| 프로그램                                                                                                    | 주요 경유지 및 관광거리                                                                | 비용(1인)  |
|---------------------------------------------------------------------------------------------------------|------------------------------------------------------------------------------|---------|
|  시티고급 투어             | 아쿠아림 (수족관)-본다이 비치-더들리 페이지- 갠공원- 미세스 맥과리포인트-오페라하우스-하버브릿지-하버하이 라이트 크루즈- AMP 타워 | US\$ 70 |
|  시티 일반 투어            | 본다이 비치- 더들리 페이지- 갠공원- 미세스 맥과리포인트- 오페라하우스- 하버 하이라이트 크루즈                       | US\$ 55 |
|  블루 마운틴 & 동물원        | 동물원- 세자매봉-괘도 열차-웬트워스 폭포                                                      | US\$ 50 |
|  남태평양 돌고래 투어 (1박 2일) | 사막 투어- 조개잡이- 돌고래 크루즈- 포트스테판 와이너리                                             | US\$ 85 |
|  제놀란 동굴 & 블루마운틴      | 제놀란 동굴- 세자매봉- 괘도 열차                                                          | US\$ 60 |
|  캔버라                 | 인공호수- 국회 의사당- 대사관 마을- 에인즐리 마운틴                                               | US\$ 50 |
|  시티 야경 (3시간 코스)      | 미세스 맥과리 포인트- 오페라 하우스- 노스 시드니- 해저터널- 록스                                       | US\$ 25 |

- 위 요금은 입장료와 간단한 점심이 포함된 것으로 여행사에 따라 10%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내소재 호텔에는 외국인 여행사의 일일관광 안내서가 거의 빠짐없이 비치되어 있다. 한국인 여행사를 이용하려면 아래 회사별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시드니에 도착한 후 전화문의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비용도 과히 비싸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 시드니에 소재한 한국인 여행사는 일주일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영업을 하고 있으나, 관광객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멜버른의 경우 비수기 때에 일정계획이 축소되기도 한다.

#### 주요 한국인 운영 일일관광 여행사

| 회사명       | 전화           | 소재도시 | 특기사항                                       |
|-----------|--------------|------|--------------------------------------------|
| Sun Tours | 02-9764-4088 | 시드니  | 일일관광 + 골프, 사냥, 낚시<br>(www.suntours.com.au) |
| 대한관광여행사   | 02-9235-0000 | 시드니  | 일일관광 + 항공권 발급<br>(www.ottworldnet.com)     |
| 오세아니아 여행사 | 02-9267-2525 | 시드니  | 일일관광 + 항공권 발급<br>(otssyd2000@yahoo.com.au) |
| 멜번여행사     | 03-9571-0866 | 멜버른  | 일일관광(landsuntravel@hotmail.com)            |
| 멜번테마여행    | 03-9650-3800 | 멜버른  | 일일관광(www.msqtravel.com)                    |

- 비즈니스쇼핑
- 출장자를 고민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귀국선물 구입이다. 가족, 친지는 물론 동료 뒤편까지 챙겨야 할 때가 적지 않은 때문이다.
- 호주는 가전제품 등 공산품 가격이 한국보다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선물로 구입할 물품의 범위가 무척 제한적이다. 호주의 토산품으로는 양모 이불, 캥거루 가죽 모피, 마누카 꿀과 같은 건강식품 등을 들 수 있다. 크기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는 건강식품류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 토산품 구입은 Chatswood, Eastwood등과 같이 한국 교포가 다수 모여 사는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지리에 어둡고 교통편도 없다보니 잘 모르는 사람 의 안내를 받아 쇼핑에 나서기도 하는데, 심중팔구는 나중에 3배 이상의 바가지를 썼다고 울분을 토하게 된다고 한다.
- 조금만 신경쓰면 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Chatswood, Eastwood등 전철역 인근에서는 한국인 가게를 찾는 일도 어렵지 않다. 한국인 가게에 들러 인근의 선물용품 판매업소 위치를 물어 찾아가면 바가지를 쓰는 일은 90% 이상 예방하는 셈이 된다. 낮선 전철역에 내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가 되니 일거양득이라 하겠다.

#### 카. 기타 국가정보

##### 1) 기후

- 방대한 국토를 보유한 호주는 국토의 39%가 열대, 61%는 온대 기후대에 속한다. 서부의 40%와 북부의 80%는 열대성, 남부는 온대성, 중앙부는 대륙성 사막 기후이다.
- 연평균 강우량은 465mm로 세계 6대주 중 가장 건조하며, 남반구에 위치한 관계로 북반구와는 정반대의 계절 순환을 나타내고 있다.
- (동절기: 7~9월, 하절기: 12~2월)



- 대표 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은 하절기 낮 기온이 평균 30°C, 동절기 최저 기온은 평균 5°C 내외로 기후 조건이 매우 뛰어나며, 브리즈베인, 아들레이드, 퍼스 등 주요 도시의 기후 조건도 양호한 편이나 해풍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다소 심하다.
- 남극대륙 상공의 오존층 파괴의 영향으로 피부암 발생율이 세계 1위일 정도로 태양 광선이 매우 강하므로 하절기에는 선블럭 크림과 선글라스가 필수적이다.

## 2) 시차/Business hours

- 시차
  -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캔버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베인 등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우리나라보다 1시간 빠르다. 즉 한국이 오전 10:00일 때, 호주는 11:00이다. 단 매년 11월~3월은 섬머타임을 실시하며 이 때는 한국과 2시간의 시차가 생긴다.
  - 퍼스와 같은 서부지역은 시차가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리다. 이는 호주 대륙이 워낙 넓은 관계로 세 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 호주의 여름기간(10월 마지막 일요일~ 3월 마지막 일요일)은 Summer Time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시드니와 멜버른 등 주요 동부도시들과의 시차가 2시간으로 늘어난다. 즉, 한국이 10:00일 때, 호주는 12:00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퀸스랜드주(브리즈베인)는 Summer Time제를 시행치 않아 여전히 1시간의 시차가 유지된다.
- Business Hours
  - 일반회사의 근무시간은 보통 09:00~ 17:00이며, 토.일요일은 휴무이다. 매주 목요일은 Shopping Day라 하여 대부분의 소매상점들이 저녁근무시간을 21:00까지 늘리고 있다.
  -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당 40시간 미만의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3년 4월부터 Westpac 은행이 고객편의 확대를 위해 토요일 근무를 발표 시행중인 것이 특색이다.

## 3) 통신 및 인터넷

- 휴대폰 렌트
  - 시드니공항 도착 후 공항 청사내에서 여행필수품인 휴대폰을 임차할 수 있다. 호주의 이동통신업체인 Vodafone사가 호주의 6대도시 국제공항 청사에서 휴대폰 임차사업을 개시했다.
  - 시드니공항의 경우, 입국심사를 마치고 공항 대합실로 빠져 나오자마자 두 곳(출입구 A/B쪽, C/D쪽)에서 매장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국제공항에서도 휴대폰 렌트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임차료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하루에 A\$ 5.99~ 9.99 수준이며, 통화료는 별도로 계산된다. 임차한 휴대폰을 통해 한국에 전화할 경우, 분당 통화료는 A\$2.49가 부과된다.
  - 서울로 전화할 때는 00-11-82-2-0000-0000으로 다이얼하면 된다.
  - 공항에서 임차한 휴대폰은 출국 시 반납하면 된다.
- 시내 공중전화
  - 호주의 시내 공중전화는 A\$ 0.40 센트로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 전화 →휴대 전화의 경우 3분 통화에 2달러 정도로 무척 비싸다.



○ 인터넷 사용

- 호주에서 인터넷 이용 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일류 호텔이라 하더라도 로비 등에서 와이어레스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없으며 이는 주요 회의장, 전시장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일 25\$-40\$의 비용을 지불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 노트북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텔의 비즈니스 룸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인터넷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드니 시내의 경우 곳곳에 인터넷 카페가 있으며 시간당 사용료는 1-2\$ 정도이다. 최근에는 편의점에 몇 대의 PC를 부수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곳도 많다. 단, 이러한 곳에서는 한글을 쓸 수 없으므로(언어팩 설치 자체가 제한되어 있음) 여러가지 번거로움이 있다.

#### 4) 체류시 유의사항

○ 의복준비

- 호주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이나 시드니의 겨울은 그리 춥지 않아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겨울 옷가지는 한국의 늦가을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호주의 겨울은 한국에 비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여 밤과 새벽에는 오싹할 정도로 쌀쌀하므로 감기에 주의해야 한다.
- 여름에는 기온은 높으나 한국과 달리 고온 건조한 날씨이다. 옷가지는 한국의 여름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무난하나, 태양광선이 강하므로 선블록크림과 선글라스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사광에 오래 노출될 경우 머리 두피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자 착용도 권장된다.

○ 전기규격

- 240V, 50Hz의 전기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콘센트 구멍이 3개(Y타입)로 되어 있어 한국 전기제품은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호주에서 별도의 어댑터(A\$ 10불 정도)를 구입해야한다. 대부분의 호텔에는 110V 콘센트도 설치되어 있다.

○ 치안

-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흉기나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치안 상태가 양호하나, 킹스크로스과 같은 유흥가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야간에는 시내에서도 그룹으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 호주가 마약에 대해 관대한 나라는 아니지만, 약한 환각성 물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수단으로 킹스크로스 지역에 마약 주사실을 정부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약 중독자들이 지하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여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 시내 주요 거리나 대중교통수단에는 비디오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철 역에는 곳곳에 Help Point라는 긴급 구호요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위급한 상황 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택시

-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다. 최근 택시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모든 택시에는 운전사의 좌석을 중심으로 안전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 응급
  -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전화 '000'번을 누르면 안내원이 필요한 서비스로 바로 연결해 준다. 000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나, 응급실 이용 등 개인관련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 현지의 의료비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일반 진찰시 A\$65 정도를 지불하면 된다.
  - 영어를 할 수 없다면, "Korean Translator Please"라고 하여 한국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 팁관행
  - 호주에서는 청구된 요금 이외에 별도의 팁을 줄 필요가 없다. 음식점에서는 주말 및 평일 밤 12시 이후에(24시간 레스토랑일 경우) 서비스료로 10%를 음식값에 포함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식값의 10% 정도를 팁으로 줄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 식수
  - 일반적으로 시드니의 수도물은 식수로 이용이 가능하다.